## 제 10 차 한•일 학술토론회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서 비교 <br> (부제•양국공통) 종교법인 과세실태 <br> (부제•한국) 한국의 조세교육 

일 시: 2014/ 11/ 20 (木)
장 소: 부산 지방세무사회 회관

부산지방세무사회/긴끼세리사회

## 목 차

## I 회장인사

(1)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장 / 1
(2) 긴끼세리사회 회장 / 3

II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주제)
(한국)
(1) 부가가치세의 성격 / 5
(2) 부가가치세 기초 /7
(3) 과세 거래 / 15
(4) 영세율과 면세 / 25
(5) 과세표준 / 37
(6) 매입세액 / 47
(7) 세액공제 / 57
(8) 세금계산서 / 69
(9) 신고 납부 / 77
(10) 간이과세 / 87
(11) 부가가치세법과 소비세법의 차이점 비교 / 91
(12) 양국 신고서 작성사례(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113
(일본)
(1) 총설 / 125
(2) 과세대상 / 131
(3) 비과세와 면세 / 135
(4)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성립 / 141
(5) 과세표준과 세율 / 147
(6) 세액공제 등 / 155
(7) 과세기간, 신고•납부, 납세지 / 173
(8) 국가 등에 관한 특례 / 187
(9) 잡칙 / 193
(10) 참고 / 201

III 한국의 조세교육(부제/한국)
(1) 국세청의 조세교육 / 277
(2) 한국세무사회의 조세교육 / 283

IV 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
(한국)
(1) 총설 / 289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상황 / 289
(3) 세법개정에 대한 진행과정 / 305
(4) 근로소득과 형평성 논란 / 311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 311
(6)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방법 / 313
(7) 종교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 315
(8) 결론 / 321
(일 본)
(1) 법인세 / 323
(2) 원천소득세 / 331
(3) 소비세 / 331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세무사회 최상곤 회장입니다.

오늘 미야타 요시미 회장 및 임원 여러분께서 바쁜 중에서도 학술토론회를 위해 부산지방세무사회를 방문해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귀 회와 당 회는 1991년부터 우호친선관계를 위해서 교류가 시작되어 왔습니다. 더구나 2005년부터 9차례의 학술토론회를 통하여 세정 전반에 대하여 상호 정 보를 교환해 왔으며 한층 더 성숙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상호이해와 협력 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학술토론회는 매번 중요한 테마를 정하여 연구하고 발표함으로서 성과를 올리 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를 비교하고 부제 공 통으로 종교법인의 과세실태와 한국의 조세교육을 비교 검토함으로서 양국의 조 세제도의 특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양회는 국가적으로 많은 차이를 갖고 있지만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동 질성을 갖고 있어 이 학술토론회가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더욱더 돈독히 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귀 회의 무궁한 발전과 미야타 요시미 회장 및 임원여러분의 건승과 건강 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2014. 11. 20

##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こんにちは）
긴끼세리사회 미야다 요시미 회장입니다．

우선 10월2일 개최된 긴끼세리사회 설립 50 주년 기념식전 및 기념축하연에 최 상곤 회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님께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오늘 여러분과 이 부산에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 합니다．

귀 회와 당 회는 1991년 우호친선합의서에 조인하였고，그 후 2005년부터 실 질적인 교류를 깊게 하기 위하여 매년 학술토론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친선관계 를 구축해 왔으며 올해는 학술토론회 개최기념 10 주년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학술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긴끼세리사회의 내외에서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그리고 종교법인의 과세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포함한 연구결과가 발표되며，양국의 제도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일본에서는 올해 세리사법 개정 시 조세교육이 세리사회 회칙에 절대 적 기재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만，귀 국에서의 조세교육 상황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 학술토론회가 양 회를 상호이해하고 우호를 보다 더 깊게 하는 유익한 토론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귀 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최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들의 건승 과 융성을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인사말씀으로 대합니다．

감사합니다．（感謝いたします。）

## II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 (주제/한국)

## I.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란 각 거래단계의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창출한 가치의 증분으로 정의 되는데, 부가가치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과세유형이 국민총생산형, 소 득형, 소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부가가치를 채택한 나 라에서는 모두 소비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유형에서는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를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자본재 구 입액을 공제한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부가가치는 소비액과 일치하며, 그것은 생산요소들에게 분배되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의 합계액에서 순투자액을 뺀 금액과 같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일정기간 중 매출액 전체에 대하 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필수요건 이며 이를 통하여 근거과세제도가 확립되고 소비세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현재 내 국세 가운데 가장 높은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세목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 현재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56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약 201.9조원의 27\% 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과세하되 그 부담의 증 가를 예상하는 다단계일반소비세이며 현행 조세체계상 부가가치세의 위치는 그 과세주체가 중앙정부이므로 국내거래를 주된 과세대상으로 하는 내국세이지만 그 세수는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수배분을 살펴보면 2009년 부동산 경기 불황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완화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 목적 으로 2010년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다. 당시 지방소비세는 전체 부가가치세 세수 액의 $5 \%$ 였으나 2013년 부동산취득세 영구인하로 인한 지방재원 부족분을 보전하 기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을 $5 \%$ 에서 $11 \%$ 로 $6 \%$ 인상하였다.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전 당초 $5 \%$ 부분은 권역별 가중치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으로, 증가분 $6 \%$ 는 취득세 등 재원 감소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한다. 최근 3년간 지방소비세 평균 실적액은 약 28,910 억원이었으며, 2012년 기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배분되는 비중이 $32.5 \%$ 이고, 그 이외의 지역은 $67.5 \%$ 를 차지하고 있다.

##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 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 한다.
또한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1) 영리 유무에 불구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사업자와 조 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성의 의미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으나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재화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 없고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자체가 다 른 사업에 부수되어 있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 2. 과세 기간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을 말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과세표준 의 계산기간, 신고기한 등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1-12.31 을 1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세, 1 년 이내의 범위로 사업연도를 정하는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와 달리 1 년을 2 과세 기간으로 하여 상반기, 하반기를 각 1 과세기간 으로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 구 분 | 과세기간 |
| :---: | :---: |
| $\begin{aligned} & \text { (1) 신규 } \\ & \text { 사업자 } \\ & \hline \end{aligned}$ | 1)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 <br> 2) 사업개시전 등록의 경우 : 등록일(등록신청일)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
| (2) 폐업자 | 1) 폐업자의 경우 : 해당과세기간 개시일 ~ 폐업일 <br> 2) 사업개시전에 등록한 후 사업을 미개시한 경우 : 등록일(등록신청일) ~ 사실상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 |
| (3) 과세 <br> 유형 <br> 전환 |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공급대가 4,800 만원 미만 해의 다음해 $7.1 \sim 12.31$ <br>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 공급대가 4,800 만원 이상 해의 다음해 $1.1 \sim 6.30$ |
| (4) $\begin{gathered} \text { 간이 과 } \\ \text { 세 포기 } \\ \text { 자 } \end{gathered}$ | 1) 간이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까지의 기간 <br> 2) 일반과세자로서의 과세기간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 일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 지의 기간 |

(1) 개업일
(1) 제조업 : 제조장 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 별로 광물의 채취, 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2) 폐업일

사업장 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1) 해산 청산 중에 있는 법인 :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 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한하여 잔여재산 가액 확정일
(2) 페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폐업신고서 접수

| 구 분 | 예정신고기간 |
| :---: | :--- |
| 일반사업자 | 제 1기 : 1원 1일부터 3월 31일까지, <br> 제 2기 :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
| 신규사업자 | 신규사업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 <br> 기시전 등록의 경우 : 등록일(등록신청일) $~ ~ ~ ㅎ ㅐ ㄷ ㅏ ㅇ ~ ㅇ ㅖ ㅈ ㅓ ㅇ ㅅ ㅣ ㄴ ㄱ ㅗ ~$ |

## 3.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하 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자을 납세지로 하고 있다. 부가가 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 (1)사업장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 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호 에서 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그 대표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사 업 장 |
| :--- | :--- |
| (1)광업 |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
| (2)제조업 |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br>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 |
| (3)건설업, 운수업과 <br>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br> (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 포함) <br> 개인의 경우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 (4)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quad$| (5)무인 자동판매기 |
| :--- |
| 를 통하여 재화, |
| 용역을 공급하는 |
|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이러한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다만，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 는 추가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 없다．（附價令 8 （4））한편 사업자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附價法 6 （3））
（2）임시사업장．직매장．하치장의 구분

| 구분 | 임시 사업장 | 직매장 | 하치장 |
| :---: | :---: | :---: | :---: |
| 의의 |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각 종 행사등의 경우 임시로 사업 장을 개설하는 경우 그 임시사 업장은 기존사업장에 포함됨． |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 득한 재화를 직접판매하기 위하 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 를 말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 다． | 단순히 재화를 보관，관리하 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 로서 판매행위는 하지 않는 경우 이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사업자등록 <br> 부가세신고 |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으나 임시 사업장개설신고 하여야 함 | 별도의 사업자 등록 | 하치장 설치 신고 |
| 세금 계산서 | 기존사업장 명의 <br> （미등록 가산세등 별도의 제재 는 없음） | 직매장 명의로 작성 <br> （미등록가산세 • 매입세액불공 <br> 제등 제재 있음） | 출고 지시한 사업장 명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질서범 으로 처벌가능） |

## （3）주사업장 총괄 납부（법 제51조 시행령 제92조）

법인 또는 일반사업자인 개인에게 내부적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 을 경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한다．
주된 사업장은 법인인 경우 본점 또는 지점 중 선택할 수 있으며，개인인 경우 주사무소를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물세 즉 간접세이기 때문에 그 납세 지를 각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나，이 경우 사업장 별도 납부와 환급이 별도로 발 생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된 사업자에서 통산하여 세금 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1）총괄납부의 효력
＜내부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
－．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등을 타일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 즉 판매장，직매장등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총괄 납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다만 사업자가 세 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의 통산＞
－．총괄 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는 주된 사업장에서 종된 사 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산하여 납부 또는 환급한다．
그러나 예정，확정신고 및 영세율조기환급신고서는 각 사업장별로 제출하 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 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2) 신청기한 및 효력 발생 시기

기존사업자의 경우 총괄 납부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 일 전에, 신 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신청서를 주된 사업장의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총 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동 일하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자는 총괄납부승인서에 기재된 적용일자(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거래분부터 적용한다.
(3)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방법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서는 각 사업장 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납부는 주사업장 종사업장을 총괄하여 주사 업장에서 납부 또는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납부 세액신고명세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4)사업자단위 과세제도(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 법인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신청한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한 다른 사업장을 전부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 및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개별소비세 신 고를 포함)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1) 등록신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는 사업자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20 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업자등록 번호

등록번호는 사업장 마다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자단위과세를 등록 한 경우에는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 대하여 하나의 등 록번호를 부여한다.
(3) 사업자등록의 정정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 업자 등록 정정 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시)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또는 변경이 있을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4)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총괄하여 신 고, 납부하며, 각 개별 사업장은 별도의 신고, 납부가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 지 않는다.

- 각 사업장 별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령하거나 교부하지 않는다.
- 직매장 반출재화 등 내부거래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5)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수정, 경정청구

총괄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사업자단위 신고, 납부자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 고, 납부명세서" 를 첨부하여야 하며 또한 수출실적명세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등의 각종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포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적용 받는 자가 각 사업장 별로 신고, 납부하거나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전 20 일 전에 사 업자 단위 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의 의무적인 적용기간은 없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단위 포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사업자단위과세가 적용되며,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장단위 과세로 전환된다.

## 4.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일정 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이 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기간 중에 발생하게 될 매입세액을 환급하 여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III 과세 거래

##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그리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 위로서 다음의 것들을 말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의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나 재화 수입의 경우 사업자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된다. 또한 수입의 경우 에는 재화만 과세 대상이고 용역의 수입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용역의 경 우는 수입의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재화 | 유체물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기타 각종 유형적인 물건 |
| :---: | :--- | :--- |
|  | 무체물 |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br> (특허권, 광업권, 지상권, 영업권 등의 재산권 포함) |
|  | 건설, 수리, 음식 숙박, 운수 창고 통신, 금융 보험, 임대 및 각종 서비 <br> 스업, 보건업 등 |  |

## 2. 재화공급 의제(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인 도 또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 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법 제 10조, 시행령 제19 • 20 • 21조)
재화의 공급이 위의 요건 즉, 유상공급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부 담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재화로 보고 있으며, 간주공급 부가세 과세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것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재화의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성격상 재화를 공급 받는
자가 불분명하고 사업자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니 다.

| 구분 | 의의 | 과세대상사례 |
| :---: | :---: | :---: |
| (1) 자가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 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 면세전용 (고속버스 $\rightarrow$ 시내버스) <br>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 (총괄납부사업자 제외) <br> 사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
| (2) 개인적 공급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상과 관련없 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위 | - 사업자의 개인목젹(증여. 가사용 등)사용 <br> - 종업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
| (3) 사업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환 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 하는 경우 <br> (예 : 접대성 물품의 제공) | - 퐌매설적에 따라 물건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품 <br> -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간퐌을 제작하여 무상 기증 하는 경우 <br> -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쳠자에게 지급하는 물품 <br> ※ 그러나 광고선전물풀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 다. |
| (4) 폐업시 재고재화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판매되지 아니한 잔존재화는 이를 자기 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음) | 폐업일 현재의 잔존재화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됨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이전의 경우 과세되지 않음 (제도 46015-12355 2001.7.24.) |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 공함으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을 하지 않는 아래의 7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보의 제공
(법 10조 8항 1호)

| 사업의 양도 <br> （법 10조 8항 2호） |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br> （⑴「법인세법」상 과세이연요건 갖춘 분할의 경우와（2）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
| :---: | :---: |
| 조세의 물납 <br> （법 10조 8항 3호） | 사업용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 또는 「지방세법」 규정 에 의하여 물납하는 것 |
|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br> （령 18조 2항 1호） | （1）조달청장이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지 않는 것 <br> （2）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보세구역 안에 소재하는 것에 한함）에 보관된 물품에 대 하여 동 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하는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 지 않는 것 |
| 공매 및 강제경매 （령 18조 3항 1호 • 2호） | 「국세징수법」 규정에 의한 공매（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을 포함）및 「민사집행 법」 규정에 의한 강제경매（경매，민법과 상법 등에 의한 경매 포함）에 의하여 재화를 인 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br> ※ 2006년 세법 개정사항이며 그 이전의 경우에는 공매 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었다． |
| 수용에 따른 철거 보상 금 <br> （령 18조 3항 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철거될 재화（종전에는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는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었으나 2013．2．15．이후 공급분부터는 무조건 비과세） |
|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 는 토지，건물 <br> （령 18조 3항 3호）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장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건물 |

## 4．용역의 공급

## （1）용역의 의의

용역의 공급의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 지로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원칙적 으로 유상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고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 지 않는다．

즉，재화와 달리 용역 공급의 의제는 없다．

## （2）용역의 무상공급

재화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에 비 하여 용역의 무상공급은 별도 과세규정이 없으므로 현재 과세되지 않고 있다．그러나 2012．7．1．이후 부터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공급 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구분 |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특수관계 없는 자 | 특수 관계자 | 특수관계 없는 자 |  |
| 부가세 | 재화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  | 용역 | 시가 과세 | 거래금액 과세 | 과세 안함 <br> (임대 제외) | 과세 안함 |
|  | 소득세, 법인세 |  | 부당행위 부인 | 거래금액 과세 | 부당행위 부인 | 거래금액 과세 |

5.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포획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제외)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은 사업자인 경우만 과세되나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 를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수입의 경우 재화만 해당되며 용역의 수입 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외국법인에 의한 건설, 음식 등의 경우 용역의 수 입이 아니고 국내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1)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관세의 과세가액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2)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

거래A: 외국 $\rightarrow$ 보세 구역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거래C. 보세구여내의 거래 $\rightarrow$ 국내 거래 D:

거래 A : 재화의 수입이 아니다.
거래 B : 국내공급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일반적인 공급에 해당된다
거래 C : 보세구역내의 거래는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거래 D : 보세구역에서 국내사업장으로 반출될 때 외국물품은 수입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초 과하여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가액은 보세구 역내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내 생산물품의 반출은 수입이 아님)
6. 부수 재화 또는 용역
(1) 재화 또는 용역의 구분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과세 또는 면세의 구분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 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3. 거래시기

거래시기는 일반적으로 인도시점. 용역의 공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특수한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거래시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신고 귀속, 과세기간 등이 결정되므로, 만약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래시기 를 잘못 알게 되면 가산세의 부과, 매입세액의 불공제등 중대한 불이익을 받 게 된다.
(1) 일반적인 공급시기
(1) 재화의 경우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기타 :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용역의 경우

역무가 제공이 완료 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공급시기의 특례

-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
-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
(2) 거래 형태별 공급시기
(1) 장기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러므로 약정된 날에 실제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서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가 결정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 교 부하고 매출신고하고 있으며, 할부판매의 경우 세법상의 공급시기가 도래하 기 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때를 공급시기 로 본다
(2) 반한 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

환 조건부, 동의조건부 기타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반환조건부 | 재화를 인도후 거래상대방이 사용해보거나 실제 제품을 본 후 일정기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구입한 것 <br> 오보는 경우로서 시용판매. 시제품판매에 해당 |
| :---: | :--- |
| 동의조건부 | 재화를 인도후 거래상대방이 구매동의를 하는 경우만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는 조건의 거래. 주로 대 <br> 기업등에 납품 후 검수 판매 또는 시용품 판매에 해당 |
| 기한부판매 | 재화를 인도후 일정기한 까지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매입거절의 의사표기사 없으면 그 기한이 경과한 <br> 때 구입한 것으로 본다는 판매에 해당 |

(3) 완성도 기준지급, 중간 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

성도 기준지급. 중간 지급조건부. 계속적 공급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 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재화 및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 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공급시기이다.

| $\begin{aligned} & \text { 완성도 } \\ & \text { 기준지급 } \end{aligned}$ | －재화의 제작기간이 장기간을 요하여 그 진행도 및 완성도를 확인하여 그 진행비율 만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br> －완성도의 측정은 진행 중에만 즉 시작부터 완성 사이에서만 이루어 지므로 재화의 공급 완료 후 에는 완성도 기준지급이 없다． |
| :---: | :---: |
| $\begin{aligned} & \text { 중간지급 } \\ & \text { 조건부 } \end{aligned}$ | 1．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br> 2．「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br> 3．「지방재정법」 제 73 조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br> （즉 계약금，중도금，잔금의 3 부분 이상으로 나누어지고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6 개 월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

（4）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을 위하여 인도 받는 재화에 원자재의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재화의 공급 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5）재화의 간주공급인 경우
자가공급，개인적인 공급，사업상 증여의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 는 때 또는 직매장 공급인 경우에는 재화가 직매장에 인도되는 때
（6）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잔존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하며， 사업개시 전 폐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한다．

IV 영세율과 면세
1．의의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과표（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0＂으로 하는 것 을 말한다．
즉，매출세액을＂0＂으로 하게되면 매출세액은 없을 것이며 만일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 세되는 제도 즉，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 히 없어지게 된다．

## 영세율 제도를 두는 이유

－재화의 수출입에 관한 소비세과세는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를 수출 하는 경우 수출국과 수입국에서 각각 과세되면 동일한 재화에 이중으로 과 세되는 문제가 발생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입국 즉 소비지국 에서 과세되게 함으로 국제적 이중 과세의 방지를 기하고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므로 수 출하는 재화 등의 가격조건이 그만큼 유리하게 되어 국제경쟁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하여 조기환급제도를 둠으로서 수출품 의 경쟁력이 강화된다．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 구 분 | 영 세 율 | 면 세 |
| :---: | :---: | :---: |
|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 소득세법상 면세 사업자 면세 |
| (1) 사업자 여부 | $\bigcirc$ | 수입금액 신고 |
| (2) 과세표준신고 납부 | $\bigcirc$ | 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
| (3)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bigcirc$ | $\bigcirc$ |
| (4)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 - 부가세 대급금으로 공제 | 매입원가 해당 |
| (5) 매입세액의 처리 | - 완전 면세 (부가세 부담 | 부분 면세 |
| (6) 면세 효과 | 없음) | - 세부담 역진성 완화 |
| (7) 목적 |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br> - 수출촉진 | - 생산 요소의 면세 |

## 2.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크게 다음의 5 가지로 나눌수 있다.

- 수출하는 재화 (법 제21조)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 제 2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법 제 23조)
- 기타 외화획득 사업 (법 제 24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특례법 제 105조)
(1) 수출하는 재화

수출에 대하여 무역실무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또 각종 영문 약자가 많 이 사용되므로 세무회계만을 담당하는 경우 이해 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 이 있으나, 수출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련된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 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 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납세의무가 국외로서 우리나라 세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라 함 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여 납세지가 국내인 경 우를 말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 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 한다.
그리고 이에 부수되는 용역인 버스탑승, 전용호텔에의 투숙도 영의 세율 을 적용한다. 외국항행 용역의 경우 그 대가를 외화로 받든지 또는 원화 로 받든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 （1）국내에서 <br> 비거주자등에 <br> 공급하는재화 <br> 용역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 • 사 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 <br> （1）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 에서 원화로 수령하여야 한다． <br> （2）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외의 비거주자 등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 화로 수령하여야 한다． |
| :---: | :---: |
| （2）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1）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한다． <br> （2）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 경우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 계약에 의한 임가공용역만 영세율을 적용한다．다만，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영세 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대사관 등에 공급 |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국제기구•국제연합국 또는 미국군 에게 공급하는 재화 • 용역 $\Rightarrow$ 대금을 원화로 지급하던 외화로 지급 하던 관계없이 영세율을 적용함 |
| （4）기타의 <br> 재화 • 용역 | （1）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br> （2）「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 하는 관광알선용역 <br>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에 한함） |

（5）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것（특례법 제 105조）
（1）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 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 로 공급하는 용역
（2）「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국가．지방자치단체，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 및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4）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할 목적 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 설용역
（5）장애인용 보장구（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정 보통신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소프트웨어
（6）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친환경농업용기자재
（7）연근해•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어업용기자재
（8）제주도 여행객면세점 대한 특례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이외의 다른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1회당 \＄300，연 4회 한도）
－사업자가 면세 물품을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경우

## 3. 면세 [법 제 26•27•28조]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을 그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과 복리후생이나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여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노동• 자본 등 부가가치를 원시적으로 창출하는 기본생산요소 대하여는 법이론상의 부가가치의 생산 요소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제도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매입시 부가가치세는 공제를 해주므로 실질적인 부가가치세 완전면세에 해당하나 면세 는 공급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으나 매입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으 므로 실질적으로 부분 면세에 해당한다.

| (1) 기초생활필수 재화 - 용역 | (1) 미가공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임산물 및 소금 포함) <br> (2) 국내생산 비식용의 미가공 농•축 • 수 • 임산물 <br> (3) 수돗물 $\Rightarrow$ 생수는 과세 <br> (4) 연탄과 무연탄 $\Rightarrow$ 유연탄•갈탄-착화탄 (불쏘시개)은 과세 <br> (5) 여성용 생리처리위생용품, 유아용 위생용품 (2009년부터) <br> (6) 여객운송용역. 다만, 항공기 • 고속버스 • 전세버스 • 택시 • 특수 자동차 특종선박 •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제외함 |
| :---: | :---: |
| (2) 국민후생 재화용역 | (1)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 포함)과 혈액 $\Rightarrow$ 의약품의 단순판매는 과세. <br> 쌍꺼풀수술, 유방확대 등 미용목적성형수술은 과세 <br> (2)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교육용역(학원, 강습소, 교습소, 훈련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은 과세대상) <br>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용역 |
| (3) 문화관련 재화 • 용역 | (1) 도서 • 신문 • 잡지 • 관보 • 뉴스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함 <br> (2) 예술창작품 • 순수예술행사 - 문화행사 • 비직업운동경기 $\Rightarrow$ 골동품 • 모 방 제작한 미술품 - 프로야구의 입장료수입 등은 과세 <br> (3) 도서관 • 과학관 • 박물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에의 입장 $\Rightarrow$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동 - 식물원 및 해양수족관 과세 |
| (4) 부가가치 구성요소 | (1) 금융•보험용역 <br> (2) 저술가•작곡가 기타 법정된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Rightarrow$ 변호 사 등의 전문인력이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 <br> (3) 토지의 공급 $\Rightarrow$ 토지의 임대는 과세 |


| (5) 기타 | (1) 우표(수집용우표를 제외함) - 인지 • 증지 • 복권 • 공중전화 <br>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일정한 담배 ( 20 개피 기준 200 원 이하의 일반담배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용 담배) <br> (3)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 급하는 재화 용역 $\Rightarrow$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br> (4)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만, 다음의 용역은 제외한다. <br> (1) 우정사업조직의 소포우편물 방문접수 배달용역 <br> () 고속철도 여객운송용역 <br> (9)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용업, 기타운동시설업과 기타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종으로서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Rightarrow 2007.1$.1. 부터는 과세 <br> (5) 종교 • 자선•학술 •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해 일시적. 실비.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br> (6)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수출시 영 세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 경감되는 부분 |
| :---: | :---: |
| (6)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대상 (조특법 106조) | (1) 국민주택 $\left(1\right.$ 호 또는 1 세대당 $\left.85 \mathrm{~m}^{2}\right)$ 과 국민주택 건설, 설계용역 <br> (2)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br> (3) 공장 등의 사업장과 각급학교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 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 급하거나 학교장의 위착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 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에 한함) <br> (4)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br> (5)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 청소, 소독용역. <br> (6)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 용 역 (별정우체국. 농협, 수협 등의 고유목적사업) <br> (7)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철도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 받는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br> (8) 희귀병 치료를 위한 물품 <br> (9) 농업용 - 임업용•어업용 및 연안운항용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br> (10)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로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과 전기버스 |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 가. 미가공 식료품

식용에 공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품이라 함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래의 생산물의 성 질이 변하지 아니한 정도의 1 차가공을 거처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러나 화학반응, 열
반응을 일으켰을 경우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나. 농, 축, 수, 임산물
식용에 공하는 농.축.수. 임산물에 대해서는 위의 미가공식료품과 마찬가지로 국 내생산품 및 수입유무에 불구하고 면세하며,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 내생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함.
(2) 국민 후생 용역

가. 의료보건용역 및 혈액
의료법 등 일정한 법률에 규정된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한다. 다만, 법에서 규정 하고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 록, 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나. 교육용역
정부의 허가,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산학협력단, 사회적기업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교습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 등이 해당된다.

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1) 주택의 매매와 임대 면세여부

| 구 분 | 구분 |  |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 :---: | :--- | :--- | :--- |
|  | 주택 | 국민 주택 | 부가가치세 면세 |
|  | 일반 주택 | 부가가치세 과세 |  |
|  | 기타 건물 |  | 부가가치세 과세 |
|  | 토지 |  | 부가가치세 면세 |
| 임대의 경우 | 주택 및 부속토지 | 부가가치세 면세 |  |
|  | 기타 건물 | 부가가치세 과세 |  |
|  | 토지만의 임대 | 부가가치세 과세 |  |

(2) 겸용주택의 세법 적용

| 주택임대 면제여부, | 주택면적 $>$ 주택 이외의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 <br> 여 세법을 적용함 <br> 과세 여택, 양도세백신축 <br> 판매업 해당여부 |
| :--- | :--- | :--- | 주택면적 $\leq$ 주택 이외의 면적 $\quad$| 주택 부분만 죽으로 |
| :--- |
| 간주하여 세법을 적용함 |

라. 우표(수집용 우표 제외),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마. 제조 담배(20개비 기준 판매가격 200 원 이하인 것. 솔담배)
(3) 문화 관련 재화, 용역
(1) 도서, 신문, 잡지, 관보, 통신 및 방송등(다만, 광고는 과세)
(2)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식물원에의 입장
(4) 부가가치세 생산요소인 재화, 용역

가. 토지의 공급

나. 인적용역
(1) 개인이 인적 - 물적 시설없이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일정한 용역
(2)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일정한 용역
다. 금융 보험 용역
(5) 기타
(1)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 각항 제 106 조의 2 제 106 조의 3 )
(7) 농•임 •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의 2 )
(8) 면세포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반면 매 출을 위하여 투입된 부가가치세 과세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 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판매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특정 사업자에 한하여 당해 사업자가 신청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매출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 받음으로 면세 포기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수출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
(1) 면세포기 대상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법 11조)
2.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법 12조 1항 16 호) (2) 면세포기의 효력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동안 부가가치세 면제받 을 수 없다.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가 면세포기한 때로부터 3년이 경한 후 다시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적용신고서와 함께 사 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적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면세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V .과 세 표 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기타 의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주공급의 경우 감가상 각 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간경과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 (부가세법 제29조)

| 일반사업자 과세표준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 $(10 \%)$ |
| :--- | :--- |
| 간이과세자 과세표준 | 공급대가 $=$ 과세표준 |

1. 과세표준의 범위
(1) 일반적인 경우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 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금전 대가: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재화의 경우 시가, 용역의 경우 과세 안됨
(5) 폐업 시 재고재화: 시가
(1) 대가

대가라 함은 본래의 공급가액 외에 현물로 받는 경우에는 시가로 계산하며, 할부 또는 장기판매에 있어서 이자상당액,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등 해당 재화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관 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2) 시가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 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이 아니다. 다만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 산부인 대상은 해당된다.

| 구분 |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 |  |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 없는 자 | 특수관계자 | 특수관계 없는 자 |
| 재화 | 시 가 | 실지거래금액 | 시 가 | 시 가 |
| 용역 | 시 가 | 실지거래금액 | 과세대상 아님 | 과세대상 아님 |

(2) 부가가치세의 구분 표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는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급계약 및 의사결정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일반사업자의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그 대가
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 않거나 포함여부가 불 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아 거래금액의 10/1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3) 과세표준 불산입
(1) 매출 에누리, 매출 환입, 매출할인
(2)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된, 멸실 된 재화의 가액
(3) 국고 보조금, 공공 보조금
(4) 연체 이자
(5)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6) 대가와 구분표시하여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
(7) 장려금

- 장려금이란 판매촉진, 시장개척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약정된 계약에 의 하여 거래의 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 또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명칭 여하에(보상금, 접대비, 판촉비, 장려금 등) 불구하고 거래 가 이루어 진 후에는 공급대가를 사후에 차감 할 수 없다. (해석 편람 13-2-2)

| 장려금의 금전지급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되 <br> 지 않음 (판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
| :--- | :--- |
| 장려금의 물품지급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됨 <br> (사업상 증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으며 판 <br> 매장려금 지급명세서 제출) |

(4)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 과세표준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 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 다.
(1)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 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2)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등
(3) 납세의무가 1 차적으로 사업자에 있는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2. 과세표준 계산 특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49조)
(1)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2)과세와 면세사업 공통 사용재화 공 (3)부동산 매매시 토지, 건물의 안분계산 (4)부동산 임대용역
(1)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재 고재화)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 재화이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 에 따라 감가되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 각 대상자산의 시가는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간주공급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

- 건물, 구축물의 경우(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취득 부대비용 제외)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x ( $1-5 / 100 \mathrm{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표준

-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기계장치, 차량 등)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과세표준
※ 계산사례 . (감가상각 대상자산의 폐업 시 재고재화)
개인 일반사업자가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사용하던 중 사업부도로 제조업 을 폐업하고 폐업일 이후 공장과 기계장치를 매매할 때, 폐업일 이후 매매가 되 었다면 폐업시점에 재고재화로 간주공급에 해당되므로 위의 산식에 의하여 과세 표준을 계산하여야 하고 폐업일 이전에 매매가 되었다면 경락 된 실제가액에 의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 건물 취득일자 2008.4.2. 폐업일자 2011.12.31.
(취득가액 : 토지 $50,000,000+$ 건물 $90,000,000=$ 합계 $140,000,000$ 원)
$\bigcirc$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8$ 과세기간
(2008.1기/2기/2009.1기/2기/2010.1기/2기/2011.1기/2기)
$\bigcirc$ 건물 과세표준 $=90,000,000 \times(1-5 / 100 \times 8)=54,000,000$ 원
*폐업한 달의 익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함(2012.1.25 까지 )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과세, 면세사업 공통 사용 재화 공급

과세 면세 겸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 도할 경우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유대리점, 약국, 국민주택 건설이 있는 건설회사, 생닭과 양념 닭을 같이 도소매하는 경우, 일반김치와 포장김치를 같이 제조하는 업자가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산(차량, 기계장치 등)을 양도할 경우 공통 사용자산이 과세표준
안분계산 대상이 된다.

## 과세표준=당해 재화의 공급가액 x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과세분) 직전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면세)

$\bigcirc$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과세, 면세, 겸용부동산 을 공급시는 공급가액비율이 아니라 당연히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 산하여야 함.
○ 건설업의 경우 과세, 면세되는 건물신축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이 아니고 과세, 면세의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 함.
○ 휴업, 사업실적 없음으로 인하여 직전 공급가액이 없을 경우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함.

## ※계산 사례

우유대리점으로서 과세(딸기, 바나나우유 등)와 면세(흰우유)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배달용 트럭을 매각하였을 경우 트럭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안분계 산 : 2005.1월 트럭 10,000,000원에 판매하였고 2004년 2기 부가세과세표준은 $20,000,000$ 면세매출은 $15,000,000$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 별도임)

$10,000 \times \frac{20,000,000}{35,000,000}=5,714,285 \quad$| (세금계산서 발행 $5,714,285$ 원) |
| :--- |
| (계산서 발행 $4,285,715)$ |

$$
3 \overline{5,000,000} \text { (계산서 발행 } 4,285,715 \text { ) }
$$

(만약 매매가액에 부가세 포함이라면 위 분모에 $20,000 \times 10 \%$ 를 추가한다)
-안분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전체를 과세분으로 계산)

1. 직전과세 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 미만인 경우.

다만 당해 재화 공급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2010년 귀속 분부터는 무 조건 안분계산한다
(부동산의 경우 $5 \%$ 계산은 면적기준이 아닌 가액 기준임에 주의)
2. 당해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가액이 거래 단위당 50 만원 (2009년 이전 20만 원) 미만인 경우(과세기간 합계액이 아닌 개별 가액을 기준으로 함)
3. 신규 개업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2)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 계산

사업자가 건물과 함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가액 구분 없이 토지, 건물이 합산된 가액으로 거래를 하게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은 과 세대상 재화이고 토지는 면세대상 재화 이므로 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계산 하여야 하며,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 안분계산 순서

| 순 서 | 과 세 표준 |
| :---: | :---: |
| 1.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는 경우 | 계약서 등에서 토지, 건물 가액을 구분표시 하여 거래하였거나 계약서에 구분표시 되지 않았더라도 관련증빙에 의하여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가능하고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 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것으로 본다. |
| 2. 실지거래가액 <br> 확인되나 <br>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 한 경우 | 기준시가가 (1) 토지, 건물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약이 있는 경우 감정가액에 의 <br> 있는 경우 (2) 감정가예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 계산 |
|  |  |
| 3. 기타의 경우 | (1) 토지, 건물가액을 일괄산정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토지, 건물의 기준시가를 각각 별도 계산하여 안분계산 한다 <br> (2) 건물의 건축 중에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 당초 허가조건에 의해 준공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한다. <br> (3) 미완성된 건물 등을 토지와 함께 공급한 경우: 토지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건물은 장 부가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 하여야 한다. <br> (장부가액 없을 경우 취득가액) |

※ 일반적으로 상가분양시 계약서 상에는 토지 건물 가액을 합당한 기준(예정원 가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구분 기재하고 또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과세표준= 총거래가액 $\times \frac{\text { 건물의 기준시가 }}{$}토지의 기준시가 + 건물의 기준시가 <br> (거래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건물의 기준시가에 $10 \%$ 를 가산함 $)$ |
| :--- |

## ※ 계산 사례

상가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다음과 같이 상가신축분양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상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고 부가가치세 가 별도라는 명시도 없어서 전체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로 볼 때 부 가가치세과세표준, 즉 세금계산서 교부할 금액과 계산서 교부할 금액의 계산은?
(1) 총 공급가액 $200,000,000$ 원
(계약금 $20,000,000$ 중도금 $80,000,000$ 잔금 $1000,000,000$ )
(2) 토지기준시가 $50,000,000$ 건물기준시가 $40,000,000$ 토지감정가액 $60,000,000$

이 경우 건물 감정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계약 금 중도금 잔금에 동일하게 계약당시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 계약금 $20,000,000 \mathrm{x}$

$$
\frac{40,000,000}{50,000,000+40,000,000+40,000,000 \times 10 \%}=8,510,638
$$

(2) 분개
(차) 현금 $20,000,000$
(대) 분양선수금 건물 $8,510,638$ (세금계산서 발행)
토지 $10,638,299$ (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예수금 851,063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규정이 없으면 $40,000,000 \times 10 \%$ 산식이 필요없음)
VI매 입 세 액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면세사업에 관련 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등의 사유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으로 구분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 1,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 확인 매입세액
(3) 의제 매입세액(면세 농산물등의 구입시)
(4) 재활용 폐자원등 매입세액(폐기물 처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5) 재고매입 세액(간이 $\rightarrow$ 일반 전환시)
(6) 변제 대손 세액 (부도 후 변제)
(7)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시(면세사업재화의 과세사업 전용)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75조)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 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 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 실이 확인되는 경우(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 \%$ 해당)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특례세금계산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0 일내에 도 가능)에 발급받는 경우(매입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 \%$ 해당)
(3)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 실이 확인되는 경우(매입자가산세 해당 없음)
(4)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매입자 가산세 해당 없음)


## 3. 공제 받을 수 있는 사업장

본사와 지점의 2 개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계를 구입함 에 있어서 지점에서 계약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당해 기계는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본사에서 인도받고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소비 22601-33 1989.1.17. 부가 22601-377 1991.3.28)
(1)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교 부 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 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 받는자와 부가 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이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 다. (공급자 확인제도는 폐지)
(2)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법 제42조 령 제84조)

사업자(간이과세자 포함)가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 받은 농•축• 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건설등 기타업종 $=$ 명세 농산물등의 매입가액 $\times 2 / 102$
- 제조업(중소기업) $=$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가액 x $4 / 104$ (2013부터)
- 음식점 $=$ 면세 농산물등의 매입가액 $x$ 개인 $8 / 108$ (법인 6/106)
= 유흥업소(유흥주점.룸싸롱.나이트클럽) 4/104(개인.법인 동일)
(1)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면세 대상인 농•축•수•임산물과 소금, 김치, 두부와 같은 단순가공식품 을 포함하며, 농축수임산물의 1 차 가공품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 조, 냉동, 염장등)과 1 차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포함한다.
(2) 재화의 제조, 가공 또는 용역의 창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면세대상인 농축수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 용역의 창출에 직 접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재료(김치제조, 유제품제조, 육가공업, 음식점, 조 경공사 건설업등)
(3) 공제시기

의제매입의 공제시기는 구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간이다. 사업자가 예정 때 공제하지 아니한 의제매입세액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예정확정시 공제 받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할 수 있다. (통칙 17-62-6) - 의제 매입세액은 경정청구 수정신고시에도 공제할 수 있으므로 식당의 경우 경정조사에 의하여 식육 매입 등의 누락금액이 발생하였고 계산서, 신용카 드에 의한 구입이 확인이 되면 의제 매입세액공제가 경정결정시에도 추가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겸업자가 면세되는 농산물 등을 구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제 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그 귀 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같이 당해 과세기간 공 급가액을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함.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재화의 공급가액이 $5 \%$ 미만이거나 공통매입 원재료 가액이 20,000 원 미만인 경우에 는 당해 농산물 전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며, 당해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이 없거나 과세, 면세사업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에는 매입가액비율, 예상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과 달리 그 후 면세공급비율이 증가한 경 우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재계산은 없다. (부가 22601-916-1995.5.22)

## ※ 계산사례

홍길동씨는 개인사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제1기 (1/1~6/3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음식점 매출액은 2 억 5 천만원 이었고, 면 세 농산물등의 구입가액은 1 억 2 천만원 이었다. 이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액 $=W 100,000,000 \times 8 / 108=W 7,407,407$
(세액공제 대상) $250,000,000 \mathrm{X} 40 \%$ (注) $=100,000,000$
@농산물 구입액은 $120,000,000$ 원이나 $100,000,000$ 원만 공제대상이 된다
(注) 2014 년부터 과세표준이 1 억이하 $60 \%$, 1 억초과 ~ 2 억이하 $50 \%, 2$ 억초과 $40 \%$ 의 공제한도가 신설되었다. 즉 위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이 $250,000,000$ 원으 로 농산물 구입가격이 과세표준의 $40 \%(100,000,000$ 원) 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3)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공제(조특법 제 108조)
(1) 적용대상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 재생처리업 허가 받거나 폐기물재생처리 신고자
- 한국자원재생공사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중고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
-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 재생자료 수집,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자)
(2) 적용대상 거래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자(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즉 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부터 수집한 재활용폐자원과 자동차의 경우에는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금계산서 를 교부 받아야 한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사업자라 함은 미등록사업자도 포함하므로 미 등록사업자에 해당하면서 그 공급가액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거나 또는 간이과세배제업종을 영위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예: 미등록 고철중간수집상, 사업자에 해당 하는 노인회 및 아파트 부녀회)
(3) 적용대상 품목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품목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철•알미늄)캔, 폐건전지, 비철금속 류, 폐타이어, 폐유, 헌옷(일반가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부녀회 구입), 폐전선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오토바이 포함)


##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품목

- 중고 TV•컴퓨터 등 가전제품, 공병, 중고자동차 부품, 휴대폰배터리, 폐목재 및 폐건축자 재, 폐토너카트리지, 공드럼통, 중고건설기계一 PVC 통(세척후 재사용이 가능한)
(4) 간주매입세액 공제율

재활용 폐자원 취득가액 x $6 / 106$ (2006년 이전 8/108
○ 중고품(중고자동차) 취득가액 X 9 / 109(2010년 이전 10/110)
(5) 공제 시기

-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계산서 및 영수 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무신고, 신고누락의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 하여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4) 재고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당해 변경일 현재 재고품, 건설중 인자산 및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 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 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며, 이 기간 중 납부할 세액을 공제 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환급 한다. (일반 $\rightarrow$ 간이과세자 전환시는 재고 납부세 액 발생한다.)
(1)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등)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mathrm{X} 10 / 110 \times(1$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재고납부세액=재고금액 X $10 / 100$ X (1-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2) 감가상각 자산(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X (1 - 체감율 X 경과된 과세기간의수) X 10/110

>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체감율 : 건물 구축물은 $5 / 10$ (2001년 이전 취득분은 $10 / 100$ 을 적용) 기타자산의 경우 $25 / 100$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신축한 자산

재고매입세액= 신축관련공제대상매입세액 X (1-체감율X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3)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일반사업자로 변경되기 직전 일이 속하는(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일)과세기 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한다.

| 구 분 | 전기, 가스, <br> 증기, 수도 | 소매, 음식, <br> 재생자료수집판매 | 제조, 숙박, 운수, 통신업 <br> 농업, 임업, 어업 | 건설, 부동산임대업, <br> 기타서비스업 |
| :---: | :---: | :---: | :---: | :---: |
| 2013 년 이후 | $5 \%$ | $10 \%$ | $20 \%$ | $30 \%$ |

## ※ 계산사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20\%) 이던 개인사업자 홍길동씨는 2014년 7월 1일부 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변경일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명세가 다음과 같을 때 재고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종류 | 취득일자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시가 |
| :---: | :---: | :---: | :---: | :---: |
| 상품 | - | W11,000,000 | W11,000,000 | W13,000,000 |
| 기계장치 | 2013.12 .20 | W44,000,000 | W16,000,000 | W12,000,000 |

(풀이)*위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다
(1) 상품 : W11,000,000 X 10/110 X (1-20\%) = W800,000
(2) 기계장치 : W44,000,000 X 10/110 X (1-25\% X 2) X (1-20\%) $=\mathbb{W} 1,600,000$
(3) 재고매입세액합계 W2,400,000
(5) 감가상각자산 과세전용 매입세액공제(법17조 6항 영63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면세용으로 사용할 경우 재화공급의 의제 중 면 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 세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2006년 이전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았으나 2007 년 이후 공급부터는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공제받지 못했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세법이 신설되었다.
(면세사업자 만을 말하므로 당초 비사업자로서 주거목적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을 취득한후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않는다.)
(1) 대상 자산

면세사업에 사용되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면세사업용 자산으로 인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경우
(2) 공제세액 계산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3) 과세 면세 겸업자의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공제하는 세액 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과세사업에 의한 과 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100 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공제세액이 없는 것 으로 본다.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이 속하 는 과세 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 과세기간의 총공급 가액)

-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취득 당시 해당 재화의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 X (1-2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과세사업에 사용 소비한 날 과세기간의 총공급가 액)
(4)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 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다만, 취득시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매 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건물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 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5)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때 에는 동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신고서" 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 당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된다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을 자기 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지 못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 미제출, 부실기재
(2)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4) 접대비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5) 면세사업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6) 등록전 매입세액
VII. 세 액 공 제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에는
(1) 대손세액공제
(2)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
(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세액 경감
(4) 전자신고세액공제
(5) 전자 세금계산서발행

세액공제의 5 가지 규정이 있다.

## 1．대손세액공제（법 제45조）

## （1）의의

부가가치세의 납세체계는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일반적으로 매출 부가가치세의 확정 은 재화의 공급일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부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매출채권 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조차도 거래 징수한 것으로 보아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93．12．31．부도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래징수 하 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법제화하여 납세자의 세부담 을 완화해 주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2）세악공제 사유
종전의 시행령 제63조의 2 제 1 항에서 대손사유를 별도 규정하였으나 2006년 개정으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를 소득세，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인정 범위를 따르도록 개정되었다．대손세액공제의 사유는 소득세，법인세법상 대손상각 사유와 일치되었다．
（3）대손세액공제 시기
제 17 조의 2 ［대손세액공제］에서＂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 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대손 확정 되어 대손상각이 분개된 시점의 확정 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법인세법 규정에 의하여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대손상각（반드시 대손확정시 점에 대손 상각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대손상각 할 수 없 다．）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어음법」「수표 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 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 로 확정된 채권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 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2）위의 1 항 규정 외의 대손상각의 경우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사업자가 결산시 대손 상각으로 반영한 경우에 손금산입이 된다．
（3）결산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산시 손금산입을 하고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신고조정에 해당하는 시효 소멸 등의 경 우에는 반드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결산조정（손익계산서 반영） 또는 신고조정（세무조정）을 통하여 대손상각하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다（법인세법 시행령 제 19 조의 2 제 3 항）
（4）대손확정일
대손확정일은 대손상각 손금산입 시기를 결정하고 그 후 대손세액공제를 받 아야 할 과세기간을 정하는 것임과 동시에 대손세액 공제 유효기간 내에 발생 한 대손세액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 :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채권배분계산서의 통지를 받은 날
(3) 사망, 실종선고 : 사망일. 실종선고일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 법원의 회사 정리 인가결정일
(5) 상법상의 소멸 시효가 완성된 경우

■ 부가세법상 대손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대손상각 비교

| 구 분 |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 법인세, 소득세법상 대손상각 |
| :--- | :--- | :--- |
| 1. 대상 채권 | 매출채권에서만 발생 | 매출채권, 대여금. 기타채권 등 |
| 2. 대손 요건 | 법인세, 소득세법상 대손상각 <br> 사유와 동일함. | 법인세법 시행 령 제19조의 2 <br>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1항 |
| 3. 처리 시점 | 소득세, 법인세 손금산입시점이 <br> 속하는 확정신고 | 대손 확정일 <br> (결산조정 및 신고조정) |
| 4. 대손 금액 | 대상 채권의 $10 / 110$ |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후 잔액 <br> (부도어음 등의 경우 천원 남김) |

(6) 수표 및 어음 부도의 경우

종전 시행규칙 제 19 조의 3 에서 부도발생일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나 이규정은 2007년 폐지되고 대부분의 규정이 법인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수표어음의 지급기일(지 급기일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도확인일)을 부도발 생으로 보아야 하고 이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종료일 까지 법인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부가-3635 2008.10.15.)
(7) 사업의 폐지 :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 으로 입증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과 관계없이 대손상각할 수 있다.
(1) 공제요건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제금액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0 / 110$ (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한 것으로 간주)
(3) 사후관리
(1)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기 공제받은 매 입세액을 추징한다. 대손채권을 변제하였으나 대손사실이 발생할 당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지 않은 경우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 분을 경정 하고 변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가산세 적용됨)
(2) 대손세액 공제 후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

공급자에 대하여는 회수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상대방에 대하여는 그 회수 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4) 회계처리(부도어음의 경우)

결산시 부도어음 $1,500,000$ 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상각하고 그 후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1) 결산 시 부가세 분개(받을어음 중 부가가치세 부분 $10 / 110$ 세액공제 받음)
(차) 부가가치세 예수금 $2,560,000$
(2) 결산시 법인세 분개
(차) 대손충당금 $1,000,000$
대손 상각 362,637
(위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 상각 시 비망계정 1,000 원을 남겨 사후관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경우는 비망계정 1,000 원을 남길 필요가 없습니다.)

| 구 분 | 공 급 자(채 권 자) | 매 입 자(채 무 자) |
| :---: | :--- | :--- |
| 대손 확정시 <br> (세액 공제 시) | 부가세 확정 신고 시 매출세액 차감하여 <br> (식고서상 (8)란 대손세액 가감난에 -로 기 <br> 재항) | 부가세 확정시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br> 기재 <br> (식고서상 2장 (50) 번란 대손처분 받은 세액에 <br> 기재) |
| 채권 변제 시 | 부가세 확정 싱고 시 매출세액 가산 <br> (신고서상 <br> 기재함) | 부간 다센손세액 확정 신고 심난 기타 공제 매입세액으로 기 <br> 재 <br> (신고서상 2장 (46)번란 변제 대손 세액에 기재 |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법 제46조)
(1) 일반적인 경우 : 신용카드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times 1.3 \%$
(2) 간이과세자로서 음식, 숙박 : 신용카드 발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times$ 2.6\%

- 법인사업자를 제외하며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환급대상 세액공제가 아니 다.
(1) 해당 업종
-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업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업의 공급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자와

거래분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 건물건설업, 주거용건설업, 운수업, 주차장업, 부동산중개업, 사회개인가사서비스업
-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의료업 (미용, 성형)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 (전자세원-62 2012.2.15.)
- 기타 위와 유사한 업으로서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사업 (자동차정비공장은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으로서 신용카드 세액공제 가 되며 소매업 자가 세금계산서를 부하고 동시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 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법인을 제외한 개인 사업자(일반,간이)가 공제 대상이 된다.
(3) 영수증발행 대상 업종만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도매, 제조 부동산 매매, 사업자가 거래한 세무사무소 수수료 등은 신용카드세액공제 대 상이 아니다.
(4) 대상 거래 :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전자화폐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 받은 경우, 선불카드 (실지명의 확인 분), 현금영수증, 결제대행업 체를 통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전자적 결제수단을 말한다.
(5) 소득세 신고 시 영업 외 수입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6) 공제한도 (연간 500만원)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의제매입세액 + 대손세액공제 $)$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위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즉, 의 제매입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로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용카드세액공 제가 환급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납부할 세액계산시 가산세 제외함)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간이와 일반과세기간 합하여 연간 한도 500 만원을 적용하며 간이 과세자로써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실제로 신고서상에 납부세액에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말한다.


##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조특법 제106조의 7)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 (2008년 이전 $50 \%$ )를 2013년까지 경감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함)
4.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 104조의8 제2항)
(1) 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당해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1 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농특세 해당 없음)
(2) 세무대리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 회계사(세무,회계법인 포함)전자신고의 방법으 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 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 인당 2 만원씩을 금액을 공 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 인당 1 만원씩 공제한다.
(3) 연간 공제 한도액(부가가치세+소득세 또는 법인세)

| 세무사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연간 한도 400만원(2010-2012 연간한도 300 만원) |
| :---: | :--- |
| 세무법인 | 부가가치세+법인세 연간 한도 1000만원(2010-2012 연간한도 800 만원) |

(4) 세무대리인의 직전과세기간 전자신고건수에는 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 모두 해당되며,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 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만으로는 환급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분개시 이 세액공제를 영업의 수입으로 기장되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공제이므로 농어 촌특별세, 최저한 세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5.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법 제47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200원(2010년 100원) 을 2013년까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 만원을 한도로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개인, 법인 모두 해당되고, 정발행 역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모두 해당된다)

## 6. 원산지 확인서 발급 세액공제(조특법 106조의6)

(1)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2012.1.1 이후부터 중소기업이 영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를 공급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 금계산서 및 원산지 확인서를 그 수출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2013년 12월 31일 까지 발급하는 경우
(2) 원산지 확인서 발급 건당 1 만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서 공제 할 수 있으며 연간한도는 30 만원으로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을 한 도로 적용한다.
(3)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원산지 확인서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으로서 수출재화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로 한정한다.
$\square$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

|  | • 당기 신고분 매출세액 <br> 매출세액 | $\cdot$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
| :--- | :--- | :--- |
| $\cdot$ 대손세액공제 가매출, 국외수출 |  |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
| :--- | :--- | :--- |
| 매입세액 $(+)$ | 사업무관, 접대비관련 등 |  |
|  | • 공통매입 면세사업매입세액 | 안분 계산 |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공급받은자의 대손발생시 |

납부(환급)세액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1.3\% 2.6\% (환급 불가) |
| :---: | :---: | :---: |
|  | - 택시회사 경감세액 | 90\% 경감 |
| 세액공제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2010 부터 건당 200 원 |
|  | - 전자신고 | 건당 1 만원 |
|  | - 현금영수증 사업자 |  |


|  | - 예정신고 미환급 | 예정신고 일반환급 |
| :---: | :---: | :---: |
| 기납부세액 | - 예정고지 | 20 만원 이상 고지 |
|  | -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  |
|  | - 매입자 납부특례 |  |


|  | 사업자미등록, <br> 수입금액명세미제출 | 1\% 0.5\% |
| :---: | :---: | :---: |
| 가산세 | - 세금계산서 관련 | 일반 $1 \%$ 가공위장 2\% |
|  | - 신고불성실 관련 | 10\% 20\% 40\% |
|  | - 납부불성실 관련 | 일일 3/10000 |

## 납부할 세액

VIII. 세금계산서

1. 의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 금영수증을 말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2 매를 작성하셔 1 매는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교부하고 각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토대로 부가가 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거래증빙 및 발행대상 사업자>
(1) 세금계산서 - 일반사업자 (영수증 발행업종 제외)
(2) 수입세금계산서 - 세관장
(3) 계산서 - 면세사업자
(4) 영수증 -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영수증 발행 업종)
2. 교부시기 및 의무자
(1) 세금계산서 발행의 중요성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 즉 재화 및 용역의 공 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2) 세금계산서 작성 시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 이다. 다만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받은 경우 각 대가에 한해 사전에 세금계산서를 미리 교부 할 수 있다.
또한 장기할부판매등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가를 받기 전 발행하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를 허용하고 있다.
(3)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있는 자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만 교부할 수 있으므로 간이과세자, 면 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및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조장 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 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는 법정서식은 아니며 세금계산서의 부속된 명세서로서 거래내역 등이 상세 기재되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다.
3. 세금계산서의 발급 특례
(1) 월합계세금계산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의 거래가 빈번한 고정거래처에 그 공급시기 마 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아래 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세금계산 서를 발급할 수 있다.
(1)거래처별로 1 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월을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
(2)거래처별로 1 역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 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공동매입(전력, 가스, 지역난방등)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등의 경우에 공동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에 건물주인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므로 이를 다시 개별 입주자별로 관리비등의 명목으로 청구되며 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3) 리스자산
(1) 과세사업자(리스이용자)가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을 임차하 고 당해시설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 받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직 접 공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제조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공급자 및 공급 받는자로 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

판매 후 리스거래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인 사업자가 자기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3) 금융리스 물건을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 는 경우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 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재화 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아니한다.
(4) 위탁판매 (위탁매입)
(1) 위탁판매, 대리판매의 경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판매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시기에 위탁자, 본인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다만 위탁자 및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 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 부하여야 한다.
(5) 용역의 공급에 대한 중개, 주선 (화물운송업자 등)

운송주선용역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는 위탁판매의 경우와 같이 다음과 같다.
(1)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자인 화주에게 운송주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운 송업자의 명의로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 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화물운송업자가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6) 공동도급공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사인간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에 이는 원칙 적으로 공동사업이 아닌 별도의 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자 구 성원이 각자에게 귀속되는 대가에 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다.
(7) 주민등록기재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인 광업, 도매, 제조, 건설, 화물운송, 부동산임대, 사업서비스업등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 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교 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세금계산서의 작성
(1) 기재사항
(1) 필요적 기재 사항(누락시에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적용 대상)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발행일자를 말하며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거래시기를 말한다.)
(2) 임의적 기재 사항
- 공급하는자의 주소 - 공급받는자의 성명, 상호, 주소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 거래의 종류


## 5.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 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요건
(1) 당초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이여야 한다.
(2) 기재 사항에 정정, 착오, 오류, 잘못 기재한 경우이어야 한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와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 등에도 착오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
(3) 공급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4)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기 전까지 교부할 수 있음
(2) 하자로 인한 반품, 반입시 회계처리

반품 등의 사유에 따라 상의하나 일반적으로 단순히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 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다.
(3) 계약의 해제와 해지
(1)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해제 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여 수 정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 계약의 해지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이행이므로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소 멸시키는 것이므로 계약해지 일까지의 확정액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수정서 금계산서를 교부하면 된다.
6. 기타의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수단이며 이는 영수증에 해당하나 일반 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이용하는 방법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 국세청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이세로)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 (영리법인, 국가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 개인사업자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 억원 이상 인 개인사업자
2.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 급가액의 합계액이 3 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 기 과세기간과 그 다 음해 제 1 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은 발급일자의 다음날 까지이며, 월합계세금계 산서의 경우에는 다음달 10 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다음달 11 일 까지 전송할 수 있다.
(4)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은 공급받는자의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수신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시기는 공급받는자의 수신확인과는 상관없이 공급 받는자의 이메일 계정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이 된 때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세액공제

2015. 12. 31 까지 발급하고 기한 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개인사업자는 교부 건당 200 원(연간 한도 100 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6)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미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6월 12월 분을 다음달 10 일 까지 미발급한 경우 (공급자에게 공급가액의 $2 \%$ )
2. 지연발급가산세-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달 10 일을 초과하고 해당과 세기간 종료일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각각 공급 가액의
3. 미전송가산세-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 일 초과하여 전송하는 경우 (공급자에게 $1 \%$ )
4. 지연전송가산세- 발급시기에 정당하게 발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한 월의 다음달 11 일을 초과하고 해당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달 11 일 이내에 전송한 경우 (공급자에게 $0.5 \%$ )
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발행하여야 하나 매입자 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표노출 등의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 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의 확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 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8. 현금영수증

(1) 가입대상자

소비자 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이 2천 400 만원 이상인 사업자
(2) 가입 기한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현 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발행요건 및 의무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1) 전문직종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2) 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국은 제외)
(3) 기타업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영위하는 업종
(4) 미가입, 발급거부에 대한 제재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되고 세법상의 각종 감면을 배제한다. 또한 세법상의 가산세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

## IX. 신고 납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과 세액의 신고는 조세채권을 확정시키는 효력이 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 역년을 둘로 나누어 각 6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다시 각 과세기간을 3월로 나누어 첫 3개월을 예정신고 기간으로 나머지 3 개월을 확정신고 기간으로 정하여 1 과세기간에 두 번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 예정신고
(1) 제1기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신고기한 : 4월 25일)
(2) 제2기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일 (신고기한 : 10월 25일)

## 2. 예정고지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신에 각 예정신고기간마
다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 / 2$ 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고지한다.
(1)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 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 분의 1 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2) 예정고지의 생략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20 만원(고지 최저금액) 이하인 경우

## 3. 확정신고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나머지 3 개월에 대하여, 예정고지를 받은 사업자는 6 개월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기 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 7월 25일)
(2) 제2기 확정신고 - 7월 1일 ~ 12 월 31일 (신고기한 익년 1월 25일)
4. 조기 환급 신고

일반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되면 각 과세기간 별로 확정신고 후 환급하는 것 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과 투자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조기환급신고라 한다.
(1) 조기환급 대상
(1)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하는 때
(3) 전체 매출중 일부만의 영세율 매출, 전체 매입중 일부만의 사업설비 투자 가 있어도 영세율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2) 조기환급 신고 기간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월분은 별도 신고 후 2월분 3월분을 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또
한 1월분과 2월분을 합하여 신고 후 3월 분을 별도로 신고할 수 도 있다.)
(3) 첨부서류
(1) 영세율매출시 - 영세율 관련 서류
(2) 사업설비투자시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
5. 부가가치세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토록 하는 현행제도를 악용, 무자료로 매입한 금제품 등을 매출하여 매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후 이 를 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의 부가세 포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제품 등의 거래시에는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부가세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금제품등 : 금지금(순도 99.5\%이상인 금)과 금제품
(2) 구리폐품등 : 스크랩등과 합금물로서 구리함유량이 $40 \%$ 이상인 물품
(3) 대상사업자 :공급하는 사업자, 공급받는 사업자, 대상 재화를 수입하려는 사업자
(4) 대상거래 : 사업자간의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의 경우에 적용되므로 소비자가 금지금 등을 구입하는 경우와 면세대상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가산세
(1) 미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때에 는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 \%$ 의 가산 세를 부과한다.
(2) 허위등록 가산세

사업자가 배우자를 제외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 분의 1 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3)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

실제 거래없이 가공, 위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
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한 후 해당 재화 등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 세기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2 \%$ 을 가산 세로 부과한다.
(4)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 \%$ 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 \%$ 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각 예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5 / 1,000$ 의 지연제출가산세를 부과한다.
(5)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1) 매입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

사업자가 재화 등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를 당해 공급시 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 받아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 급가액에 $1 \%$ 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 하고 그 이후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부실기재 가산세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 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 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가공 및 위장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2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과다기재신고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하
여 신고한 때에는 과다 기재하여 신고한 금액의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6)신고불성실(초과환급신고) 가산세
(1)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시 : 납부세액 * $20 \%$
- 부당 무신고시 : 납부세액 * 40*
(사업자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 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시 : 납부세액 * $10 \%$
- 부당 과소신고시 : 납부세액 * 40\%
(사업자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
(7) 납부(환급)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예정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무납부하거나, 과소납부한 때에 그리고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경우 그 금액의 1 일 $3 / 10,000$ 원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다.
(1) 무납부가산세 $=$ 무납부, 과소납부세액 $* 3 / 10,000 *$ 무납부일수
(2) 무납부일수계산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3) 초과환급일수계산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까지
(8)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의 100 분의 0.5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그러나 영세율 과세표준 을 과다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9) 현금매출명세서(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 변호사업, 세무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등 전문직 사업자 (약국 및 수의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병원, 의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10) 가산세의 배제 및 감면

가. 가산세 적용의 배제
가산세부과시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거나 납세자가 의무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아니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5)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7) 기타 위의 제 1 호.제 2 호 또는 제 4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가산세의 감면
(1) 수정신고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자)

법정 신고 기한 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그 신고내용에 오류 가 있어서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

- 6 개월이내 수정신고시 $50 \%$ 감면
- 6개월초과 1년이내 수정신고시 $20 \%$ 감면
- 1년초과 2년이내 수정신고시 $10 \%$ 감면
(2) 기한후 신고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아래의 기간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한다.

- 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50 \%$ 감면
- 1 개월 초과 6 개월 이내 기한후신고시 $20 \%$ 감면
(3) 기한 후 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기한이 경과한 후 1 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부과되는 가산세의 $50 \%$ 를 감면한다.
다. 가산세의 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종 류별로 각과세기간 단위별로 5 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 억원)을 한도로 한다.
(1) 미등록, 허위등록가산세
(2)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신용카드 확인 공제가산세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5)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 X. 간이과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각종 신고의무를 전부 이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를

두어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기준 수입금액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다음의 업종은 위의 연간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1) 광업
(2) 제조업
(3) 도매업(소매업을 겸업하는 경우도 포함)
(4) 부동산 매매업
(5) 서울시, 광역시, 시지역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과세유흥장소
(6)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7)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8)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의하여 일반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자
3. 부가가치율의 계산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X 세율 $(10 \%)=$ 납부세액
(1) 부가가치율
(1)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2) 소매, 음식, 재생자료수집판매 - $10 \%$
(3) 제조, 숙박, 운수, 통신업, 농업, 임업, 어업 - $20 \%$
(4) 건설,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30\%
4. 납부세액의 계산

납부세액
(-) 공제세액
(+) 재고 납부 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1) 공제세액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은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세 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성실신고사업자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있다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공제는 일반사업자의 경우와 대부분 동일하나 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가 나온다 하더라도 환급 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 매입세액 $*$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2) 재고 납부 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 함은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일반사업자로서 공제 받은 매입세액을 간이과세자로서 공제 받을 매입세액과의 차 이를 다시 정산하여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한함)
(1) 재고납부세액 계산 대상

- 재고품(상품, 제품, 재료)
- 건설중인자산
- 감가상각자산
(2) 재고납부세액의 계산
- 재고품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X 10/100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 X (1-5/100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X $10 / 100$ X (1-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기타감가상각 대상자산은 25/100
(3) 유형 전환
(1) 수입금액의 변경에 따른 유형전환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 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4,800 만원 이상이 된 해의 다음 다음해 과세기간부터 과세유 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2) 타사업장의 수입금액에 따른 유형전환

일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다른 간이과세사업장이 일반으로 전환되며 또한 신규 개업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3) 유형 전환의 통지

사업자의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개시 20 일 전까지 통지하도 록 되어 있으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통지가 없 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 반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까지는 간이과세가 적용되고 그 다음과세기간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5. 예정 및 확정 신고
(1) 예정 신고 및 고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1 - 12.31 까지를 1 과세기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1 번하므로 예정신고제도는 폐지되었고 1 월 ~ 6 월 까지에 대해 전년도 납부금액의 $1 / 2$ 을 예정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1.1-12.31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까지 신 고한다.
6. 가산세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와 달리 세금계산서 교부,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세금 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미등록가산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영 세율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는 해당된다.
(1) 미등록 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
(2) 신고불성실 가산세 : $10 \%$
(3)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대가의 $1 \%$
7.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 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세액을 납 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과 소비세법의 차이점 비교

| 구 분 | 한 국（부가가치세법） | 일 본（소비세법） | 비 고 |
| :---: | :---: | :---: | :---: |
| 간접세의 성격 | 세금계산서방식에 따른 부가가치 세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 | 장부방식에 따른 소비세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 | 稅의 <br> 누적배제 |
| 일반회계 세입 <br> 예산（2013년도） | 일반회계세입예산 210.4 조원 부가가치세수（국＋지방）56．6조（ $27 \%$ <br> ＊부가가치세 50．37조원（89\％） <br> ＊＊지방소비세 6．23조원（11\％） <br> ＊）부가가치세 중 $19.24 \%$ 를 지방교부 세로 보전（지방교부세법 제4조） <br> ＊＊）지방소비세 $11 \%$（6．23조원）중 $6 \%$ 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보전함（지방세법 11조（1）8호／주택춰득세 감소분 보전용） | 일반회계세입예산 92．6조엔 소비세수（국＋지방）13．3조엔（14\％） <br> 소 비 세 10．6조 엔（80\％） <br> 지방소비세 2．7조 엔（20\％） <br> ＊2013년도는 세율 $5 \%$（소비세 $4 \%$＋지 방소비세 $1 \%$ ）적용．소비세 $4 \%$ 중 지방 교부세로 $29.5 \%$ 배분 <br> ＜배분비율〉국가 $56.4 \%$／지방 $43.6 \%$ |  |
|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 （1）납세의무자 <br> 1）사업자 <br> 2）재화를 수입하는 자 <br>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 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br> （2）간이사업자 납세의무 면제 <br> 당해 과세기간（2013년도부터 1년）의 공급대가가 2,400 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이 경우 가산세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함 <br> （3）납세지：각 사업장 소재지 <br> （4）주 사업장 총괄납부 <br>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내부적으로 연결된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는 제도． ＊납부만 총괄 할 뿐 기타의무（과세표준 신고，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경정조사 등은 사업장별로 한다．）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한다． <br> （5）사업자단위 과세제도 <br> 2010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모든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됨． <br>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개인，법인이 신청에 의하여 다른 사업장을 전부 합하 여 하나의 과세단위 및 사업장으로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개별소비세 포함）를 이 행하는 제도이다．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br> ＊의무적인 적용기간은 없으며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본 제도 시행으로 주사 업장 총괄납부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되었음 | （1）국내거래：사업자 <br> 국가－공공법인 등을 포함하며 국내에 서의 과세대상 거래에 한정됨 <br> （2）수입거래：보세구역에서 과세 물품을 반출하는 자 <br> 사업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비자 개 인이 수입하는 경우도 납세의무 있음 <br> （3）소규모사업자 납세의무 면제 과세기간의 기준기간에 과세매출액이 1천만 엔 이하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 납세의무가 면제됨（「면세사업자」라고 함） <br> ＊기준기간이란 개인 $\rightarrow$ 그 연도의 전전연도 법인 $\rightarrow$ 그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 ＊자본금 1천만엔 이상 신설법인 제외 ＊면세사업자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선택할 수 있다．（최저 2년간 적용） ＊상속－합병－분할 등의 경우 피상속인 등 기준으로 판정 <br> （4）납세지 <br> （1）개인 <br>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 ：그 주소지 ＊국내에 주소는 없으나 거소가 있는 경우 ：그 거소지 <br>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경우 ： <br> 주사무소 등의 소재지 <br> ＊주소지 대신 사무소등을 납세지로 선택 할 수 있다．（납세지 선택） <br> （2）법인 <br> ＊내국법인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br> ＊외국법인 ：국내에 있는 주사무소 등의 소재지 |  |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폐업 등에 대한 신고기한＞ <br> （1）등록：사업개시일부터 20 일 이내 신 청 <br> 사업개시일이란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 는 <br> 날，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br> －준비서류는 임대차계약서，사업허가증 공동사업자는 동업계약서，기타서류를 첨부（해외 동포의 경우 재외국민 등록증 번호 및 등록부 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및 외국인 등록표 등 본）하여 신청하며 신청일이후 거래부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 된다． <br> （2）임시사업장개설신고： <br> 임시사업개시일부터 10 일 이내 <br> （3）신속히 제출 해야 하는 경우 <br>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br>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br> （4）적용과세기간 20 일 전까지 신고 ＊주사업장 총괄납부 또는 포기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또는 포기 | 〈사업개시，폐업 등에 대한 신고기한＞ <br> （1）신속히 제출해야 하는 경우 <br> ＊기준기간 과세매출 1 천만엔 초과 시 <br> ＊특정기간 과세매출 1 천만엔 초과경우 <br> ＊기준기간 과세매출 1 천만엔 이하 시 <br>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된 경우） <br> ＊과세사업자가 폐업，사망한 경우 <br> ＊법인이 합병하여 소멸한 경우 <br>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1천만엔 이상 <br> ＊납세지 변경신고 <br> （2）적용과세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신고 <br> ＊면세사업자（기준기간 과세매출 1 천만 엔 이하자）가 과세사업자로 선택 시 ＊과세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와 단축된 과세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br> ＊과세사업자 선택 후 중지하고자 할 때 <br> ＊과세기간 단축 후 중지하고자 할 때 |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납세의무성 } \\ & \text { 립 } \end{aligned}$ | （1）원칙：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br> （2）예외：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br>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 기간이 끝나는 때 | （1）국내거래 <br> ＊재고자산 판매：인도일 <br> ＊고정자산 양도：인도일 <br> ＊공업소유권 양도，실시권 실시 <br> ：계약 효력발생일 <br> ＊청부 <br> －물품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 <br> 목적물을 완상하여 인도한 날 <br> －물품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 우 <br> 용역 완료일 <br> ＊인적용역（청부 제외）：용역제공 완료일 <br> ＊자산임 대 <br>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br> 지급 받을 날 <br>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br> 지급 받은 날 <br> 청구 시 지급조건은 그 청구일 <br> （2）수입거래 <br>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 |  |
| 과세기간 | （1）간이사업자： <br> 1월 1 일～12월 31 일 까지 <br> （2）일 반과세자 <br> 제1기：1월1일～6월30일 까지 <br> 제2기：7월1일～12월31일 까지 <br> （3）신규사업자 <br> 제1기：개업일～6월30일 까지 <br> 제2기：개업일～12월31일 까지 <br> （4）폐업자 <br> 제1기：1월1일～폐업일 까지 <br> 제2기：7월1일～폐업일 까지 <br> （5）과세 유형전환자 <br> 제1기：（1）1월1일～유형전환 말일 까지 <br> （2）유형전환일～6월 30 일 까지 <br> 제2기：（1）7월1일～유형전환 말일 까지 <br> （2）유형전환일～12월31일 까지 | （1）개인사업자： <br> 1월 1 일～12월31일까지 <br> （신규사업자 및 폐업자 또한 같다） <br> 〈특례＞ <br> 1월～3월／4월～6월／7월～9월／10월～12월 <br> 또는 1 개월 단위로 변경가능 <br> （2）법인사업자 <br> 그 법인의 사업연도 <br> ＊신설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설립일이며， 조직변경시는 변경전 사업연도 그대로〈특례〉 <br> 사업연도를 1 개월 또는 3 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변경가능 <br> （3）과세기간 변경 특례 <br> ＊관할세무서에（소비세 과세기간 특례 선택－변경신고서）제출로 변경 가능함 ＊특례적용 시 2년간 의무적용 |  |


| 과세대상 | （1）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br> ＊재화라 함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 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용역이 란 <br> 재화 이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 <br>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br> （1）담보제공 <br> （2）사업의 양도 <br> （3）조세의 물납 <br> （4）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br> （5）공매 및 강제경매 <br> （6）수용에 따른 철거보상금 <br> （7）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건 물 <br> ＊용역은 유상공급만 과세（단，특수관계 자간 부동산 무상임대는 2012．7．1이 후 <br> 과세대상이다． <br> （2）재화의 수입 <br> ＊수입의 경우 사업자 유무를 불문하고 과세대상이 되며 재화만 해당된다． <br> （3）재화의 간주공급（매입세액 공제된 것 만 해당．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아님） <br> （1）자가공급（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2）개인적공급（증여，가사용 등） <br> （3）사업상증여（판매장려금품 등） <br> （4）폐업시 재고재화 <br> （4）재고납부세액 <br>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br> （5）부수 재화 또는 용역 <br> 당해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br> （1）통상적으로 포함 <br> （2）거래관행상 통상 포함 <br> （3）우연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 <br> （4）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br> 위（1）～（4）의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 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br> （예／병원건물 양도 시 면세됨／（3）해당） |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 도 <br> 등 및 보세지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 <br> ＜국내거래＞ <br> ＊자산이란 유형자산은 물론 상표권 등 의 <br> 무형자산 등 거래대상 되는 전부 의미 ＊자산양도，임대，용역의 유상제공 ＊자가공급 등 특수거래 <br> （1）임원에게 저가양도（시가 $50 \%$ 기준） <br> （2）재고자산의 가사사용（시가적용） <br> （3）임원에게 증여（매입가액 이상， <br> 시가의 $50 \%$ 이상 신고 시 제외） ＜수입거래＞ <br> ＊소비지 과세주의 적용 <br>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의 징수 등 <br> 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세로서 징수 ＊개인적인 수입，무상수입도 과세대상 |  |
| :---: | :---: | :---: | :---: |
| 영세율 | （1）재화의 수출 <br> （2）용역의 국외공급 <br> （3）외국항행용역의 공급 <br> （4）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br> （5）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정한 8가지 <br> （장애인용 보장구，제주도 여행객 <br> 면세점，군부대 공급하는 석유류 등） <br> ＊매출세액이＂O＂으로 완전 면세된다． <br> ＊내국신용장 등 관련서류 구비해야 함 <br> ＊상호주의 적용 <br> ＊소비지 과세주의（국제적 이중과세 방 <br> 지） <br> ＊조기환급제도로 수출품 경쟁력 강화함 | 〈일 본> <br> 재화의 수출 등은 면세 적용함 | ＜재화의 <br> 수출 등＞ <br> 한국 <br> $\rightarrow$ 영 세율 <br> 일본 <br> $\rightarrow$ 면세 |


| 비과세 | 〈한 국> <br> 비과세제도 없음 <br> (1)국내거래는 면세 적용함 <br> (2)외국화물은 영세율 적용함 | (1)국내거래(13개 항목) <br> 토지양도 및 임대/유가증권 - 지급수단 의 양도 등/대출금 이자/우표•인지 등/ 상품권•선불카드 등의 양도/행정서비스 수수료 등/해외결제/사회보험 의료 등/ 간호보험법에 의한 방문서비스 등/사회 복지사업 등/조산/매장 - 화장료/장애용 물품 양도 등/수업료 - 입학금 • 시설설비 비 등/교과서 등/주택임대/ (2)외국화물(7항목) <br>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중유가증권 등/우편 우표류/인지/증지/물 품표 등/장애자용 물품/교과서 |  |
| :---: | :---: | :---: | :---: |
| 면 세 | (1)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20개 항목 열거) <br> 미가공식료품/수돗물/연탄/여성용 생리 품/의료보건용역/교육용역/여객운송용역 /도서 등(광고 제외)/우표(수집용 제외) 등/담배/금융•보험 용역/주택임대(부수 토지 포함)/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토 지 <br> /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br> 예술창작•문화행사•아마추어 운동경기 /도서관 등의 입장/종교 등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국가 등이 공급/국가 또 는 공익단체의 무상공급 <br> (2)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 <br> 국민주택과 건설,설계용역/공장 구내 식 <br> 당/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공동주택 관 리 용역 등 11 개 항목 <br> (3)농 - 임 - 어업용 - 연안 여객선 석유류 (4)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15개 항목 열거) <br> 미가공 식료품/도서 등/학술연구단체 등 이 수입하는 재화/종교단체 등에 기증되 는 수입재화/국가 등에 기증되는 수입재 화/관세 면제되는 소액물품/이사물품 등 으로 관세가 면제 또는 간이세율 적용/ 여행자의 휴대품 등 관세면제 또는 간이 세율 적용 물품/상품 견본 등의 관세 면 제 물품/국내 박람회 출품용 수입물품 으로 관세가 면제/조약•국제법규 따라 대사관등에서 사용되는 물품/수출한 후 재수입 되는 물품/수출조건부 수입재화/ 담배/기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 품 등 12 개 품목(시행령 56조) <br> *매입세액은 매입원가로 회계처리하며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 생산요소의 면세 로 실질적으로 부분적인 면세효과 있음. *소득세법상 면세수입 신고의무,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br> *국가에서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도• 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과세됨 *면세포기 사업자는 3 년간 면제받지 못 한다.(영세율대상, 학술단체 등만 해당) | 수출 및 이와 유사한 거래 <br> 〈소비지 과세주의 적용> <br> 수출물품(이와 유사거래 포함) 면세점에서 생활용품 등 판매 기타 면세(소비세법 이외의 법률 의거 /외항선박 등에 적재화물 <br> $/$ 외국공관 등에 대한 면세 <br> /해군판매소 등에 대한 면세 <br> /합중국 군대 등에 대한 면세 <br> *면세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br> *증명서 등의 서류 보존 요함 | <재화의 <br> 수출 등> <br> 한국 <br> $\rightarrow$ 영세율 <br> 일본 <br> $\rightarrow$ 면세 |


| $\begin{aligned} & \text { 과세표준/세 } \\ & \text { 율 } \end{aligned}$ | (1)과세표준:대가의 합계액 <br> *저가양도/시가의 $30 \%$ 기준 <br> (특수관계자만 해당) <br>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가를 받지 <br> 고 재화를 공급 시에는 시가 적용함 <br> - 과세표준 차감항목 <br> 매출에누리/환입된 재화/파손 또는 훼손 /국고•공공보조금/연체이자/매출할인/ 용기 대금과 포장비/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br> - 과세표준 가감항목 <br>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 산재보험료 / <br> 운송비,포장비,하역비,개별소비세 등 <br> - 수입재화 과세표준 <br> 관세과세가액 + 관세 + 개별소비세액 <br>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 특별세 <br> (1)과세•면세 겸영사업자 환산 <br> 과세표준=해당재화 공급가액 <br> x 직전과세기간 과세공급가액/직전 과세 <br> 기간 총공급가액 <br> 단,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 표준이다. <br> (재화 공급가액 5 천만원 이상 무조건안 분) <br> - 직전 과세기간 면세공급 $5 \%$ 미만/ <br> - 공급가액이 거래단위당 50 만원 미만/ <br> - 신규사업으로 직전 과세기간 없는경 우 <br> (2)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환산 <br> -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br> - 실지거래가액 불분명시 기준시가 안 분 <br> (3)간주공급 <br>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기간경과에 따 른 <br> 체감율 적용(건물 • 구축물 $5 \% /$ 기타 $25 \%$ ) <br> (4)부동산 임대용역 과세표준 <br> 과세기간 월세합계 + 전세보증금 * 일수/365 * 2.9\% <br>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 이자율 <br> (2)세율:10\% <br> (3)세액 등에 관한 특례 <br> 납부할 세액의 $89 \%$ 를 부가가치세로, <br> $11 \%$ 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부가세법 72) <br> - 지방소비세 $11 \%$ 중에서 $6 \%$ 는 주택 취득세 감소분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존 등에 충당한다.(지방세법 69조) | (1)국내거래:대가의 합계액 <br> *저가양도/통상 판매가격의 $50 \%$ 기준 <br> -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석유석탄세, 석유가스세 등 개별소비세를 포함 <br> - 반품, 할인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 나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음 <br> (2)수입거래 관세과세가액(통상C.I.F가격) + 개별소비세액 + 관세액 <br> 〈토지,건물 일괄 양도 시 환산> <br> - 합리적으로 구분한 가액으로 한다. <br> - 합리적인가액 불분명 시 시가로 안분 <br> (3)세율 : 8\% <br> (1)소비세 $=6.3 \%$ 단일 세율 <br> (2)지방소비세 $=1.7 \%$ <br> (소비세의 17/63) <br> *2014년3월31일까지는 합계 $5 \%$ <br> (소비세 $4 \% /$ 지방소비세 $1 \%$ ) | <한 국> <br> 특수관계 <br> 토지임대 <br> 무상제공 <br> : 증여세 <br> 과세 대상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과세표준액 } \\ & \text { 및 } \\ & \text { 매출세액계 } \\ & \text { 산 } \end{aligned}$ | (1)당기신고분 매출세액 <br> 과세표준의 $10 \%$ 가 매출세액이다. <br> (2)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br> (3) 대손세액공제 <br> 재화 - 용역을 공급받는자의 파산•강제 <br> 집행 - 사망 - 소멸시효완성 - 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등 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이 대손된 경우 대손금액의 10/110을 매출세액에 서 차감 | (1)세포함 경리방식의 과세표준 <br> 세포함 대가의 합계액 * 100/108 <br> (천 엔미만 절사) <br> 소비세 액=과세표준액*6.3/100 <br> (2)세별도 경리방식의 과세표준 <br> \{세별도 대가의 합계액+가수 소비세 <br> 등의 액 $\} * 100 / 108$ (천 엔미만 절사) <br> 소비 세 액 $=$ 과세표준액 $* 6.3 / 100$ |  |


| $\begin{aligned} & \text { 매입세 액 } \\ & \text { 및 } \\ & \text { 세액공제 } \end{aligned}$ | (1)교부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br> 단, 다음의 경우 공제 받지 못한다. <br> (1)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의 미교부,미제 출 <br> 부실 기재 <br> (2)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br> (3)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br> (4)접대비 <br> (5)면세사업 및 토지관련 매입세액 <br> (6)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br> (2)의제 매입세액공제 <br>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 <br> 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 역 <br> 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경우 면세 농 <br> 산물 등의 가액의 $2 / 102$ (과세유흥장소 의 <br> 경영자는 $4 / 104$, 음식점업자는 $6 / 106$ ( 개인사업자는 $8 / 108$,중소기업 및 개인 제 <br> 조업 4/104)를 공제(면세포기하고 영세 율 적용하는 경우 제외) <br> *한도 액:과세표준*30/100(과세표준2 억 <br> 이하 개인은 $50 / 100,2$ 억초과는 $40 / 100$ ) *공제율 <br> (3)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br> (1)건물,구축물 <br> 취득당시 매입세액*(1-5/100)* <br> 경과된 과세기간 수 <br> (2)기타 상각 자산 $\rightarrow$ 체감율 $25 / 100$ 적용 <br> (4)재고 매입세액공제 <br> 간이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공제 (일반 $\rightarrow$ 간이사업자 전환시 납부세액발 생) <br> 재고매입세액=재고금액*10/110 <br> * (1-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br> @감가상각 대상자산은 기간경과에 따 른 <br> 체감율 적용(건물 • 구축물 $5 \% /$ 기타 $25 \%$ ) @업종별 부가율/간이사업자의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율과 같음 $(5 \% 10 \% 20 \% 30 \%)$ <br> (5)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발급금액 또 는 <br> 전자화폐 결제금액의 $1 / 100$ (2014.12.31 까지는 $13 / 1000$ ) <br> * • 음식점업 •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 자 <br> 는 $2 / 100$ (2014.12.31까지는 $26 / 1000$ ) <br> - 연간공제한도:500만원(법인 제외) <br> (6)택시회사 경감세액 <br> 납부세액의 $90 \%$ 까지 경감 | (1)매입세액공제. <br> 과세매입에는 면세사업자나 소비자로 부 <br> 터 구입한 것도 포함되나 비과세나 면 세 <br> ,불과세되는 거래는 공제 안됨 <br> (관련장부 및 서류는 7년간 보존) 과세매입=상품, 운송비, 임차료,가스비, 건물, 비품, 화물자동차 등 <br> (2)매출대가 반환 세액공제 <br> (3)대손세액 공 제 <br> <매입세액 공제방법> <br> (1)간이과세 적용자 이외 <br> *과세매출 5 억엔 이하이며, 과세매출 <br> 비율 $95 \%$ 이상 $\rightarrow$ 전 액공제 <br> *과세매출 5억엔 초과 또는 과세매출 <br> 비율 $95 \%$ 미만 $\rightarrow$ (1)(2)중 선택 <br> (1)개별대응방식 <br> (2)일괄비례배분방식 <br> *일괄비례배분방식은 2 년간 계속 적 용 <br> 해야 함 <br> *반품, 매입할인의 경우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던지 매출세액에서 가산함. <br> *조정대상 고정자산 <br> 건물, 기계 등의 매입세액이 100 만 엔 이상으로서 과세매출비율이 크게 변동된 경우 3 년간 매입세액공제액 을 <br> 조정한다. <br> (2)간이과세 적용자:간주매입율로 계산 |  |
| :---: | :---: | :---: | :---: |


| (7)전자신고 세액공제 <br> - 납세의무자가 직접 확정신고시 1 만원 <br> - 납세의무자가 직접 소득, 법인세 2 만원 <br> -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신 고 <br> 시에도 위와 같은 금액 공제받음 (연간한도) <br> 세무사 400 만원/세무법인 1,000 만원 <br> (8)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 <br> 발급 건당 200 원(연간공제한도:100만 <br> 원) <br> *개인사업자가 2015.12.31까지 발급분) <br> (9)원산지 확인서 발급세액공제 건당 1 만원(연간한도 30 만원) (10)현금영수증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현금 영 <br> 수증 결제건수와 지급명세서 건수에 따른 금액 <br> (11)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고철 등 $6 / 106$ *중고 자동차 등 $9 / 109$ (12)고금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 사업자가 반지 등 중고금을 매입 시 <br> $3 / 103$ 공제(매입 한도:과세표준의 $80 \%$ ) *2013.12.31부 폐지 <br> (13)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br> ※과세•면세 겸업자의 경우 <br> 회계사무실 수수료, 광고선전비 등의 공 통 경비는 합리적방법으로 안분계산하 여 <br>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한다.(불공제) (1)안분기준 <br> -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있는 경우 면세관련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확정신고시 정 <br> 산) <br> (2)안분계산 하지 않는 경우 <br> - 당해 과세기간 면세공급가액 $5 / 100$ 미 만 <br> (단, 매입세액 5 백만 원 이상은 안분) - 당해과세기간 공통매입세액 5 만원 미 만 <br> 급 신규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중에 공 급 <br> 받은 재화를 당해 과세기간 공급 시 -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분 정산한다 <br> (14)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br> -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br> - 면세비율이 추후 과세기간에 $5 \%$ 이상 증감된 경우(과세기간 $25 \%$ 체감율 적 용) <br> - 면세비율 $10 \%$ 증가시( $10 \%$ 증가분 납 부) <br> - 면세비율 $20 \%$ 감소시( $20 \%$ 감소분 급) |  |  |
| :---: | :---: | :---: |




| 국가등에 대한 특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이 공급하는 다음의 재화,용역은 면세 우편물 배달용역/고속철도 여객운송/ 부동산임대업,도소매,음식 - 숙박업,골프 장 및 스키장 운영, 기타 스포츠시설 운 영(군무원,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용역은 제외)/면세되는 의료진료, 동물진료 용역 *국가 등이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1)사업단위의 특례일반 <br>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사업은 각각의 회계마다 하나의 법인이 행한것으로 봄 (2)자산양도 등 시기 특례 <br> 국가, 지방단체, 이에 준하는 단체의 자산 양도 및 과세매입 등의 시기는 회 계연도 말일에 행한 것으로 할 수 있다 (3)매입세액 공제특례 <br> 특별회계사업, 별표3법인,인격없는 사단 경우 특정수입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특정수입:차입금,채권발행수입,출자금, 예금,대부회수금,인건비 보조금 등 <br> (4)일반회계의 특례 <br> 공제가능 소비세액이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과 같은금액으로 정하여, 납부 세액이 없도록 된 일반회계는 확정신고 의무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br> (5)신고기한의 특례 <br> 결산기한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곤란하므로 신고 기한 특례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
| :---: | :---: | :---: |
| 신고•납부 | (1)확정신고 <br> 제1기 : 1월1일~6월30일 (7월25일까지) <br> 제2기 : 7월 1 일~12월31일 (익년1월25일 <br>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 일 <br> (2)예정신고 <br> -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하여야 함 <br> -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폐지 (공급가액 $1 / 3$ 이하, 조기환급 등은 가능) 제1기 : 1월 1 일~3월31일 (4월25일까지) 제2기 : 7월1일~9월30일 (10월25일까지 폐업자는 폐업한 달의 말일로부터 25 일 <br> (3)납부 <br> - 신고와 동시에 납부세액을 납부 <br> - 예정고지 : 개인사업자만 해당 <br>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 / 2$ 을 고지) - 수입재화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 에게 관세를 신고 납부할 때 부가가치 세를 함께 신고 납부한다 <br> - 주사업장 총괄납부자는 주된 사업장 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br> (4)간이과세자 <br> - 과세기간은 1 월 1 일~12월31일까지이며 익년도 1월 25 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br> -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 만원 미만 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br> (5)대리납부 <br>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 를 제공 받는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한다.(부가세법 52조) | (1)확정신고 <br> (1)개인사업자:익년3월말 까지 <br> (2)법인:과세기간종료 후 2 개월 <br> *과세기간 무실적, 무납부 경우 <br> 확정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br> *매입세액이 매출세액 초과시 환급 <br> *신고와 동시 납부 <br> (2)중간신고/2개월 이내 신고•납부 <br> (1)직전과세기간 확정세액기준으로 신고 (2)가결산 방법에 의한 신고 중 선택 <br> <과세기간 1 년/직전과세기간 세액>이 *4800만엔 초과자로 연 11 회의 중간신고 한 경우 직전과세기간 세액의 $1 / 12$ 납부 *400만엔 초과 4800만엔 이하로 연3회 중간신고한 경우 직전세액의 $3 / 12$ 납부 *48만엔 초과 400만엔 이하로 연1회 중간신고 경우 직전세액의 6/12납부 * 48 만엔 이하자는 중간신고의무 없음 <br> - 수입재화는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서를 제출, 납부 |



## 양국 신고서 작성사례(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한국측 세부담 및 신고서작성 사례/일반과세자>

## //////////////////////////////////////////////////////////////////////////////////////////////////////////./2)

[공통자료]
과세기간: 2013년4월1일~2013년6월30일(제1기 확정신고)
갑 (주)

1. 과세기간 매출금액(원):
(1)과세매출(부가세별도)
$376,190,476$ 한국은 세별도 경리방식임
(2)영세율매출(일본/면세매출)

11,000,000 수출물품
(3)면세매출(일본/비과세출) $8,000,000$ 농산물 등 면세거래
2.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 17,714,286
※과세매출 관련금액(부가세별도)
3. 과세매입금액 (부가세별도)

293,714,286
4. 매입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

11,904,762
※과세매입 관련금액(부가세별도)
5. 대손상각액(부가세포함)
1,500,000
6. 중간납부 부가가치세액

0 ※한국의 경우 법인은 중간납부제도 없음

## //////////////////////////////////////////////////////////////////////////////////////////////////////////)./2

2013.4.1~2013.6.30 2013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01) (과세)세금계산서 발급분
(05)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분
(08) (대손세액가감)
(09) (합계.)

| 358,476,190 | 세액 | 35,847,619 ※(376,190,476-반환 17,714,286) |
| :---: | :---: | :---: |
| 11,000,000 | 세액 | - |
| - | 세액 | $\triangle 136,363$ (1,500,000*10/110) |
| 369,476,190 세액 35,711,256 |  |  |
|  |  | 출,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과세매출란에 기입 |

[매입세액]
(10)(세금계산서 수취분)일반매입 $281,809,524$ 세액 $28,180,952$ (293,714,286-반환11,904,762)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 시 (11)고정자산매입란 기입
뼤엉신고 누락금액(1월~3월)기입
※의제매입세액(면세포기하고 영세율 적용하는 경우 제외)
면세농산물 구입가격의 $102 / 2$ (업종별로 $4 / 104,6 / 106.8 / 108$ 적용)
※재고매입세액(간이사업자 $\rightarrow$ 일반사업자로 변경 시)
대상: 재고품, 건설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
※변제 대손세액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환급세액 등을 기입
(16)공제 받지 못할 매입세액(-)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구입 유지, 접대비, 면세사업 및 토지관련매입세액,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안분계산
(17)차감계((10)~(16)) 281,809,524 세액 $28,180,952$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09)-매입세액(17)) 납부세액 7,530,304
[경감 • 공제세액]
(19)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
※개인은 발급금액의 $1.3 \%$ 또는 $2.6 \%$ (법인은 해당 없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21)
※예정신고(2014.1월~3월)때 환급세액이 발생하였으나 환급 받지 못한 경우
[예정고지세액](22)
※개인만 해당(법인은 해당 없음/예정신고를 하여야 함)
[가산세 액계](25)
※미등록, 매출관련, 매입관련, 현금매출 명세서 관련 가산세(공급가액의 $0.1 \% \sim 2 \%$ )
[차감•가감 후 납부할세액](26) 납부세액 7,530,304
(78)면세사업 수입금액
8,000,000

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 $\quad 377,476,190<(09)+(10)\rangle$

## <일본측 세부담 및 신고서작성 사례/일반과세자>

## [공통자료]

과세기간 : 2013년1월1일~12월31일(1년)
갑 (주)

1. 과세기간 매출금액(엔):
(1)과세매출(세금포함) 395,000,000
(2)면세매출
(3)비과세매출
2.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
※과세매출 관련금액(세포함)
3. 과세매입금액 (세포함)

308,400,000
4. 매입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 12,500,000 ※과세매입 관련금액(세포함)
5. 대손상각액(세포함)

1,500,000
6. 중간납부 소비세액
7. 중간납부 지방소비세액
$1,400,000$ ※한국의 경우 법인은 중간납부제도 없음 350,000
8. 기준기간 과세매출

## 

2013.1.1~2013.12.31
과세기간분의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확정) 신고서
(5)반환 관련세액
(6)대손세액공제
(8)공제부족 환급세액
(9)차감세액
(10중간납부세액
(11)납부세액
(15)과세자산 양도 등의 대가액 $369,476,189$
(16)자산양도 등의 대가액

0

1,609,500

708,571 ( $18,600,000 * 4 / 105$ )(1엔 미만 절사)
57,142 (1,500,000*4/105)
3,009,500 (10엔 이하 절사)
$1,400,000$ (한국의 경우 법인은 중간납부제도 없음)
$377,476,189$ (손익계산서상 매출금액)
<지방소비세액 계산>

| (18)차감세액 | $3,009,500$ |
| :--- | ---: |
| (20)납세액 | 752,300 |
| (21)중간납부 양도할 세액 | 350,000 |
| (22)납부 양도할 세액 | 402,300 |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합계세액 2,011,800

과세기간 : 2013년1월1일~12월31일(1년)

1. 과세기간 매출금액 :
(1)과세매출(공급대가)
45,300,000원
소매업 (부가가치율 10\%) 41,200,000원
서비스업(부가가치율30\%) 4,100,000원
소매업 (부가가치율 $10 \%$ )
서비스업(부가가치율 $30 \%$ )
4,100,000원
(2)면세매출
2. 상품매입원가/소매업 $(80 \%$ 가정)
카드매출금액/소매업( $80 \%$ 가정) 32,000,000원 32,000,000원
3. 대손상각액 560,000원
4. 직전연도 공급대가
40,232,353원(2012년도)

대상: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신고기간 2013.1.1~2013.12.3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과세표준금 액 계산
(2)과세분 소매업
(4)과세분 서비스업
(7)매출세액
(2)과세분 소매업
(4)과세분 서비스업
[공제세액]
(8)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9)의제매입 세액공제
(11)전자신고 세액공제
(12)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1.3\%)

대손세액공제
(16)예정고지세액
(25)가산세액
(26)차감납부할세액
(31)면세수입금 액(소매)

44,100,000 (45,300,000-1,200,000)
40,100,000 (41,200,000-1,100,000)
4,000,000 (4,100,000-100,000)
521,000
401,000( $40,100,000 * 10 \%$ (부가가치율*10\%부가가치세율)
120,000 (4,000,000*30\%*10\%)
521,000 (공제세액 합계액이 736,000 원이나 초과금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320,000
(상품매입 $32,000,000 * 10 \%$ 부가가치세*10\% 부가가치율) 0 (음식업의 경우 농산물 구입가액의 8/108공제) 0 (본인이 전자신고하는 경우 10,000 원 공제)
201,000 (세액공제 가능액 $32,000,000 * 1.3 \%=416,000$ ) (통상적으로 카드매출비율이 $80 \%$ 초과함)
0 (대손세액공제제도 없음)
0 (200,000원 미만 경우 예정고지 없음)
0
0
1,000,000

주) (1)한국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0,000$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 자에 한하여 법에 정한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며
(2)도매업 및 제조업 등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영세한 소매업 등과 음식 점업 및 부동산 임대업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으며
(3)특히 과세매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거의 모든 거래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하여 매출이 이루어 지므로 각종 공제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 함으로서 납부세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일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제외)

## <일본측 세부담 및 신고서작성 사례/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 2013년1월1일~12월31일(1년)

1. 과세기간 매출금액 :
(1)과세매출(세금포함)

소매업 (제2종사업)
서비스업(제5종사업)
(2)면세매출
2. 대손상각액
3. 기준기간 과세매출액

45,300,000엔
41,200,000엔 4,100,000엔 1,000,000엔 560,000엔
40,232,353엔(2011년도)

## 

```
2013.1.1~2013.12.31
과세기가ᄂ부ᄂ의 소비세 미ᄎ 지바ᄋ소비세 (화ᄀ저ᄋ) 시ᄂ고서
```


(b)특별/과세매출(반환 공제 전) $43,142,000$
[(과세표준 소비세액)1,725,680-(반환관련 소비세액)45,714] = 1,679,966 $1,679,966 * 80 \%$ (간주매입율) $=1,343,972$
※소매업매출이 $75 \%$ 를 초과하므로 소매업 간주매입율 $80 \%$ 를 일괄 적용함
(5)반환 관련세액
(6)대손세액공제
(8)공제부족 환급세액
(9)차감세 액
(10)중간납부세액
(11)납부세액
(15)과세기간 과세매출액

기준기간 과세매출액

45,714 (1,200,000*4*100/105)
$21,333(560,000 * 100 / 105 * 4 \%)$
0
314,600 (10엔 이하 절사)
0
314,600
43,000,000
40,232,353

〈지방소비세액 계산>
과세표준이 되는 소비세액 314,600
환부액 $25 \%$ 납세액
78,600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합계세액 393,200

## II 일본의 소비세법 (주제/일본)

## I 총설

1. 간접세의 개요
(1) 조세의 분류와 간접세

실제로 세금의 부담자와 납부자가 동일한 것을 직접세 다른 것을 간접세라 고 하는 학설이 대표적이다. 소비세는 물품판매 등을 사업으로 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되어 있지만 그 물품 등의 거래가격에 부가되어 이것을 구입 하는 소비자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기 때문에 간접세에 속하는 조세이다.
(2) 간접세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간접세는 동일한 소비에 동일한 세부담을 부과하는 수평적 공평을 도모하 는데 우수하지만, 세부담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적인 부담에 의한 수직적 공평을 도모하기 어렵고, 개개의 사정을 배려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3) 간접세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

일본의 간접세(국세)에는 소비세, 주세, 담배세, 휘발유세, 석유가스세, 항공 기연료세, 인지세 등의 세목이 있다.

## (4) 종량세와 종가세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종량세는 과세물품의 수량 등을 종가세는 거래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소비세는 종가세이고, 과세표준의 산출이 반드시 용이하지는 않지만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을 기하기 쉽고 과세물품의 가격변동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2. 소비세신설 배경
(1) 세제전체의 공평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풍족하고 안전한 일본사회에서 누구나 향유하는 사회공통의 편 익을 조달하기 위한 기본적인 부담은 국민이 가능한 폭넓고 공평하게 분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고방식이 널리 퍼지어 1988년 4월 세제조사회는「이제부터 세제를 구상함에 있어서 소비를 기준으로 넓고 적은 부담을 요 구하는 간접세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종래 개별간접세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비세 도입전의 간접세는, 특정물품 등에 부과하는 개별간접세제도가 중심 이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상승, 소비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지출 전체 에서 과세할 물품 등을 객관적 기준에서 선택하여 정하는 것이 곤란해지고,

물품과 서비스와의 부담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세계주요국을 보아도 개 별간접세제도의 채택은 일본 뿐 이며 국제마찰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3）고령화 사회에의 대응을 위하여
앞으로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연금，의료，복 지를 위한 재원이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령화 사회에서 주로 「일하 는 층（20세～64세의 사람）」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까지의 세제에서는 납세자 의 세금에 대한 중압감，불공평이 높아져 근로의욕의 저해가 염려되었다．
（4）소비세도입의 필요성
이상과 같은 점에서 세제전체로서의 부담의 공평을 높이고 간접세가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여 종래의 개별간접세제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전반에 광범위하고 적은 부담을 요구하는 소비세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소비세법은 1988년 12월30일 시행，1989년 4월1일 적용 실시되었다．

3．소비세개정과 지방소비세의 신설
（1）소비세법에 대하여 어떠한 개정이 있었는가
1991년 개정 시 비과세범위의 확대와 중소사업자에 관계되는 특례제도의 재검토 등，1994년 가을 세제개정（1997년 4월 시행）시 세율을 $3 \%$ 에서 $4 \%$ 로 인상 등，2003년도 개정（2004년 4월 시행）시에는 납세의무자가 면제되는 기준기간에 있어 과세매출액의 상한인하 등，2012년 8월「사회보장과 세의 일체개혁」에서는 2014년 4월1일부터 세율을 $6.3 \%$ 로 인상，2015년 10 월1 일부터 $7.8 \%$ 로 인상 등이 결정되었다．
（2）지방소비세란 어떠한 것인가
지방분권의 추진，지역복지충실 등을 위해 지방재원의 충실을 도모하며 소 비양여세（소비세수입액의 20\％）에 대신하여 「지방소비세」가 신설되었다．

4．소비세의 용도
（1）국가•지방간의 소비세수의 배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2013년도 예산에서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합한 세율 $5 \%$ 중 $1 \%$ 는 지방공 공단체의 일반재원이 되는 지방소비세이다．또한 $4 \%$ 는 국가의 소비세이지 만 그 중 $29.5 \%$ 는 지방교부세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배분된다．
（2）소비세의 「복지목적화」란 무엇인가

소비세의 수입은 연금，의료 및 간호 등의 사회보장 또는 소자화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된다．

5．소비세의 개요
（1）소비세에는 어떠한 성격이 있는가
（1）소비세는 소비에 대해 광범위하고 공평하게 과세
의료，복지，교육 등의 한정된 것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물품의 판매 등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외국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2）소비세는 소비자에 전가
소비세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물품 등의 가격에 포함되어 제조부터 도，소매， 소비자에게로 순차적으로 전가되는 것을 예상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부 소비 자에 전가되어 소비자가 물품 구입 등을 통해 부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세의 누적을 배제
소비세는 생산，유통의 각 단계에서 과세되지 않도록 매출에 대한 소비세 액에서 매입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여，세액이 누적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다．
（2）소비세의 기본적인 흐름과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1）과세 대상
국내거래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수입거래는 보세구 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2）비과세거래，면세거래
비과세거래는 소비세의 성격상 과세에 적합하지 않은 것，사회정책적 배려 에 의한 것 등 국내거래에 대하여 13항목，외국화물에 대하여 7항목，면세거 래는 수출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3）납세의무자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사업자，수입거래에 있어서는 보세구역에서 과세화물 을 반출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4）과세기간（원칙）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역년，법인의 경우는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5）과세표준•세율•납부세액의 계산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가 과세표준이며 세율은 $6.3 \%$ 이다．납부세액은 과세매출액 $($ 세 제외 $) \times 6.3 \%$－과세매입액（세 제외）$\times 6.3 \%$ 로 계산한다．
（6）신고•납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종료 후 2 개월 이내（개인사업자는 익년3월말까지） 에，「중간신고」는 매월（년1회）， 3 개월마다（년3회），또는 6개월 경과 후（년1 회）에 신고 및 납부한다．중간납부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II 과세대상

## 1．개설

（1）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무엇인가
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한 자산의 양도 등（국내거 래）및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외국화물（수입거래）에 한정된다．
（2）「과세대상」과 「거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소비세의 「과세대상」과 「거래」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2．과세대상이 되는 국내거래
（1）과세대상이 되는 국내거래는 무엇인가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거래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에서 행하는 거래（국내거래）일 것
－사업자가 사업으로 행하는 것일 것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일 것
－자산의 양도，자산의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일 것
（1）국내거래의 판정기준
소비세는 사업자가 국내와 국외의 쌍방에 걸쳐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 국내거래인가 국외거래인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자산의 양도 또는 자산의 임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 또는 자산의 임대가 이루어지는 때에 그 자산이 소재한 장소가 국내인 경우 국내 거래가 된다．

「용역제공」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장소가 국내 인 경우 국내거래가 된다
（2）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행한 거래
「사업자」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그 개인 또는 법인이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를 불문한다

「사업으로서 행하는」이란 사업의 양도，자산의 임대 및 용역의 제공을 반 복，계속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며，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 등 사업활동에 부수해서 행하는 거래도 이에 포함된다
（3）대가를 받고 행하는 거래
「대가를 받고」란 자산의 양도，자산의 임대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해 반 대급부를 받는 것을 말한다
（4）자산의 양도 등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자산의 임대 또는 용역의 제 공을 말한다．

「자산의 양도」란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에 의해 자산의 동일성을 가지면 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임대」란 임대차나 소비대차 등의 계약에 의해 자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제공」이란 청부계약，운송계약 등에 의해 노무，편익，그 밖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불과세거래）란 무엇인가
국외에서 행하는 거래（국외거래），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행하는 거래가 아 닌 거래，대가성이 없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산의 임대 및 용역의 제 공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거래
（1）과세대상이 되는 수입거래란 무엇인가
보세지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은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2）간주반출이란 무엇인가
보세구역에서 외국화물이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소비 또는 사용 한 자가 소비 또는 사용한 때에 외국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간

주하여 소비세를 과세한다．
그러나，외국화물이 과세화물의 원재료로서 소비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한다．

III 비과세와 면세

1．비과세
（1）비과세란 무엇인가
소비세의 과세대상거래 중에서 소비에 부담을 요구하는 세금으로서의 성격 상 과세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이나 사회정책적 배려에서 과세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않는 것 등，이러한 거래는 비과세로 하고 있다（법6（1），（2））．
（2）비과세거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소비세자체가 넓고 공평한 부담을 추구하는 세금이므로，비과세거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법6（1），（2），별표 제1 및 제2）．
（1）국내거래의 비과세
세금의 성격에서 과세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것
a．토지（토지의 위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양도 또는 임대（일시 적으로 사용하는 장소는 제외）
－「토지 위에 존재하는 권리」란 지상권（공중지상권을 포함한다），토지의 임차권，지역권，영소작권 등의 토지의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장소 등」이란 토지의 임대기간이 1 개월에 달하 지 않는 경우 또는 건물，주차장 그 밖의 시설이용에 수반하여 토지가 사용 되는 경우를 말한다．
b．유가증권，유가증권과 유사한 것 또는 지급수단（수집품 또는 판매용의 것을 제외）의 양도
－유가증권이란 국채증권，지방채증권，사채권，신주예약권 증권，주권 등을 말한다．
－유가증권과 유사한 것이란 등록된 국채，지방채，사채，주권의 발행이 없 는 주식 등을 말한다．
－지급수단이란 은행권，우표，환어음 및 약속어음을 말한다．
c．이자를 대가로 하는 대여금 그 외 특정자산의 임대 또는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용역제공 등
국채，지방채，사채，예적금 또는 대여금의 이자，투자신탁의 수익으로서 분 배되는 분배금，신용보증료，보험료，공제부금，어음할인료 등을 말한다．
d. 우표 류, 인지 및 증지의 양도

일본우편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우표 류 또는 인지의 양도 등
e. 물품권 (상품권 등)의 양도

물품권이란 예를 들면 상품권, 맥주권, 도서권과 같은 물품의 급부, 대부 또는 용역제공에 관한 청구권을 표창하는 증서를 말한다.
f.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이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관련 용역제공

국가, 지방공공단체, 공공법인, 공익법인 등이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로 써 등기, 등록, 허가, 지정, 검사, 증명, 공문서의 교부 등에 관한 것
g. 외국환업무에 관한 용역제공

외국환거래, 대외지급수단(신용장, 여행수표)의 발행 및 매매
사회정책적 배려에 기인하는 것
h. 공적인 의료보장제도에 의한 요양, 의료, 시설요양 또는 이들과 유사한 자산의 양도 등
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선원보험법,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 등의 규정 에 의하여 행하는 사회보험의료, 고령자의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 입원 시 식사요양비•특별요양비의 지급에 관한 요양 등
i. 간호보험에 관한 자산의 양도등(이용자의 선택에 의한 일부서비스를 제외)

- 간호가 필요한 자의 주택에서 행하는 방문간호, 방문입욕간호, 갱생지도를 위한 방문 등, 특별양호노인 홈 등의 시설에 다니게 하여 행하는 간호, 이 러한 갱생지도 등
- 특별양호노인홈에 입소하는 간호가 필요한자의 간호복지시설서비스나 간 호노인보건시설에 입소하는 간호가 필요한자의 간호보건시설서비스
j. 사회복지법에 규정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생활보호법에 규정한 구호•갱생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 아동복지법에 규 정한 유아원, 모자생활지원시설, 아동양호시설, 조산시설, 보육소 등을 경영 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양호노인홈 등을 경영하는 사업 등
k. 의사, 조산사, 그밖에 의료에 관한 시설의 관계자에 의한 조산 관련 자산 의 양도 등
임신검사와 임신판정 후의 검진, 입원, 분만 보조 등

1. 매장 관련 매장료, 화장 관련 화장료 등

다만, 장의업자 등에 지급하는 장의료는 과세대상이 된다
m. 신체장애자가 사용하기 위한 특수한 성상, 구조 또는 기능을 가진 물품의 양도, 임대 등
의수, 의족, 맹인안전지팡이, 의안, 점자기, 휠체어 등 후생노동장관이 재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n. 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금, 시설설비비 등

수업료, 입학금, 시설설비비, 입학검증료 등
o. 교과용 도서의 양도

문부과학장관의 검증을 받은 교과용도서
p. 주택임대

주거용에 사용하는 가옥 또는 가옥 중 주거용에 사용하는 부분
(2) 수입거래에 있어서 비과세

- 국내의 비과세거래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외국화 물 중에서 유가증권 등, 우표류, 인지, 증지, 물품권 등, 신체장애자용 물품, 교과용도서는 비과세한다 (법6(2)).

2. 면세
(1) 면세의 의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해 과세되어야 할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면세라 한다. 소비세는 국내서 소비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 해 세부담을 구하므로, 수출하여 외국에서 소비되는 것이나 국제통신, 국제 운송 등 수출에 유사한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면제된다(면세거래) (법 7,8).
(2) 면세거래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1) 수출면세 (수출에 유사한 거래를 포함) (법7(1)
a. 국내에서 수출로 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전형적인 수출거래) (법7 (1)1)

다만, 다음과 같은 거래는 수출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를 위해 하청가공이나 수출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국내자산의 양도 등
b.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임대(법7(1)2)

수입한 화물을 수입절차 없이 외국화물 그대로 전매 등을 하는 경우
c. 국내와 국외 사이의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또는 통신(국제운송, 국제통신) (법7(1)3)
d. 국내와 국외 사이의 우편 또는 편지 (령17(2)5)
(2) 수출물품판매장(면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여행자나 주일 군인 등의 비거주자에 대해 행하는 통상생활용도에 사용하는 물품의 양도
(3) 그 밖의 면세(소비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것)로는 외항선박 등에 적재 되는 물품의 양도(조법85(1)), 외국공관 등에 대한 과세자산 양도 등 (조법86 (1)), 해군판매소등에 대한 물품의 양도 (조법86의2(1), 합중국군대 등에 대 한 자산의 양도 등 (소득임특법7(1)등)이 있다.
（3）면세와 비과세의 차이
면세와 비과세의 차이는 매입 시 매입세액공제가 면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능하나，비과세의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또한 면세의 적용요건으로서 증 명서는 반드시 보존하여야 한다．

IV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성립

1．납세의무자
（1）국내거래의 납세의무자
국내거래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행하는 사업자 （「개인사업자」및 「법인」，국가나 지방공공단체，공공법인，공익법인 등을 포함한다）이며，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업자라도，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법2（1）4，3 ，5，60）
（2）수입거래의 납세의무자
수입거래에 있어서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로（법5（2）），사업 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개인이 수입하는 경우도 납세의무자로 된다．이는 소 비자개인이 직접 물품을 수입할 때에 과세하지 않으면 국내거래의 물품과의 사이에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법6（1），（2），별표 제1및 제2）

2．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면제
（1）납세의무면제 등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업무의 부담을 배려하여 그 과세기간의 기준기간에 있어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 이하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의 소비세의 납세의 무가 면제된다．（이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한다）（법9（1））
또한 그 사업연도의 기준기간이 없는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중에서 그 사업연도 개시일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천만 엔 이하인 법인（신설법인） 에 대해서는 그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법 12의2）．
그리고 2014년 4월1일 이후 새로 설립된 신설법인（시화복지법인을 제외） 으로서 그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이 1 천만 엔 미만으로， 당해 신규설립법인이 피지배회사인 경우 그 지배하는 그 밖의 자 또는 그 밖의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당해 신규설립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 억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법 12 의 3 ）．

한편 면세사업자는 과세사업자로 전환 가능한데 전환신청서（소비세 과세사 업자선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원칙적으로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간 이후부터 과세사업자로 된다（법 9（4））．또 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특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세무서 장에게 그 신청서（소비세 과세사업자선택 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9（5））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과세기 간 이후 과세사업자 선택신청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 부적용 신청서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납세의무자로 된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2 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 하는 과세기간의 초일 이후부터 제출할 수 있다（법9（6））．따라서 최저 2년간 은 과세사업자로서 신고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2010년4월1일 이후 과세사업자선택신청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 로 된 사업자 또는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사업자로 된 날 또는 신설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 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개시하는 각 과세기간 중에 조정대상 고정자산의 과세매입 등을 하고 그 과세매입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비세확정신고를 일반과세로 한 경우에는 당해 조정대상 고정자산의 과세매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 부터 원칙적으로 3년간 납세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법9（7），12의2（2））．
（주）조정대상 고정자산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그 취득가액（세 별도 가격）이 100 만 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법2（1）16，령5（1））．
（1）「과세기간」
과세기간이란 사업자가 납부할 또는 환급받아야 할 소비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계산기간을 말하며，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역년）（법 19（1）1）
－법인은 사업연도（법19（1）2）
（2）「기준기간」
납세의무의 유무를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으로（법2（1）14），개인사업자 는 그 해의 전전년，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전전사업연도가 된다
（3）「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기준기간 중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의 합계액（세별도 가 격）에서 매출 반품액，매출할인，리베이트금액（세 별도）을 공제한 금액이며 기준기간이 1 년이 아닌 법인은 그 금액을 1 년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9（2）1，2）．

예를 들면, 기준기간 6 개월의 사업기간으로 900 만 엔의 과세매출이 있는 경우 900 만 엔 $\div 6$ 개월 $\times 12$ 개월 $=1,800$ 만 엔이 되어 1 천만 엔 초과하는 사 업자가 된다
(2) 전년 또는 그전 사업연도 등에서의 과세매출에 의한 납세의무면제 특례 개인사업자의 그 해 또는 법인의 그 사업연도의 기준기간에 있어서 과세매 출액이 1천만 엔 이하인 경우 과세사업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의 그 해 또는 법인과세사업자의 그 사업연도에 관한 특정기간에 있어 과세매 출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개인사업자의 그 해 또는 법인의 그 사업연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법9의 2(1). 이 경우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특정기간 중에 지급한 소득세법에 규정한 지급명세 서에 기재한 급여 등의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특정기간의 과세 매출로 할 수 있다 (법9의 2(3)).
또한 특정기간이란 다음의 기간을 말한다

- 개인사업자의 그 연도의 전년 1 월 1 일부터 6 월 30 일까지의 기간
- 그 사업연도의 그 전 사업연도가 있는 법인의 당해 전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6 월의 기간
- 그 사업연도의 전 사업연도가 단기사업연도인 법인의 그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그 사업연도의 기준기간에 포함되는 것, 그 밖의 일정한 것을 제외)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
(3) 상속의 경우 납세의무면제의 특례

개인사업자는 전전년(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되는지 를 판단하지만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개 인이 상속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 납세의무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1) 상속이 있은 해(상속이 있은 날의 익일부터 그 해의 12월31일까지) 피상속인의 그 해의 전전년(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다 (법10(1)
(2) 상속이 있은 해의 다음연도와 그 다음연도

상속인의 그 해의 전전년(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과 피상속인의 그 해의 전 전년(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의 합계가 1 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연 도(상속이 있은 해의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는 납세의무 있다(법10(2)).
3. 납세의무의 성립
(1) 국내거래

국내거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때이며（통칙 법15（2）7）원칙적으로 인도한 날이다．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거래의 형태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과 같다．

| 거 래 의 형 태 | 성 립 시 기（원칙） |
| :--- | :--- |
| （1）재고자산의 판매（위탁판매등을 제외） | 그 인도가 있은 날 |
| （2）고정자산의양도（공업소유권등을 제외） | 그 인도가 있은 날 |
| （3）공업소유권등의 양도 또는 실시권의 <br> 설정 | 그 양도 또는 실시권의 설정에 <br> 관한 계약의 효력발생일 |
| （4）청부 |  |
| －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것 |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 <br> 방에게 인도한 날 |
| －물건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것 | 옥한 용역의 전부를 완료한낙알 제공을 완료한 날 |
| （5）인적용역의 제공（청부를 제외） | 지급 받기로 한 날 |
| （6）자산의 대부 <br>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해 사용료 등의 <br>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것 <br> －지급일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것 | 지급받은 날（청구가 있은 때에 <br> 지ㅂㅡㅡ하기로 한 것은 그 청구일） |

## （2）수입거래

수입거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이 다（통칙법15（2）7）．

V 과세표준과 세율

1．과세표준과 세율
（1）과세표준과 세율
（1）「과세표준」이란
「과세표준」이란 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과세대상을 구체적인 금액 또는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액이 산정된다．

국내거래의 과세표준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법28（1））이고， 수입거래의 과세표준인 대가액은 「관세과세가격（C．I．F가격）＋개별소비세 액＋관세액」（법28（3））이 된다．
（주）C．I．F가격은 수입항 도착가격으로 상품가격에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 지 소요되는 통상적인 운임－보험료가 가산된다．
（2）국내거래의 과세표준
국내거래의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과세표준」과 「간주양도 등 특수한 거래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a．일반적인 과세표준
국내거래에 있어 소비세의 과세표준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이다 （법28（1）．
b．특수한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
－법인의 임원에 대한 저가양도（통상판매가격의 대략 $50 \%$ 미만 금액으로 양도）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법28（1））
－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등의 가사소비 등에 있어서는 자산의 시가에 상 당하는 금액（법28（21）
－법인의 임원에 대한 증여에 있어서는 증여한 자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 액（법28（2）2）．
c．대가액의 계산
1）과세자산과 비과세자산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
비과세자산인 토지와 과세자산인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의 자산의 대가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구분을 하여야 하지만 합리적이 구분
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시의 가액（시가）의 비율에 의해 구분한다 （령45（3）．
2）개별소비세의 취급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에는 주세，담배세，휘발유세，석유석탄세， 석유가스세 등의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지만，한편 이용자 등이 납세의무 자로 되어 있는 경유인수세，골프장이용세 등의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자산 의 양도 등의 대가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다만 그들 세액이 명확히 구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자산 등의 대가액에 포함된다．
3）원천소득세가 있는 경우의 취급
변호사 등의 보수•요금 등과 같이 원천징수되는 경우의 과세자산의 양 도 등의 대가액은，실제로 수령한 금액이 아니라 원천징수되기 전의 금액으 로 한다．
4）대가액이 미확정인 경우
과세기간 말일까지 대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동일자 현황

에 따른 적절한 금액으로 하며, 그 후 확정된 대가액이 적절히 계상한 금액 과 상이한 경우 그 차액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조정한다.
(3) 수입거래의 과세표준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과세화물의 과세표준은 관세과세가격 (통상은 C.I.F 가격)에 관세 및 개별소비세액을 합한 금액이다(법28(3)). 이 경우 개별소비 세액에는 과세화물이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부담한 주세, 담배세, 휘발유 세, 석유석탄세, 석유가스세 등이 있다.
(4) 세율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율은 $6.3 \%$ 의 단일세율(법 29)이지만, 그 밖에 지방소비세가 소비세액을 과세표준으로 $17 / 63$ (지방세법 72 조의 83 ) (소비세율 $1.7 \%$ 상당)의 세율로 부 과되며 소비세와 지방소비세를 합한 세율은 $8 \%$ 이다.
(참고) 2014 년 3월31일까지는 세율 $4 \%$, 지방소비세율은 $25 \%$ (소비세율 $1 \%$ 상당)로 합계 세율은 $5 \%$.
(2) 과세표준액 등의 계산
(1) 과세표준액이란

소비세의 과세표준액은 과세기간 중에 국내에서 행해진 과세자산의 양도 등 중에서 면세거래를 제외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과세표준금액의 합계액이다(법45(1)1).
(2) 과세표준액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 시 사업자가 선택한 회계처리의 방식에 따 라서 다음 산식에 의한다

이 계산에 따라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천 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를 절사한다(통칙법118(1)).
a. 세 포함 경리방식의 경우

과세표준액=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세 포함) 합계액 $\times 100 / 108$ (천 엔 미만 절사)
소비세 액=과세표준액 $\times 6.3 / 100$
b. 세 별도 경리방식의 경우

과세표준액=\{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세 별도) 합계액 + 가수소비세 등의 액 $\} \times 100 / 108$ (천 엔 미만 절사)
소비세액 $=$ 과세표준액 $\times 6.3 / 100$
(3) 소비세액 등 상당액을 구분 영수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위 (2)의 원칙계산에 의하는 외에 가격표시에 있어 총액표시의무화에 수반 하여 (법63) 다음과 같이 소비세액 계산의 특례가 인정된다.
a．사업자간 거래의 경우
총액표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상 수 령할 금액（세포함대가）을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세별도）과 소비세액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증 또는 청구서 등에 명시하여，구분하여 영수하 고 있는 경우，개개의 거래마다 구분하여 영수한 소비세액 및 지방소비세액 의 합계액（이하「소비세액 등」이라 한다）의 63／80상당액을 과세표준액으 로 소비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당분간 인정된다（2003년도 개정규칙부칙2（2））． b．「세 포함 가격」에 따라 대금결제를 할 때의 특례

「세 포함 가격」에 따라 대금결제를 할 때에 발행되는 영수증 등에 있 어서 그 영수증에 포함된 소비세상당액（영수금액에 8／108을 곱하여 산출 한 금액）의 1 엔 미만의 단수를 처리한 후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단수처리 후의 소비세상당액을 근거로 소비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이 특례 대상이 되는 거래는 총액표시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자간 거래 등 또 는 총액표시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로 총액표시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 의 적용 등이 있다（2003년도 개정 규칙부칙2（3））．

【원칙적 계산 계산사례】

| 과세매출 | 본체가격 | 소비세 등 | 합계（세포함가격） |
| :---: | ---: | ---: | :---: |
| 매출 A | $14,550,926$ 엔 | $1,164,074$ 엔 | $15,715,000$ 엔 |
| 매출 B | $7,087,963$ 엔 | 567,037 엔 | $7,655,000$ 엔 |
| 매출 C | $1,188,889$ 엔 | 95,111 엔 | $1,284,000$ 엔 |

【세 포함 경리방식의 경우 】
（1）과세매출액 $($ 세포함 $)=15,715,000+7,655,000+1,284,000=24,654,000$
（2）과세표준액 $\quad=24,654,000 \times 100 / 108=22,827,000$（천엔 미만절사）
（3）소비세액 $=22,827,000$ 엔 $\times 6.3=1,438,101$

【세 별도 경리방식의 경우】
（1）과세표준액 $=\{(14,550,926+7,087,963+1,188,889)$

$$
\begin{aligned}
& +(1,164,074+567,037+95,111)\} \times 100 / 108 \\
& =24,654,000 \times 100 / 108=22,827,000(\text { 천엔 미만 절사 })
\end{aligned}
$$

（2）비세액 $=22,827,000$ 엔 $\times 6.3 / 100=1,438,101$

VI 세액공제 등

1．세액공제의 개요
（1）세액공제란
소비세는 생산，유통，판매라는 거래의 각 단계에서 과세되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거래마다 그 거래가격에 소비세를 과세 하면 세금이 누적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그 누적된 세금을 부담하게 된 다．그래서 소비세는 세금의 누적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 세액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을 공제하는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 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또한，과세매출에 대하여 가격인하나 대손 등의 일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 에는 세액조정을 하고 있다．

게다가 중소사업자의 납세업무부담을 배려하여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을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간편법（간이과세제 도）도 마련되어 있다．
（2）세액공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세액공제에는 다음의 세 종류가 있다
（1）매입세액공제（법31（1），37（1））
（2）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을 한 경우의 세액공제（법38（1））
（3）대손에 관한 매입세액공제（법39（1））
（3）납부세액계산의 구조
납부세액의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
$\triangle$ 과세매입 등에 관한 소비세액
（원칙）전액공제
개별대응방식
일괄비례배분형식
（특례）간이과세방식
$\triangle$ 매입대가의 반환 등에 관한 소비세액
$\triangle$ 대손에 관한 소비세액
＝납부세액
그리고 실제계산방식에 있어서는 후술하는「X 참고」설문의 신고서작성 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매입세액공제
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는 국내에서 행하는 과세매입 및 보세구역에 서 반출하는 과세화물에 관한 소비세액（이하 「과세매입 등의 세액」이라 한 다）을 과세매입 등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소비세액 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법30（1））．이를 매입세액공제라 한다（법2（1）12）． （1）과세매입

「과세매입」이란 사업자가 사업상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양수하거나 혹 은 빌리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법2（1）12）．
（주）
1．상기「과세매입」은 당해「타인」이 사업상 당해 자산을 양도하거나 혹은 임대 또는 당해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정（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해당）할 경우 과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이외의 것에 한 정된다．
2．「타인」에는 과세사업자에 한하지 않고，면세사업자나 소비자도 포함한다．
3．「용역제공」에는 소득세법 제 28 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급여 등을 대가로 제공하는 용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통칙】기통 $11-1-1 \sim 11-1-3$
（2）과세매입의 범위와 대상
과세매입의 범위는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것 외에 면세사업자나 소 비자로부터 매입해도 그것이 사업으로서 매입한 것이라면 과세매입의 범위 에 해당된다．구체적으로는 상품의 매입 외에 비품，소모품의 구입이나 화 물자동차，건물 등의 고정자산의 매입도 포함한다．다만 비과세나 면세，불 과세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매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3）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법30（1）각호）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 $=$ 과세매입 관련 지급한 대가액 $\times 6.3 / 100$
（주）「과세매입 관련 지급한 대가액」은 「과세매입한 대가액」으로 세 포 함금액이다（법30（6）
（4）매입세액공제의 요건
사업자（면세사업자를 제외）는 과세매입 등에 관한 소비세액을 공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매입 등의 사실을 기재한 장부 또는 청구서 등의 서류를 7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법30（7），령50（1）．
3. 매입공제세액의 계산방법
(1) 매입공제세액의 계산

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실제로 공제 가능한 세액 (매입공제세액) 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 과세기간 중의 과세매출액이 5 억 엔을 초과하는지 또는 5억 엔 이하라도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인가, $95 \%$ 미만인가에 따라 다르다 (법30(2)).

【매입공제세액 계산방법의 구분】

(2) 과세매출비율과 그 계산

과세매출비율이란 그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국내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 의 합계액) 에서 차지하는 과세매출액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 의 합계액) 의 비율을 말한다 (법30(6))

그리고 과세매출 비율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의 합계액
과세매출비율 $=$

>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자산의 양도 등의 합계액

과세매출(세 별도) + 면세매출
과세매출(세 별도) + 비과세매출 + 면세매출
(주) 그 과세기간 중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의 합계액 또는 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 (매출반환 등) 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 (세 별도) 에서 매출반환등 의 금액 (세 별도) 을 공제한 잔액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령48(1))
(3) 과세매입 등의 세액 전액이 공제 가능한 경우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 5 억 엔 이하이고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사 업자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 전액이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법30(1))
(주) 매입세액공제는 본래 사업자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하기 위한 과세 매입 등에 관하여 그 과세매입액 등과 관련한 소비세액을 공제하는 것이지 만,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인 경우는 사업자의 매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과 세매출의 비율이 근소 ( $5 \%$ 이하) 하므로 이러한 자에 대하여 업무부담을 경 감해주기 위하여 복잡한 매입공제세액 계산을 하지 않고 끝내도록 하고 있 다.
(4) 과세매입 등의 세액전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경우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억 엔을 초과하는 사업자 또는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없고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대응하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된다 (법30(2)).

이 경우의 계산방식에는 개별대응방식과 일괄비례배분방식의 두 가지 방 법이 있다.
(1) 개별대응방식

개별대응방식이란 그 과세기간 중에 행한 과세매입 등의 소비세액을
a.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만 사용하는 것
b. 그 밖의 자산 (비과세자산) 의 양도 등에만 사용하는 것
c.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그 밖의 자산의 양도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으 로 구분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법30(2)1).

| 매입공제세액 $=$ | 가 <br> 과세자산의 양 도 등에만 필 요한 과세매입 등의 세액 | + | 나 <br>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그 밖의 자산의 양도 등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과세 매입 등의 세액 | 과세 <br> 매출 <br> 비율 |
| :---: | :---: | :---: | :---: | :---: |

## （주）

1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매출비율에 대신하여「과세매출비 율에 준하는 비율」에 의할 수 있다（법30（3））．
2 「그 밖의 자산의 양도 등에만 사용하는 것」이란 법제6조의 1항「비과세」 의 규정에 의해 국내에서 비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등（비과세자산의 양도 등） 을 행하기 위해서만 필요한 과세매입 등을 말한다（기통11－2－15）
（2）일괄비례배분방식
일괄비례배분방식이란 과세매입 등의 소비세액을 개별대응방식을 적용하 는 전제가 되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도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의 매입공제세액의 계산방식이며 매입공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다（법30（2）2）

매입공제세액＝


과세매출비율
（주）일괄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 사업자는 2년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하며 그 후는 개별대응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법30（5））
（5）매입반품 등이 있는 경우의 매입공제세액의 계산
（1）사업자가 국내에서 행한 과세매입에 관한 반품이나 가격할인 등을 하므 로서 과세매입 관련 대가의 반환 등을 받은 경우 그 반환 받은 과세기간 중 의 과세매입 등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그 반환한 대가 등에 관한 소비세액을 공제한다（법32（1）．

그 대가의 반환 등에 관한 소비세액은 매입에 관한 소비세액의 산출에 사용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하고 공제를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소비세액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액을 가산한다（법32（2））
a．과세매출액이 5억 엔 이하며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인 경우（법32（1）1）

## 【산식】

매입공제세액 $=$\begin{tabular}{|l}
그 과세기간의 과세매 <br>
입 등의 세액 합계액

$\quad-$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 매입관련 대가 <br>
의 반환 등을 받은 금액의 소비세
\end{tabular}

b．과세매출액이 5 억 엔 초과 또는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인 경우
1）개별대응방식의 경우（법32（1）2）

## 【산식】

매입공제세액＝（1）의 금액 + （2）의 금액
（1）

|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
| :--- |
| 만 사용하는 과세매입 |
| 등의 세액 합계액 |$-$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만 사용하는 과세매입액중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 매입과 관련하여 대가를 반환 받은 금액에 대한 소비세의 합계액
（2）

|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그 밖의 자산의 양도 등에 공 |
| :--- |
| 통 사용하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의 합계액 |$\times \quad$ 과세매출비율

$\begin{aligned} & \text {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그 밖의 자산의 양도 등에 공 } \\ & \text { 통 사용하는 과세매입중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 매입 }\end{aligned} \times \square$ 과세매출비율 과 관련하여 대가를 반화 받은 금액에 대한 소비세 의 합계액

2）일괄비례배분방식의 경우（법32（1）3）
［산식】

（2）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화물에 대해 소비세액을 환급 받은 경우에는 （1）과 마찬가지로 환급 받은 소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하며 공제를 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공제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관한 소비세 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 가산한다（법32（4），（5））
（6）조정대상 고정자산에 관한 매입공제세액의 조정 계산
과세매입 등의 세액은 재고자산，고정자산을 불문하고 과세매입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렇지만 고정자산처럼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자산에 대해서 그 과세 매입 등을 한 때의 상황만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완결하는 것은 과세매출비율 이 크게 변동한 경우나 그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절한 방법이라 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과세매출비율이 현저하게 변동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 우 고정자산 중에서 일정금액 (100만엔) 이상의 것 (조정대상고정자산) 에 관하여 3년간에 한하여 매입공제세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법33,34,35).
(주) 조정대상고정자산이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건물, 구축물, 기계 또는 장치 그 밖의 자산으로 그 매입대가 (세 포함) 의 108분의 100에 상당 하는 금액이 100 만 엔 이상의 것을 말한다 (법2(1)16, 령5).
4.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제도란

간이과세제도란 중소사업자의 업무부담을 배려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 준기간에 있어 과세매출액이 5천만 엔 이하의 사업자가 선택에 의해 과세매 출액을 근거로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간편한 방법이다 (법37(1)).

원칙(일반)과세


원칙 (일반)과세 $\Rightarrow$ 과세표준액 $\times 6.3 / 100$ - 과세매입액 $\times 6.3 / 108=$ 납부세 액
간이과세 $\Rightarrow$ 과세표준액 $\times 6.3 / 100-$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 $\times$ 간주매입율 $=$ 납부세액
(2) 간이과세제도에 의한 경우의 매입공제세액의 계산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은 경우는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매입공제세액으로 보아 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공 제할 수 있고 원칙과세에 의해 과세매입 등의 세액을 근거로 매입공제세액 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 (법37(1))

매입공제세액 $=$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 $\times$ 간주매입율
(주)
1 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을 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 액」에서 매출대가의 반환 등에 관한 소비세액의 합계를 공제한다

2 대손회수액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 대손회수 액에 관한 소비세액을 가산한다．
3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의 합계액에 대 하여 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고 그 절사한 후의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3）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법37（1）．
（1）과세사업자의 기준기간에 있어 과세매출액이 5천만 엔 이하일 것
（2）「소비세간이과세제도선택제출서」 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과세 기간의 개시일의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주）2010년4월1일 이후에 과세사업자 선택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 로 된 사업자 또는 신설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조정대상고정자산의 과세 매입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조정대상 고정자산의 과세매입을 한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원칙적으로 3 년간은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할 수 없 다（법37（2））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사업자가 특례를 포기하려고 하는 때에는「소비 세간이과세제도 선택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만（법37（4）），이 부적용 신고 서는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으려고 하 는 과세기간의 초일부터 2 년을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 이후 가 아니면 제출할 수 없다（법37（5））

또한 간이과세제도의 선택신고서는 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잃지 않으므로 적용도중에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천만 엔을 초 과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되어도 그 후의 과세기간의 기준기간에 있어 과세매 출액이 5 천만 엔 이하의 과세사업자가 되면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 다．

【참고통칙】 기통13－1－3
（4）간주매입율
간주매입율은 사업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법37（1），령57 （1）（5）（6））．간주매입율의 적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제1종 사업부터 제5종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사업마다 과세매출액 관련 소비 세액에 간주매입율을 적용한다．

| 사업구분 | 간주 <br> 매입율 | 해당사업 |
| :---: | :---: | :---: |
| $\begin{gathered} \text { 제 } 1 \text { 종 사업 } \\ \text { (도매업) } \end{gathered}$ | 90\％ | 도매업（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그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 |
| $\begin{gathered} \text { 제 } 2 \text { 종 사업 } \\ \text { (소매업) } \end{gathered}$ | 80\％ | 소매업（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그 성질 및 형상을 변경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업으로 제 1 종 사업 이외의 것 $\rightarrow$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 |
| 제 3 종 사업 <br> （제조업 등） | 70\％ | 농업，임업，어업，광업，건설업，제조업（제조소매업 을 포함），전기업，가스업，열공급업 및 수도업（제 1 종 사업 또는 제 2 종 사업에 해당하는 것 및 가공 임，기타 이에 유사한 요금을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
| $\begin{aligned} & \text { 제 } 4 \text { 종 사업 } \\ & \text { (음식점 등) } \end{aligned}$ | 60\％ | 제 1 종 사업，제 2 종 사업，제 3 종 사업 및 제 5 종 사업 이외의 사업．예를 들면 음식점업，금융•보험 업 등이 해당 되며 사업자가 자기가 사용하던 고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해당 |
| $\begin{gathered} \hline \text { 제 } 5 \text { 종 사업 } \\ \text { (서비스업) } \end{gathered}$ | 50\％ | 제 1 종 사업부터 제 3 종 사업까지의 사업 이외의 사업 중 부동산업，운수통신업，서비스업（음식점업 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이 해당 된다． |

【참고통칙】 기통 $13-2-1 \sim 13-2-9$
그리고 간이과세제도의 간주매입율이 재검토되어 원칙적으로 2015년 4월 1 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금융업과 보험업은 제5종사업（간주매입 율 $50 \%$ ）으로，부동산업은 새로이 추가되는 제6종 사업（간주매입율 $40 \%$ ）으로 개정되었다
（5） 2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의 간주매입율의 산출
（1）원칙
각각의 사업구분마다의 과세매출액에 관한 소비세액에서 각각의 사업구 분마다의 간주매입율（위（4）의 표 해당율）을 곱한 금액의 가중평균치로 한 다（령57（2）．
（2）특례
아래의 $75 \%$ 이상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과세매출액」이란 과 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의 합계액에서 그 과세기간 중에 행한 과세매상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는소비세법 제7조 제1항＜수출면세 등＞，동법 제8조 제1항
＜수출물품판매장에 있어 수출물품의 양도에 관한 면세＞，그 밖의 법률 또 는 조약의 규정에 의해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하므로 이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a．하나의 사업에 과세매출액이 $75 \%$ 이상인 경우
2 이상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특정한 1 사업의 그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이 전체의 $75 \%$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75 \%$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의 간주매입율을 그 사업자의 과세매출액 관련 소비세액의 전 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령57（3）1）．
b．두 개의 사업 관련 과세매출액이 $75 \%$ 이상인 경우
3 가지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특정한 2 사업의 그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의 합계액이 전체의 $75 \%$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중 간주매입율이 높은 사업 관련 소비세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간주매입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의 사업 관련 소비세액에 대해서는 특 정한 2 사업 중에서 낮은 쪽의 간주매입율을 적용할 수 있다（령57（3）2）．
（주）또한 이 특례는「～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1）원칙적으로 간 주매입율과 이 특례 간주매입율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던 선택할 수 있다．
【참고통칙】기통 13－4－1，13－4－2
c．사업자가 사업마다 과세매출액을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마다 과세매출액을 구분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구분하지 아니한 과세매출액 관련 사업의 간주매입율 중에서 가장 낮은 간주매입율을，구분하고 있지 아니한 과세매출액 관련 소비세액에 적용하여 계산한다（령57（4））．

VII 과세기간，신고•납부，납세지

국세에 있어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는「신고납세방식」과 납부세액이 오로지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의 처분에 의해 확정하는「부과과세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통칙법16）．

소비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이며 신고와 납부는 국내거래에 대하 여는 사업자가 과세기간마다 행하고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화물을 반출 하는 자가 그 반출할 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1．과세기간
（1）과세기간판정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이며 중간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2）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판정
1월1일부터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이다（법19（1）1）．
【참고통칙】기통3－1－1，3－1－2
（3）법인의 과세기간의 판정
법인의 사업연도이다（법19（1）2）
【참고통칙】기통3－2－1，3－2－2
（4）과세기간의 특례란
개인사업자 및 사업연도가 1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과세기간의 특례를 받고 자 할 때 또는 이미 과세기간특례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다른 과세기간 특 례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비세과세기간특례선택•변경신고서를 제출하 므로서 그 과세기간을 1 개월 또는 3 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법19（1）3～4의 2）．
이상에 관하여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특례를 그만두고자 할 때에는 신고서（소비세과세기간특례 선택부적 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택한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초일 이후가 아니면 다른 과 세기간의 특례로 변경하는 신고서 또는 특례를 그만두고자 하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법19（3），（5））．
【참고통칙】기통3－3－1
2. 신고•납부
(1) 국내거래에 관한 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법인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 익일부터 2월 이내, 예를 들면 3월말 결산법인 은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익년의 3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한다 (조법86의4 (1).
a. 과세자산의 양도 등(수출면세 등 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이 없고, 납부할 소비세액이 없는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 (법45(1)단서).
b. 공제하는 소비세액이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을 상회하여 공제부족액 이 생기는 경우 또는 중간납부액이 확정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환급신고서를 제출한다 (법45(1), 46(1), 52(1), 53(1).
c. 가 결산에 의한 중간신고서, 확정신고서, 환급청구신고서에는 과세기간중 의 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 및 과세매입 등의 세액의 명세 그 밖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43(3), 45(5), 46(3)).


## (2) 중간신고

과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의 연간세액 (이하, 「확정연간세 액」이라 한다) 이 4,800 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400 만엔 초과 4,800 만 엔 이하인 경우 또는 48 만 엔 초과 400 만 엔 이하인 경우에는 각각 중간신고 를 하여 그 신고에 관한 소비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법42, 43, 48), 48 만 엔 이하이더라도,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므로서 중간신고가 가능하다 (법428). 중간신고는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을 근거로 하는 경우(원칙)와 가 결산에 의하는 경우(특례)의 두 가지가 있다.
a.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에 의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에 의하는 경우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 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법42(1), (4), (6)).

| 직전과세기간 확정 소비세액 | 구 분 | 중간신고 <br> 대상기간 | $\begin{aligned} & \text { 신고 및 } \\ & \text { 납부기한 } \end{aligned}$ | 중간신고세액 |
| :---: | :---: | :---: | :---: | :---: |
| 4,800만 엔 초과 <br> [연간 11회 중간 <br> 신고] | $\begin{aligned} & \text { 개 인 } \\ & \text { 사업자 } \end{aligned}$ | 1월 ~ 3월분 | 5월 말일 | [직전과세기간 <br> 확정소비세액(A)] |
|  |  | 4월부터11월까지 의 각 월분 | 신고대상기간말의 익일부터2월 이내 |  |
|  | 법 인 | 과세기간 개시 후 의 1 월분 | 과세기간개시일부 터 2월 경과일로 부터 2개월 이내 | $\times 1 / 12$ |
|  |  | 위 1월분의 익월 이후 10 개월 분 | 대상기간말일부터 2월 이내 |  |
| 400만 엔 초과 <br> 4,800만 엔 이하 <br> [연3회 중간신고] | 개 인 <br> 사업자 <br> - 법인 | 과세기간 개시일 후 3월마다 구분 한 기간 | 중간신고대상기간 <br> 말일 익일부터 2 <br> 개월 이내 | (A) $\times 3 / 12$ |
| 48만 엔 초과 <br> 400만 엔 이하 <br> [연1회 중간신고] | 개 인 사업자 <br> - 법인 |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 6월의 기간 | 중간신고대상기간 <br> 말일 익일부터 2 <br> 개월 이내 | (A) $\times 6 / 12$ |
| 48만 엔 이하 | 중간신고 필요 없음 <br> (주)사업자가 중간신고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분 중간신고를 할 수 있다. |  |  |  |

(주) 1. 과세기간이 1 년인 과세사업자를 전제로 하고 있음
2. 확정소비세액이란 원칙적으로 그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서에 기 재된 소비세액으로서 중간신고대상기간 말일까지 확정한 금액이다.
b. 가 결산을 하는 경우

가 결산에 의한 금액을 중간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법 $43,48)$.
c. 중간신고를 제출해야 할 사업자가 중간신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제출기한에 직전과세기간의 (나)에 의하여 계산한 소비세액을 기재 한 중간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법44).
(중간신고 구체적 사례)
1 직전 과세기간 확정소비세액이 400 만 엔 초과 4,800 만 엔 이하 과세사업자

| 1.1 | 3.31 | 6.30 | 9.30 | 12.31 |
| :---: | :---: | :---: | :---: | :---: |

$\leftarrow 1$ 회 중간신고기간 $\rightarrow \leftarrow 2$ 회중간신고기간 $\rightarrow \leftarrow 3$ 회중간신고기간 $\rightarrow$

(2개월 이내에 중간신고)
세액계산/ (1)직전과세기간 확정소비세액 $\times 3 / 12$ 또는
(2)가결산(3개월간 실적계산)

2 직전 과세기간 확정소비세액이 48 만 엔 초과 400 만 엔 이하 과세사업자 (확정소비세액 48 만 엔 이하로서 중간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를 포함)
| ------------------------과세기간----------------------------1
1.1
6.30
12.31


세액계산/ (1)직전과세기간 확정소비세액 $\times 6 / 12$ 또는
(2)가결산(3개월간 실적계산)
(2) 수입거래에 관한 신고와 납부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고자 하는 자(사 업자에 한하지 않으며 개인도 포함)는 반출하는 과세화물에 부과되는 소비세 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47(1), 50(1)).
또한 관세액의 확정에 관하여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자로 담보를 제공 한 경우에는 그 담보액 범위내에서 3개월 이내에 한하여 납기연장을 할 수 있다(법51).
(주)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은 무상거래의 경우 또는 사업상 이외 의 거래도 과세대상이다.

【참고통칙】 기통5-6-2
3. 납세지
(1) 납세지란

조세에 관하여 납세자와 국가간의 법률관계의 결합을 결정하는 장소를 말 하며,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2) 국내거래의 납세지란
(1) 원칙

국내거래의 경우 납세지란 개인과 법인과의 구분에 따라 원칙적으로 다음 에 같이 정해져 있다(법 20,22 ).

납세지
$\square$

$$
\begin{array}{|l|l}
\hline \text {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 & \text {--- 그 주소지 } \\
\hline \text { 국내 주소는 없고 거소를 둔 경우 } & --- \text { 그 거소지 } \\
\hline \text { 국내에 주소 및 거소가 없는 경우 } & \text {---사무소 등 소재지 }
\end{array}
$$



【참고통칙】 기통 $2-1-1,2-1-2,2-2-1$
(2) 납세지의 선택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의 규정 (납세지의 특례) 에 의해 주소지에 대신하여 거소지 또는 사무소등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비세에 관해 서도 그 선택한 거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가 납세지로 된다 (법21(1),(2)) (3) 납세지의 지정

소비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지의 관할국세 국장(지정되어야 할 납세지가 관할국세국장의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은 적당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법23(1), 령44)
(3) 수입거래의 납세지

수입화물의 거래에 관한 보세지역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 (법26).

VIII 국가 등에 관한 특례

## 1. 개설

소비세는 그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하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국가라도 보통의 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과세 의 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한 소비세의 계산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 등에 대해서는 아래 1 에서 5 에 게기하는 특례규정이 마련되 어 있다 (법60, 령72~78).
(1) 사업단위의 특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 또는 특 별회계를 두어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는 개개의 회계마다 하나의 법 인이 행하는 사업으로 본다 (법6(1)).
예를 들면, 지방공공단체가 행하는 수도사업, 교통사업, 병원사업, 공용하수 도사업 등의 사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령72(2)).
【참고통칙】기통16-1-2
(2) 자산의 양도 등의 시기 특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법인의 자산의 양도 등 및 과세 매입 그리고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시기에 관해서는, 그 회계연도 의 말일에 행해진 것으로 할 수 있다 (법60(2)(3)).
(3) 매입세액공제 특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두어 행하는 사업, 법 별표 제3에 게 기하는 법인 또는 인격이 없는 사단 등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에 대한 소비세 액에서 공제가능한 매입세액 등의 세액에 대하여 통상의 방식으로 계산한 과세매입 등의 세액에서 특정수입에 관계되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을 공제한 다 (법60(4)(5).

## (4) 일반회계의 특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일반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에 있어 서는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에서 공제가능한 소비세액은 그 과세표준 액에 대한 소비세액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는 뜻을 규정하여 (법60(6)) 납부 세액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규정을 정비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의 일반회계에 관한 업무로서 행하는 사업에 관해서는 확정신고서의 제출 등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법60(7)).
（5）신고기한의 특례
국세는 결산기한 등이 법령 등에 정해져 있어 원칙적인 신고기한까지는 신 고서를 제출하기 곤란하므로 신고기한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다（법608），령 76（1）（2）

2．매입세액공제의 특례
국가 등의 매입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보조금，회비，기부금 등의 대가성이 없는 수입을 「특정수입」으로서，특정수입과 동액을 과세매입 등으로 계산 한 소비세액을 매입공제세액에서 공제한다（법60（4））
（1）특정수입의 의의
특정수입이란 조세，보조금，교부금，기부금，출자배당금，보험금 및 손해배 상금 등이 있다（법60（4），령75（1））
【참고통칙】 기통16－2－1
（1）차입금 및 채권발행에 의한 수입으로 법령에 의해 반제 또는 상환을 위한 보조금，부담금 등을 교부 받는 것 이외 것
（2）출자금
（3）예금，저금 및 보관금
（4）대출회수금
（5）반환금 및 환급금
（6）다음의 수입
a．법령 또는 교부요강 등에 있어 특정지출을 위해서만 사용되는 수입 예를 들면，인건비보조액，이자전보금，토지구입을 위한 보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b．국가 등이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 이외의 수입의 사용용도를 밝힌 문서에 의해 특정지출을 위해서만 사용하기 위한 수입

【툭정수입의 의의】


특정지출 : (1)과세매입, (2)과세화물, (3)통상적인 차입금 등의 반환•상환금 (영75(1)6가 (1) ~ (3) 이외의 지출로서 예를 들면, 인건비, 이자, 토지구입 등의 지출이 해당된다.
(2) 특정수입이 있는 경우의 매입공제세액의 조정

국가가 원칙과세에 의해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정수입비율(주)이 $5 \%$ 를 초과하는 때에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계산한 특정수입에 관한 과세매 입 등의 소비세액을 통상의 계산방법에 의해 산출한 매입공제세액에서 공제 한 잔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공제세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국가 등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정수입비율 (ᄌ주) 이 $5 \%$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입공제세액은 조정할 필요가 없고 통상의 계산 방법에 의해 산출한 매입공제세액의 전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공제세액으 로 한다.
(주) 특정수입비율은 그 과세기간중의 특정수입의 합계액을 그 과세기간중 의 세 별도 과세매출액, 면세매출액, 비과세매출액 또는 특정수입의 합계액 의 총 합계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한다 (법60(4), 영75(3)).
[산식]

$$
\begin{aligned}
\text { 특정수입비율 }= & \text { 특정수입금액/ } \\
& \text { 자산양도 등 대가합계액+ 특정수입금액 }
\end{aligned}
$$

## IX 잡칙

## 1. 신고서의 제출의무

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요건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의 관할세무 서장에게 그 사실을 기재하여 다음에 게기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고 서 명 | 양식 | 제 출 요 건 등 | 조문 | 제출기한 |
| :---: | :---: | :---: | :---: | :---: |
| 소비세과세사업 자 신고 <br> (기준기간용) | 3- <br> (1) | 기준기간 과세매출 1천만 초과한 경 우 | $\begin{aligned} & \text { 법57 } \\ & \text { (1) } 1 \end{aligned}$ | 즉시 |
| $\begin{aligned} & \text { 소비세과세사업 } \\ & \text { 자 신고 } \\ & \text { (특정기간용) } \end{aligned}$ | $3-$ <br> (2) | 특정기간 과세매출 1천만 초과한 경 우 | $\begin{aligned} & \text { 법57 } \\ & \text { (1) } 1 \end{aligned}$ | 즉시 |
| 소비세과세의무 가 면제된 경우 신고서 | 5 | 기준기간 과세매출 1천만 이하인 경 우(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된 경 우) | $\begin{aligned} & \text { 법57 } \\ & \text { (1)2 } \end{aligned}$ | 즉시 |
| 사업폐지 신고서 | 6 |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한 경우 | 법57(1) | 즉시 |
| 개인사업자 사망 신고 | 7 | 과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 $\begin{aligned} & \text { 법57 } \\ & \text { (1) } 4 \end{aligned}$ | 즉시 |
| 합병에 따른 법 인의 소멸신고 | 8 |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한 경우 | $\begin{aligned} & \text { 법57 } \\ & \text { (1) } 5 \end{aligned}$ | 즉시 |
| 소비세의 신설법 인 해당 신고서 | $\begin{aligned} & \hline 10- \\ & (2) \end{aligned}$ |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천만 엔 이상 | 법57 <br> (2) | 즉시 |
| 소비세 과세사업 자 선택신고서 | 1 | 면세사업자(기준기간 과세매출 1천만 이하)가 과세사업자로 선택할 경우 | 법9 <br> (4) | 적용 개시 전일까지 |
| 소비세 과세사업 자 선택부적용 신고서 | 2 | 과세사업자로 선택 아니할 경우(단, 과세사업 선택 시 2 년간 적용. 조정대 산 고정자산 취득 시는 3 년간 적용) | $\begin{aligned} & \text { 법9 } \\ & \text { (5) (6) } \\ & \text { (7) } \end{aligned}$ | 면세 적용 <br> 개시일 <br> 전일까지 |
| $\begin{array}{\|l\|} \hline \text { 과세기간 특례 } \\ \text { 선택•변경신고 } \end{array}$ | 13 | 과세기간을 단축 시 또는 단축된 과세 기간을 변경할 때 | $\begin{aligned} & \text { 법19 } \\ & \text { (1)3~4 } \end{aligned}$ | $\begin{aligned} & \hline \text { 적용개시 } \\ & \text { 전일까지 } \end{aligned}$ |
| $\begin{aligned} & \text { 과세기간 단축선 } \\ & \text { 택 부적용신고서 } \end{aligned}$ | 14 | 단축된 과세기간을 그만둘 때(단 과세 기간 단축을 선택한 경우 2 년간 의무 | $\begin{aligned} & \text { 법19 } \\ & \text { (3)(5) } \end{aligned}$ | 변경기간 개시전일 |
| 소비세 이동신고 | 11 |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 법25 | 즉시 |
| 간이과세 선택 신고서 | 24 |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경우 | 법37(1) | $\begin{aligned} & \text { 적용기긴 } \\ & \text { 개시전일 } \end{aligned}$ |


| 신고서명 | 양식 | 제 출 요 건 등 | 조문 | 제출기한 |
| :--- | :--- | :--- | :--- | :--- |
| 간이과세선택 <br> 부적용신고서 | 25 | 간이과세를 포기할 경우（단 간이과세 <br> 를 선택한 경우 2년 의무적용．조정대 <br> 상 고정자산 취득 시 3년 의무적용 | （2）（3）（4）고하하는 <br> （5）6（과세기간 | 개시전일 |
| 과세매출비율에 <br> 준하는 비율부적 <br> 용 신고서 | 23 | 승인 받은 과세매출비율에 준하는 비 <br> 율 적용을 중지할 경우 | 법30（3） | 전용중지 <br> 과세기간 <br> 말일까지 |

【참고통칙】
양식통 $1 \sim 3$ 호 양식， $5 \sim 8$ 호 양식，10－（2）호 양식， $11 \cdot 13 \cdot 14$ 호 양식， $23 \sim 25$ 호 양식
＜소비세 과세사업자 신고서 제출 사례（개인사업자）》

＊과세매출액이 1천만 엔을 초과하여 2년 후에 과세사업자로 된 시점에서 속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인가
과세사업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보세구 역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국내거래관계

| 신고서명 | 양식 | 제 출 요 건 등 | 조문 | 제출기한 |
| :---: | :---: | :---: | :---: | :---: |
| 과세사업자 선택 （부적용）신고관련 특례승인 신청서 | 33 | 과세사업자 선택신고 또는 선택부적용 신고서를 재해 등으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전일까지 제출 못한 경우 | $\begin{aligned} & \text { 영20의 } \\ & 2(3) \end{aligned}$ | 재해 끝난 날 이후 2 개월 이내 |
| 간이과세자 선택 （부적용）신고관련 특례승인 신청서 | 34 | 간이과세자 선택신고 또는 선택부적용 신고서를 재해 등으로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전일까지 제출 못한 경우 | $\begin{aligned} & \text { 영 } 57 \text { 의 } \\ & 2(3) \end{aligned}$ | 재해 끝난 날 이후 <br> 2 개월 이내 |
| 재해로 인한 <br> 간이과세자 선택 <br> （부적용）신고관련 <br> 특례승인 신청서 | 35 | 재해발생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 적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적용할 필요 가 없어진 경우 | $\begin{aligned} & \text { 법 } 37 \text { 의 } \\ & 2(2) \end{aligned}$ | 재해 끝난 날 이후 2 개월 이내 |
| 과세매출 비율에 준하는 비율적용 승인신청서 | 22 | 과세매출비율에 대신하여 과세매출비 율에 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매입공 제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 법 30 의 <br> （3） | 승인받고자 <br> 할 때（승인 <br> 한과세기간 <br> 부터 적용 |

（2）외국화물
외국화물에 관한 소비세의 납기 연장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납기연장승 인신청서」에 의해 보세구역의 관할세관장의 승인을 받는다．

3．허가를 받을 의무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수출물품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개설하고자 하는 날의 전일까지「수출물품판매장허가신청서」（제20호 양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8（6））．

## 4．기장의무란

거래사실의 정확한 기록은 소비세를 적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기본이다． 즉 정확하게 납세를 하기 위하여 과세사업자는 장부를 구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법58）．
（1）기재사항은 거래년월일，거래내용，거래금액，거래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 칭 등이다（규27）．
（2）장부보존은 장부폐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말일의 익일부터 2개월을 경과한 날부터 7 년간，납세지 등에서 보존하여야 한다（령71（2））．

5．총액표시의무
총액표시의무는 「세별도 가격표시」에서는 출납계에 청구할 때까지 최종 적으로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알기 어렵고 또한 동일한 상품•서비스이면 서「세 별도표시」와 「세 포함표시」가 혼재되어 있으면 가격의 비교가 어 려우므로 가격표 등에 가격표시를 세 포함가격으로 통일하므로서「소비세 포함가격」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 등의 판 매，용역제공 등의 거래를 할 때에 미리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 그 상 품이나 용역 등에 관한 세 포함가격 표시가 의무화 되어 있다（법63의 2）．
（1）총액표시 대상 거래
반드시 총액표시를 해야 할 자는 소비세의 과세사업자이다．
또한，총액표시에는 소비자에 대한 상품의 판매，용역제공 등을 하는 경우 （소위 소매단계）의 가격표시를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자간 거래는 총액표시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총액표시의 방법
（1）총액표시의 구체적인 표시방법

다음과 같이 「세 포함가격」으로 표시한다．

```
10,290에ᄂ
10,290에ᄂ(세 포하ᄆ)
10,290에ᄂ (세 벼ᄅ도가겨ᄀ 9,800에ᄂ)
10,290에ᄂ(주ᄋ 세비세애ᄀ 드ᄋ 490에ᄂ)
10,290에ᄂ (세 벼ᄅ도가겨ᄀ 9,800에ᄂ, 소비세애ᄀ 드ᄋ 490에ᄂ)
```

（2）총액표시 대상이 되는 표시매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해당한다．
가격표，상품진열대，가게 내 표시에 따른 가격표시
상품포장 등에 글자 혹은 첨부된 표시가격
광고지，팜플렛，상품카타로그 등에 가격표시
신문，잡지，TV，인터넷홈페이지，전자메일 등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
포스터，간판 등에 가격표시

게다가 총액표시는 가격표시가 의무사항이며 가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에 표시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또한 구두에 의하는 것，견적서나 계약서 또는 결제단계에서 작성하는 청구서나 영수증은 총액표시 의무대상이 아니 다．

6．총액표시의무에 관한 특례
2014년4월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세율의 인상에 수반하여 소비세의 원활한 전가 및 사업자의 가격표 교체에 따른 업무부담을 배려하는 관점에서 「소 비세의 원활하고 적정한 전가를 위해 소비세의 전가를 저해하는 행위의 시 정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2013년10월1 일부터 2017년3월31까지 소비세법 제63조에 규정한 총액표시 의무의 특례 로서 세 포함가격의 표시가 필요 없게 되었다．
이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현재 표시한 가격이 세 포함가격이 라고 오인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본법10조제1항）했으며 또한 소비자의 편리성 관점에서 2017년3월31일까지라도 가능한 빨리 세 포함가 격을 표시하도록 해야 한다（본법10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1. 계정과목에서 본 소비세의 해당여부판정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에서 보아 어느 계정과목에 속하는 것 이 과세대상이 되고, 혹은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가를 표시하면 대략 다음의 표와 같다.
$\bigcirc$ 표시를 붙인 것이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고 한편 $\times$ 표 시를 붙인 것이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이 표는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여부를 한눈에 알기 쉽 도록 나타낸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할 때에는 사업성 유무 등 그 내용을 다시 파악할 필요가 있다.
(1) 손익계산서과목

| - | 계정과목 | 과세대상 | 매입세액공제 |
| :---: | :---: | :---: | :---: |
|  | 매출액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매 } \\ & \text { 촉 } \\ & \text { 응 } \end{aligned}$ | $\begin{aligned} & \text { 매출할인 } \\ & \text { 매출바ㄴㅜㅜㅁ } \\ & \text { 매출환급 } \end{aligned}$ |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 세액에서 공제 항목 |  |
| $\begin{aligned} & \text { ㅂ } \\ & \text { 맹 } \\ & \text { 총 } \\ & \text { 가 } \end{aligned}$ | 상품 (제품) 기초재고액 |  |  |
|  | 당기상품매입액 (당기제조원가 |  | $\bigcirc$ |
|  | $\begin{aligned} & \text { 매입할인 } \\ & \text { 매입바ㄴㅜㅜㅁ } \\ & \text { 매입환입 } \end{aligned}$ |  | 과세매입 등의 세액 합계에서 공제 항목 |
|  | 상품 (제품) 기말재고액 |  |  |
| 매출총이익 (또는 매출총손실) |  |  |  |
|  | 종업원 인건비 임금, 급여, 수당, 상여, 퇴직급여, 법정복리비 |  | $\times($ 통근수당은 $\bigcirc$ ) |
|  | 임원 인건비 보수, 상여, 퇴직금, 퇴직연금, 법정복리비 |  | $\times($ 통근수당은 $\bigcirc$ ) |
|  | 인재파견비 |  | $\bigcirc$ |
|  | 생명보험료 손해보험료 |  | $\times$ |
|  | 판매수수료 지급포장비 |  | $\bigcirc$ |
|  | 지급운반비 |  | $\bigcirc$ |


| - | 계정과목 | 과세대상 | 매입세액공제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튼 } \\ & \text { 판 } \\ & \text { 비 } \\ & \text { 및 } \\ & \text { 임 } \\ & \text { 부 } \\ & \text { 괄 } \\ & \text { 비 } \end{aligned}$ | 지급보관비 납입시험비 |  | $\bigcirc$ |
|  | 소모품비 <br> 사무용소모품비 <br> 도서비 <br> 위탁조사비 <br> 광고선전비 |  | $\bigcirc$ |
|  | 교제비 |  | O (상품권 등 구입비 <br> 용 및 위문금•사례금 <br> 등 현금지출은 $\times$ ) |
|  | 여행교통비 |  | O (해외여행관련 $\times$ ) |
|  | 통신비 |  | $\bigcirc$ (국제전화 등 $\times$ ) |
|  | 광열비 |  | $\bigcirc$ |
|  | 조세공과 |  | $\times$ |
|  | 감가상각비 |  | $\times$ |
|  | 이연자산상각비 |  | $\times$ |
|  | 지대 |  | 원칙 $\times$ (일시적 사용 <br> 에 관한 것은○) |
|  | 집세 |  | $\bigcirc$ (주거용 사용 $\times$ ) |
|  | 사무기 등 임차료 (리스료) |  | $\bigcirc$ |
|  | 회비 |  | 원칙× (통상적 회비 <br> 이외는 내용에 따름) |
|  | 기부금 |  | $\times$ |
|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  |  |  |
| $\begin{aligned} & 7 \\ & \text { 영 } \\ & \text { o } \\ & \text { 외 } \\ & \text { 수 } \\ & \text { 익 } \end{aligned}$ | 수입이자 및 할인료 <br> 유가증권이자 <br> 수입배당 | $\times$ |  |
|  | 지대 | 원칙× (일시적 사용에 관한 것은○) |  |
|  | 집세 | 사무소•창고용 등은 $\bigcirc$ <br> (주거용으로 사용 $\times$ ) |  |


|  | 계정과목 | 과세대상 | 매입세액공제 |
| :---: | :---: | :---: | :---: |
| $\begin{aligned} & \text { < } \\ & \text { 영 } \\ & \text { ㅂ } \\ & \text { 외 } \\ & \text { 잉 } \end{aligned}$ | 지급이자 및 할인료 사채이자, 사채발행비상각 |  | $\times$ |
|  | 대손상각 |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 세에서 공제 |  |
| 경상이익 (또는 경상손실) |  |  |  |
| $\begin{aligned} & \text { B } \\ & \text { ㅌㅡㅡ } \\ & \text { 별 } \\ & \text { ㅇ } \\ & \text { 익 } \end{aligned}$ | 토지양도차익 | $\times$ |  |
|  | 건물, 기구및비품 등 양도차익 | 양도대가 전액을 $\bigcirc$ |  |
|  | 채무면제이익 | $\times$ |  |
|  | 수입보험금 | $\times$ |  |
| $\begin{aligned} & \text { 팅 } \\ & \text { 특 } \\ & \text { 별 } \\ & \text { 솔 } \\ & \end{aligned}$ | 전기손익수정손실 |  | 내용에 따름 |
|  | 고정자산매각손실 |  | 양도대가 전액에 대해 (단, 토지의 양도 대가는 $\times$ ) |
|  | 재해손실 |  | $\times$ |
| 세차감전 당기순이익 (또는 세차감전 당기순손실) 법인세, 주민세 및 사업세 <br>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  |  |  |

(2)대차대조표과목 (기중 취득자산과 매입세액공제와의 관계)

| 계정과목 | 매입세액공제 |  |
| :--- | :--- | :--- |
|  | 현금예금 <br> 받을어음 <br> 외상매출금 <br> 유가증권 |  |
|  | 상품 <br> 제품 |  |
| 윰 |  |  |
| 봉 |  |  |
| 잔제품 |  |  |
| 산 | 원재료 |  |
| 재공품 |  |  |
| 자장품 |  |  |
|  | 선급비용 |  |
| 미수수익 |  |  |
| 단기대여금 |  |  |
| 미수금 |  |  |



2．소비세의 회계처리
（1）회계처리의 방법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관해서는（1）소비세 액을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법（세 포함처리）와（2）소 비세액을 매출액 또는 매입액에 포함하지 않고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세 별도처리 거래마다 구분하는 방법 또는 기말에 일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가는 기업의 임의이며 납부하는 소비세액은 기본적으 로는 동일하다．두 가지 회계처리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구 분 | （1）세 포함 경리방식 | （2）세 별도 경리방식 |
| :---: | :---: | :---: |
| 특 징 | 매출 또는 매입관련 소비세액은 매 출금액，자산취득가액 또는 용역제 공대가에 포함되므로 기업의 손익은 소비세의 영향을 받으나 세 별도방 식의 번거로움은 피할 수 있다． | 매출 또는 매입관련 소비세액은 가수 소비세 등 또는 가지급 소비세 등으 로 처리되어 기업이 일시적으로 예수 하게 되며 기업손익은 소비세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세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
| 매출관련 소비세액 | 매출에 포함하여 수익으로 계상한다 | 「가수소비세」 로 처리한다． |
| 매입관련 소비세액 | 매입금액，자산취득가액 또는 용역 제공대가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 「가지급소비세」로 처리한다． （주）1참조 |
| 납부세액 | 조세공과로서 손금（필요경비）산입한 다． | 가수소비세에서 가지급소비세를 공제 한 금액을 지출로 처리하며 손익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
| 환급세액 | 잡수입으로서 익금（수입금액）산입한 다． | 가지급소비세에서 가수소비세를 공제 한 금액을 입금으로 처리하며 손익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

（주）
1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인 사업자는 기말에 다음의 처리를 한다
（1）「가지급소비세」를 공제대상세액과 공제대상 외 소비세액으로 구분한다．
（2）공제대상소비세액 등에 관해서는 가수소비세 등에서 공제한다．
（3）공제대상 외 소비세액 등에 관해서는 이연소비세액 등으로서 5년간 이상 손금（손금경리를 요건）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개개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계상할 수 있다．
다만，다음의 것에 관해서는 법인은 손금처리 할 수 있으며（경비 관련되는 것 이외는 손금경리가 요건）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서 처리할 수 있다．법 인의 교제비에 관련되는 것은 교제비의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상 지출교제비 금액에 가산한다．
a．과세기간의 과세매상비율이 $80 \%$ 이상인 경우에 공제대상 외 소비세액 등
b． 20 만 엔 미만의 공제대상 외 소비세액 등（개개의 자산마다 판정한다）
c．재고자산 및 경비에 관한 공제대상 외 소비세액 등
2 소비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 포함 경리방식을 따른다．
（1）구체적인 분개방법 과세매출액이 5 억 엔 이하이며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구체적인 거래에 따른 두 방법에서의 분개는 다음과 같다．

| 【예1】상품 864，000엔（세 포함） 외상으로 구입 | （매입） 864,000 <br> （외상매입금）864，000 | （매입）800，000 <br> （가지급소비세 등） 64,000 <br> （외상매입금）864，000 |
| :---: | :---: | :---: |
| 【예2】 매입상품 중 54，000（세 포 함）을 반품하다 | （외상매입금）54，000 <br> （매입반환품）54，000 | （외상매입금） 54,000 <br> （매입반환품） 50,000 <br> （가지급소비세 등）4，000 |
| 【예3】상품 $1,296,000$ 엔（세 포함） 외상으로 매출하다 | （외상매출금） $1,296,000$ <br> （매출）1，296，000 | （외상매출금） $1,296,000$ （매출） $1,200,000$ （가수소비세 등） 96,000 |
| 【예4】 상품 108,000 엔（세 포함） 매출반품 되다． | （매출반품）108，000 <br> （외상매출금） 108,000 | （매출반품）100，000 <br> （가수소비세 등）8，000 <br> （외상매출금） 108,000 |
| 【예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500，000엔을 현금 납부하다． | （조세공과）500，000 <br> （현금）500，000 | $\begin{aligned} & \text { (가수소비세 등) } 3,500,000 \\ & \text { (가지급소비세 등) } 3,000,000 \\ & \text { (현금) } 500,000 \quad \text { *(垤1참조 } \end{aligned}$ |
| 【예6】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150,000 엔이 환급되어 당좌예금 에 입금하다． | （당좌예금） 150,000 <br> （잡수입）150，000 | $\begin{aligned} & \text { (가수소비세 등) 850,000 } \\ & \text { (당좌예금) } 150,000 \\ & \quad \text { (가지급소비세 등) } \\ & \\ & \\ & \\ & \\ & \text { *(주)2 참조 } \end{aligned}$ |

（주）
1．가수소비세 등의 잔액이 $3,500,000$ 엔，가지급소비세 등의 잔액이 $3,000,000$ 엔 이었다．

2．가수소비세 등의 잔액이 850，000엔，가지급소비세 등의 잔액이 $1,000,000$ 엔 이었다．

3．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서의 작성절차
【설문 1】
갑（주）는 과자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당 과세기간（2014년4월1일～2015 년3월31일）의 과세매출액 등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기간중의 매출액 $40,429,480$ 엔
（1）과세매출액（세 포함） $40,429,250$ 엔
（전부 제2종 사업）
（2）면세매출액 0엔
（3）비과세매출액 230엔
2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 0 엔
3 과세기간중의 과세매입금액（세 포함 ）30，536，117엔 （전액과세매입）
4 매입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0엔
5 대손처리금액（세 포함）0엔
6 중간납부 소비세액 0엔
7 중간납부 지방소비세액 0 엔
8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41,840,909$ 엔

【원칙과세를 적용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108을 곱하여，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40,429,25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times 100 / 108=37,434,490$ 엔
$\rightarrow 37,434,000$ 엔
（주）매출금액에서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한 경우에는，감액한 후의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6.3 \%$ 를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7,434,000$ 엔（과세표준액）$\times 6.3 \%=2,358,342$ 엔
（3）「공제과대조정세액（3）」및「공제세액－공제대상매입세액（4）」란 부표2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2를 작성한다．

## 부표 2 의 작성

가．「과세매출액（세 제외）（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
$40,429,250$ 엔 $\times 100 / 108=37,434,490$ 엔（각 계산과정의 1 엔 미만 절사）
（주）매출금액에서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한 경우，감액 후의 금액에 $100 / 108$ 을 곱한 금액이（1）란의 금액이 된다． 나．「면세매출액（2）」 란
과세자산의 양도 등 중 소비세법 제7조 및 제8조 또는 조세특별조치법등 의 규정에 의해，소비세가 면제되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을 기재한 다．

설문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없다．
다．「비과세매출액（6）」란
비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으로，과세매출비율의 분모에 산입할 금액 을（6）란에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비과세매출액 230엔을 기재한다．
라．「과세매상비율（4）／（7）」란
$37,434,490$ 엔 $($ 과세매출 액 $($ 세별도 $))+0$ 엔 $($ 면세매출액 $)=37,434,490$ 엔
（4）란）
$37,434,490$ 엔 $($ 과세매출액 $($ 세별도 $))+230$ 엔 $($ 비 과세매출 액 $)=37,434,720$ 엔 （7）란）

（원칙，단수처리는 않지만，편의상 소수점 3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기재）
마．「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액（세 포함）（8）」란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액에서 과세매입 중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재한다．

과세매입금액（세 포함）
$30,536,117$ 엔
바．「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9）」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30,536,117$ 엔 $\times 6.3 / 108=1,781,273$ 엔
사．「과세매출액 5억엔 이하이고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경우（13）」 및
「과세매출액 5 억엔 초과 또는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의 경우（14）～（17）」란 과세매출액 5 억엔 이하이며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경우는，과세매입 등의 세액합계액이 전액공제대상이므로，（12）란의 금액을 그대로（13）란에 기 재한다（설문의 경우，과세매출비율 $99.999 \cdots \%$ ）전액공제 $\rightarrow 1,781,273$ 엔 아．「공제대상매입세액（20）」 란

표시된 산식에 따라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주）（20）란의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금액을 「공제 과대조정세액」란에 기재한다．
자．「대손회수관련 매입세액」란
전 과세기간까지 대손상각한 과세매출액에 관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수금액에 포함된 소비세액을 기재한다．

부표2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기하여，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의 작성으로 돌아간다．
（4）「반환 등 대가에 관한 세액（5）」란
과세매출에 관한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포함 된 세액을 기재한다．
（주）매출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직접 감액한 경우 이 칸에 기재할 필요 없다．
（5）「대손관련 세액（6）」란
과세매출에 관한 외상매출금 중에서 대손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대손 관련 세액을 기재한다
（6）「공제세액소계（7）」란
「공제대상매입세액（4）」란 $1,781,273$ 엔을 기재한다。
（7）「공제부족 환급세액（8）」또는「차감세액（9）」
「소비세액（2）」란과「공제과대 조정세액（3）」란의 합계에서「공제세액소계（7）」
란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여，공제부족 환급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

$$
2,358,342 \text { 엔 }-1,781,273 \text { 엔 }=577,000 \text { 엔 }
$$

（8）「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
（9）「납부세액（11）」란 또는「중간납부 환급세액（12）」란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설문
의 경우는（11）란에 577，000엔）．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공제부족 환급세액（17）」란 또는 「차감세액（18）」란
신고서「공제부족 환급세액（8）」란의 금액 또는 「차감세액（9）」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는（18）란에 577，000엔）。
（2）「환급액（19）」란 또는「납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계산한다（설문의 경우（20）란에 155，600엔）．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납부 양도할 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 을 계산한다．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란
$(11)+(22)-(8)+(12)+(19)+$（23）$)$ 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732,600 엔으로 기재한다）。

이 케이스에서 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 납부세액은 732，600엔이다．


부표2 과세매출비율•공제대상 매입세액 등 계산표




4. cal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소비세액의 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 / 108$ 을 곱하여，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40,429,25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 \times 100 / 108=37,434,490$ 円
$\rightarrow 37,434,000$ 엔（천 엔 미만 절사）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6.3 \%$ 를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7,434,000$ 엔（과세표준 액）$\times 6.3 \%=2,358,342$ 엔
（3）「반환 등 대가에 관한 세액（5）」란
과세매출에 대한 대가의 반환 등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에 포함된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주）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는 이 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4）「공제대상 매입세액（4）」란
부표5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5를 작성한다．

부표5의 작성
가．「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1）」란
신고서의 「소비세액（2）」란의 금액 2，358，342엔을 기재한다．
나．「매출대가 중 반환 관련 소비세액（3）」란
신고서의 「반환 등 대가에 관한 세액（5）」란의 금액 0엔을 기재한다．
다．「공제대상 매입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비세액（4）」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1）＋（2）－（3）$=2,358,342$ 엔 +0 엔 -0 엔 $=2,358,342$ 엔
라．「한 종류의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공제대상매입세액］（5）」란 사업구분이 한 종류만인 경우에는「공제대상매입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비세액（4）」란의 금액에，해당하는 간주매입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358,342$ 엔 $\times 80 \%=1,886,673$ 엔
부표5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기하여，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을 계산한다．
（5）「대손관련 세액（6）」란
과세매출 관련 외상매출금 중 대손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대손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6）「공제부족 환급세액（8）」또는「차감세액（9）」란
이상의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소비세가 공제부족 환 급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2，358，342엔－1，886，673엔 -0 엔 $=471,600$ 엔（백 엔 미만 절사））。
（7）「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0엔）．
（8）「납부세액（11）」란 또는「중간납부 환급세액（12）」란
표시의 계산식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설문
의 경우 471,600 엔）。
（9）「이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15）」란 과세매출액（세 별도）에서 과세매출에 관한 대가의 환급 등의 금액（세 별도） 을 공제하고，면세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40,429,250 円 \times 100 / 108=37,434,490$ 엔（각 계산과정의 1 엔 미만 절사）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공제부족 환급세액（17）」란 또는「차감세액（18）」란
신고서「차감세액（9）」란의 금액 또는「공제부족 환급세액（8）」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 471,600 엔）。
（2）「환급액（19）」란 또는「납부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납세액 또는 환급액을 계산한다．
（설문의 경우 471,600 엔 $\times 17 / 63=127,200$ 엔（백 엔 미만 절사））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20）」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0 엔）。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납부 양도할 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 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127,200 엔）．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란

$$
(\text { (11) }+ \text { (22) })-(8)+(12)+(19)+(23) \text { 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
$$

이 케이스로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납부세액은 598，800엔이다．


부표5 공제대상 매입세액 계산표
m





## 【설문 2 】

갑（주）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당 과세기간（2014년4월1일～2015 년3월31일）은 고액의 기계를 도입하였다．
또한，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 등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43,118,000$ 엔
（1）과세매출（세 포함） $42,960,000$ 엔
（전부 제3종사업）
（2）면세매출 0엔
（3）비과세매출 158,000 엔
2 매출 중 반환 등 금액（세 포함） 648,000 엔
（전액과세매입 관련）
3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금액（세 포함） $59,640,000$ 엔 （전액 과세매입 관련）
4 매입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 100,000 엔
（전액과세매입 관련）
5 대손상각금액（세 포함）500，000엔
6 중간납부 소비세액 220，000엔
7 중간납부 지방소비세액 55，000엔
8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 $40,615,655$ 엔

【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이 신고서에 따른 소비세액 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 / 108$ 을 곱하여，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42,960,00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times 100 / 108=39,777,777$ 엔
$\rightarrow$ 39，777，000엔
（주）매출금액에서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하고 있는 경우에，감액한 후의 금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액을 계산한다．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6.3 \%$ 를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9,777,000$ 엔（과세표준액）$\times 6.3 \%=2,505,951$ 엔
（3）「공제과대 조정세액（3）」및「공제세액 — 공제대상매입세액（4）」란 부표2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2를 작성한다．

## 부표 2 의 작성

가．「과세매출액（세 별도）（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매상대가 중 반환 등（세 포함）
$42,960,000$ 엔 $\times 100 / 108$－（648，000엔 $-648,000$ 엔 $\times 6.3 / 108 \times 80 / 63$ ）
$=39,177,777$ 엔（각 계산과정의 1 엔 미만 절사）
（주）매출금액에서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하는 경우는 감액한 후의 금액에 100／108을 곱한 금액이（1）란의 금액 이 된다．
나．「면세매출액（2）」란
과세자산의 양도 등 중 소비세법 제 7 조 및 제 8 조에 및 조세특별조치법 등 의 규정에 의해 소비세가 면제되는 과세자산 양도 등의 대가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는 기재금액이 없다
다．「비과세매출액（6）」란
비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으로，과세매출비율의 분모에 산입할 금액 을（6）란에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비과세매출액 158,000 엔을 기재한다．
라．「과세매출비율（4）／（7）」란
$39,177,777$ 엔（과세매출액（세 별도））+0 엔 $($ 면세매출액 $)=39,177,777$ 엔
（4）란）
$39,177,777$ 엔（과세매출액（세 별도））$+158,000$ 円（비과세매출액）＝
39，335，777円（7）란）
（4）／7 $=99.598 \cdots \cdots \cdots \% \geqq 95 \%$
（원칙，단수처리는 않지만，편의상，소수점 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기재한다） 마．「과세매입에 관한 지불대가의 액（세 포함）（8）」란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액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대가의 반 환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재한다．

과세매입금액（세 포함）매입대가의 반환（세 포함）
$59,640,000$ 엔 $-100,000$ 엔 $=59,540,000$ 엔
바．「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9）」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59,640,000$ 엔 $\times 6.3 / 108-100,000$ 엔 $\times 6.3 / 108=3,473,166$ 엔
사．「과세매출액 5억엔 이하이고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경우（13）」 및
「과세매출액 5 억 엔 초과 또는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의 경우（14）～（17）」란 과세매출액 5 억엔 이하이며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경우는，과세매 입 등의 세액합계액이 전액공제대상이므로，（12）란의 금액을 그대로（13）란에 기재한다（설문의 경우，과세매출비율 $99.598 \cdots \%$ ）전액공제 $\rightarrow 3,473,166$ 엔

아．「공제대상 매입세액（20）」란
표시된 산식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주）（20）란의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가 마이너스인 경우는 그 금액을 「공제 과대 조정세액」란에 기재한다．
자．「대손회수에 관한 매입세액」란
전 과세기간까지 대손상각한 과세매출에 관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회 수금액에 포함된 소비세액을 기재한다．

부표 2 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기하여，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을 작성한다．
（4）「반환 등 대가에 관한 세액（5）」란
과세매출 관련 중 대가 반환 등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포함 된 세액을 기재한다．

648,000 엔（매출대가 반환 등（세 포함）$\times 6.3 / 108=37,800$ 엔（ 1 엔 미만 절 사）
（주）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직접 감액한 경우 이 칸에 기재할 필요 없다．
（5）「대손 관련 세액（6）」란
과세매출 관련 외상매출금 중 대손 금액이 있는 경우 그 대손 관련 세액 을 기재한다．

500,000 엔（대손금액）$\times 6.3 / 108=29,116$ 엔（1엔 미만 절사）
（6）「공제세액소계（7）」란
「공제대상매입세액（4）」 $3,473,166$ 엔과 「반환 등 대가 관련 세액（5）」란 37,800 엔，「대손 관련 세액（6）」란 29,116 엔 합계 $3,540,132$ 엔을 기재한다
（7）「공제부족 환급세액（8）」또는「차감세액（9）」
「소비세액（2）」란과「공제과대 조정세액（3）」란의 합계에서「공제세액소계（7）」 란을 공제한 액을 기재하여 공제부족 환급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
$2,55,951$ 엔 $-3,540,132$ 엔 $=1,034,181$ 엔
（8）「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설문의 경우 220，000엔）．
（9）「납부세액（11）」란 또는「중간납부 환급세액（12）」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설문 의 경우는（12）란에 220，000엔）．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공제부족 환급세액（17）」란 또는「차감세액（18）」란
신고서「공제부족 환급세액（8）」란의 금액 또는 「차감세액（9）」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는（17）란에 $1,034,181$ 엔）。
（2）「환급액（19）」란 또는「납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계산한다（설문의 경우（19）란에 279，064엔）．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55，000엔）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 양도할 세액 또는 중간납부환급 양도할 세액 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55，000엔）．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란
$(11)+(22)-(8)+(12)+(19)+(23)$ 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환급발생 $-1,588,245$ 엔으로 기재한다）。

이 케이스에서 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 환급세액이 $1,588,245$ 엔 발생한다．

第27－（1）号様式


## 부표2 과세매출비율•공제대상 매입세액 등의 계산표



注意1金額の計算においては，1 円末満の端数を切り括てる

3 上記 2 に該当ずる場合には，（ 9 ）棵には次の算式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記入する。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소비세의 세액 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 / 108$ 을 곱하여，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42,960,00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times 100 / 108=39,777,777$ 엔
$\rightarrow 39,777,000$ 엔（천 엔 미만 절사）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6.3 \%$ 를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9,777,000$ 엔（과세표준액）$\times 6.3 \%=2,505,951$ 엔
（3）「반환 등 대가에 관한 세액（5）」란
과세매출에 대한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에 포함된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648,000 엔（반환 등 대가금액）$\times 6.3 / 108=37,800$ 엔（ 1 엔 미만 절사）
（주）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을 매출금액에서 직접 감액하는 방법으로 경리하는 경우에는 이 칸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4）「공제대상매입세액（4）」란
부표5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5를 작성한다．

부표5의 작성
가．「과세표준액에 관한 소비세액（1）」란
신고서의 「소비세액（2）」란의 금액 2，505，951엔을 기재한다．
나．「매출대가 중 반환 등에 관한 소비세액（3）」란
신고서의 「반환 등 대가 관련 세액（5）」란의 금액 37,800 엔을 기재한다．
다．「공제대상매입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소비세액（4）」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1）+ （2）- （3）$=2,505,951$ 엔 +0 엔 $-37,800$ 엔 $=2,468,151$ 엔
라．「한 종류의 사업만을 하는 사업자의 경우［공제대상매입세액］（5）」란
사업구분이 한 종류만인 경우에는「공제대상매입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비세액（4）」란의 금액에，해당하는 간주매입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468,151$ 엔 $\times 70 \%=1,727,705$ 엔
부표5의 작성이 끝나면 신고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기하며，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을 계산한다．
（5）「대손 관련 세액（6）」란
과세매출 관련 외상매출금 중 대손금이 있는 경우에 그 대손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500,000 엔（대손금액）$\times 6.3 / 108=29,166$ 엔（ 1 엔 미만 절사）
（6）「공제부족 환급세액（8）」또는「차감세액（9）」란
이상의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소비세의 공제부족 환 급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2,468,151$ 엔－1，727，705엔 $-29,166$ 엔 $=711,200$ 엔（백엔 미만 절사））。
（7）「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220，000엔）．
（8）「납부세액（11）」란 또는「중간납부 환급세액（12）」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설문 의 경우 491，200엔）。
（9）「이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15）」란
과세매출액（세 별도）에서 과세매출 관련 대가의 반환 등 금액（세 별도）을 공제하고，면세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설문 경우 $39,177,777$ 엔）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공제부족환급세액（17）」란 또는「차감세액（18）」란
신고서「차감세액（9）」란의 금액 또는「공제부족환급세액（8）」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 711,200 엔）。
（2）「환급액（19）」란 또는「납부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납세액 또는 환급액을 계산한다．
（설문의 경우 711,200 엔 $\times 17 / 63=191,900$ 엔（백 엔 미만 절사））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55，000엔）。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 양도할 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 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136,900 엔）．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란 （（11）＋（22）$-(8)+$（12）+ （19）＋（23） 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이 케이스로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 628,100 엔이 납부세액이 된다．

第27－（2）号様式


付割賦基準の適用
$\begin{aligned} & \text { 以 } \\ & \text { 後 } \\ & \text { 終 } \\ & \text { 了 } \\ & \text { 課 } \\ & \text { 税 } \\ & \text { 期 } \\ & \text { 間 } \\ & \text { 分 } \\ & \text { 簡 } \\ & \text { 易 } \\ & \text { 課 } \\ & \text { 税 } \\ & \text { 用 }\end{aligned}$

| 課 税 標 準 皟 | （1） | ＋兆千百十倠千百十万千百十一円 |  |
| :---: | :---: | :---: | :---: |
|  |  | 39777000 | 03 |
| 消 費 税 額 | （2） | 2505951 | 06 |
| 貨倒回収に係る消費税額 | （3） |  | 07 |
| 控 控除対象仕入税額 | （4） | 1727705 | 08 |
|  | （5） | 37800 | 09 |
| 税 貨倒れに係る税額 | （6） | 29166 | 10 |
|  | （7） | 1794671 |  |
| 控除 不足還付税額 $(7)-(2)-(8)$ | （8） |  | 13 |
| $\begin{array}{\|ccc} \hline \text { 差 } & \begin{array}{c} \text { 税 } \\ (2)+(3)-(7) \end{array} & \text { 額 } \\ \hline \end{array}$ | （9） | 711200 | 15 |
| 中 間 納 付 税 額 | （10） | 220000 | 16 |
| 納 垈（ 9 （税 | （11） | 491200 | 17 |
| $\begin{array}{\|c\|} \hline \text { 中 間 納 付迴付税額 } \\ (10)-(9) \\ \hline \end{array}$ | （12） | 00 | 18 |
| この中告既咴定税額 | （13） |  | 19 |
| てある场合差引納付税額 | （14） | 00 | 20 |
| この課税期間の課梲売上高 | （15） | 39177777 | 21 |
| 基準期間の課税売上高 | （16） | 10615655 |  |



銀行

$$
\text { 預金 } \mid \text { 口座番号 }
$$

$(26)=((11)+(22))-((8)+(12)+(19)+(23)) \cdot$ 俊正申告の場合 $(26)=(14)+(25)$
（26）が還付税額となる場合はマイナス「一」を付してください。

부표5 공제대상 매입세액 계산표





## 【설문3】

（주）병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당 과세기간（2014년4월1일 ～2015년3월31일）의 과세매출액 등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과세기간 중의 매출액 등 $41,880,000$ 엔
（1）과세매출액（세 포함） $38,880,000$ 엔
내역 점포 및 사무소의 임대수입 37，800，000엔（제5종사업） 영업용차량의 매각수입 $1,080,000$ 엔（제4종사업）
（2）면세매출액
0엔
（3）비과세매출액 $3,000,000$ 엔（주택임대수입）
2 매출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 0 엔
3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금액（세 포함） $10,800,000$ 엔
내역 과세자산의 양도 등에만 필요한 것 $5,400,000$ 엔 비과세자산의 양도 등에만 필요한 것 $1,080,000$ 엔 과세자산의 양도등과 비과세자산의 양도 등에 공통 필요한 것 4，320，000엔
4 매입대가 중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0엔
5 대손상각한 금액（세 포함）0엔
6 중간납부 소비세액 480，000엔
7 중간납부 지방소비세액 120，000엔
8 기준기간 과세매출액 $42,857,142$ 엔

【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이 신고서에 의한 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 / 108$ 을 곱하고，천 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38,880,00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 \times 100 / 108=36,000,000$ 엔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6.3 \%$ 를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6,000,000$ 엔（과세표준액）$\times 6.3 \%=2,268,000$ 엔
（3）「공제과대 조정세액（3）」및「공제대상 매입세액（4）」란 부표2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 2 를 작성한다．

## 부표 2 의 작성

가．「과세매출액（세 별도）（1）」란
$38,880,00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 \times 100 / 108=36,000,000$ 엔（각 계산과정 의 1 엔 미만 절사）
나．「과세매출액（6）」란
비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으로，과세매출비율의 분모에 산입할 금액 을（6）란에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비과세매출액 $3,000,000$ 엔을 기재한다．
（주 과세매출비율의 분모에 산입할 금액에 관해서는，주식 등 특정유가증권
의 양도의 경우，그 양도대가의 $5 \%$ 상당액으로 하는 등，조정이 필요한 경 우가 있으므로 유의한다．
다．「과세매출비율（4）／（7）」란
（1）36，000，000엔（과세매출액（세 제외））$\rightarrow$（4）란
（1）36，000，000엔（과세매출액（세 제외））＋ $3,000,000$ 엔（비과세매출액）
$=39,000,000$ 엔 $\rightarrow$（7）란
（4）／（7）$=92.307 \cdots \cdots \cdots \%<95 \%$
（원칙，단수처리는 않지만 편의상 소수점 세자리 이하를 절사하여 기재）
라．「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의 액（세 포함）8」란
과세기간 중 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액에서 과세매입에 관한 대가의 반 환 등의 금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과세기간 중의 과세매입금액（세 포함） $10,800,000$ 엔을 기재 한다．
마．「과세매입에 관한 소비세액（9）」란
다음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과세매입에 관한 지급대가액（매입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을 공제하기 전 의 세 포함가격）$) \times 6.3 / 108$－매입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세 포함）$\times 6.3 / 108=$ 과세매입 관련 소비세액
（설문의 경우） $10,800,000$ 엔 $\times 6.3 / 108=630,000$ 엔
바．「과세매출액 5 억엔 이하이고 과세매출비율이 $95 \%$ 이상의 경우（13）및「과세매출액 5 억 엔 초과 또는 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의 경우（14）～（17）란 설문은，과세매출비율이 $95 \%$ 미만의 경우 해당하므로，적용하는 공제방법 에 응하여 기재한다．
（가）개별대응방식의 경우 과세매입 등의 세액을 구분한 후에，（14）란 또는（15） 란에 기재하고，（16）란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란에 기재한다．
A 「（12중 과세매출에만 필요한 것（14）란

$$
5,400,000 \text { 엔 } \times 6.3 / 108=315,000 \text { 엔 }
$$

B 「（12）중 과세매출과 비과세매출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15）」란 $4,320,000$ 엔 $\times 6.3 / 108=252,000$ 엔
C 「개별대응방식에 따라 공제하는 과세매입 등의 세액（16）」란 $\mathrm{A}+(\mathrm{B} \times 36,000,000$ 엔 $/ 39,000,000$ 엔 $)=547,615$ 엔
（나）일괄비례방식의 경우는，（17）란의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을 동란 에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630,000 엔 $\times 36,000,000$ 엔 $/ 39,000,000$ 엔 $=581,538$ 엔
설문의 경우，일괄비례배분방식을 적용한 쪽이 공제하는 과세매입 등의 세 액이 많게 되어，납세자에 유리하므로，이번에는 일괄비례배분방식을 선택 적용한다．위（나） 581,538 엔 $\rightarrow$（17）란
（주）일괄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그 일괄비례배분방식을 선택한 과 세기간의 초일부터 2 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사이에 개시하는 각 과세기간 에 있어，그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한 후의 과세기간이 아니면，개별대응방식 을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한다．
사．공제대상매입세액（20）」란
표시된 산식에 따라 공제대상매입세액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581，538엔）

부표2의 작성이 끝나면，신고서에 필요한 항목을 전기하고，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4），（15），（16）란에 전기）
（4）「공제세액소계（7）」란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서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581，538엔）．
（5）「공제부족 환급세액（8）」또는「차감세액（9）」
표시된 산식에 의해 소비세의 공제부족환급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
（9）란에는 백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2，268，000엔－581，538엔＝1，686，462엔
$\rightarrow 1,686,400$ 엔（백엔 미만 절사）$\rightarrow$（9）란
（6）「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설문의 경우 480，000엔）
（7）「납부세액（11）」란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12）」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설문의 경우）
$1,686,400$ 엔 $-480,000$ 엔 $=1,206,400$ 엔 $\rightarrow$（11）란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공제부족 환급세액（17）」란 또는 「차감세액（18）」란
신고서「공제부족환급세액（8）」 란의 금액 또는 「차감세액（9）」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는（18）란에 1，686，400엔）。
（2）「환급액（19）」란 또는「납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계산한다．（20）란에는，백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1,686,400$ 엔 $\times 17 / 63=455,060$ 엔 $\rightarrow 455,000$ 엔（백엔 미만 절사）$\rightarrow$（20）란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120,000 엔）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산식에 의해 납부 양도할 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을 계산한다．
（설문의 경우）455，000엔－120，000엔＝335，000엔 $\rightarrow$ 란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란
$($（11）+ （22）$)-(8)+$（12）+ （19）+ （23）$)$ 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1,206,400$ 엔＋335，000엔＝1，541，400엔

위와 같이 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이 신고에 의해 납부세액은 $1,541,400$ 엔이 된다．

第27－（1）号様式


## 부표 2 과세매출비율－공제대상 매입세액 등의 계산표



注意1 金額の計算においては，1円未満の端数を切り捨てる。
2 8欄には，値引き，割戻し，割引きなど仕入対価の返還等の金額がある場合（仕入対価の返還等の金額を仕入金額から直接減額して
いる場合を除く。）には，その金額を控除した後の金額を記入する。
3 上記 2 に該当する場合には，（9）欄には次の算式により計算した金額を記入する
課税仕入れに係る消費税額 9 ）$=\left(\begin{array}{l}\text { 課税仕入れに係る支払対価の額（仕入対価 } \\ \text { の返還等の金額を控除する前の税込金額）}\end{array} \times \frac{6.3}{108},-\left[\begin{array}{l}\text { 仕入対価の返還等 } \\ \text { の金額 }(\text { 税込み })\end{array} \times \frac{6.3}{108}\right)\right.$ ，
4 （21）欄と（2）欄のいずれにも記載がある場合は，その合計金額を申告書（3）欄に記入する。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한 경우】

1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소비세의 세액계산」란
（1）「과세표준액（1）」란
과세매출액（세 포함）에 $100 / 108$ 을 곱하여，천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38,880,000$ 엔（과세매출액（세 포함））$\times 100 / 108=36,000,000$ 엔
（2）「소비세액（2）」란
（1）에서 산출된 과세표준액에 $6.3 \%$ 을 곱하여 소비세액을 계산한다．
$36,000,000$ 엔（과세표준액）$\times 6.3 \%=2,268,000$ 엔
（3）「공제대상 매입세세액（4）」란
부표5에서 전기하므로，여기서 부표5를 작성한다．

## 부표5의 작성

가．「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1）」란 신고서의 「소비세액（2）」란의 금액 2，268，000엔을 기재한다．
나．「공제대상매입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소비세액（4）」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2，268，000엔）
다．「 2 종류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란
（가）「사업구분별 과세매출액 합계액（세 별도）（6）～（11）」란 제1종사업부터 제5종사업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A 「사업구분별 합계액（6）」란 $38,880,000$ 엔 $\times 100 / 108=36,000,000$ 엔
B 「제4종사업（기타）（10）」란 $1,080,000$ 엔 $\times 100 / 108=1,000,000$ 엔
C 「제5종사업（서비스업 등）（11）」란 $37,800,000$ 엔 $\times 100 / 108=35,000,000$ 엔
（나）「왼쪽의 과세매출액 관련 소비세액（12）～（17）」란
A 「제4종사업（기타）（16）」란
$1,080,000$ 엔 $\times 6.3 / 108=63,000$ 엔
B 「제5종사업（서비스업 등）（17）」란
$37,800,000$ 엔 $\times 6.3 / 108=2,205,000$ 엔
C 「사업구분별 합계액（12）」란

$$
\mathrm{A}+\mathrm{B}=63,000 \text { 엔 }+2,205,000 \text { 엔 }=2,268,000 \text { 엔 }
$$

（다）「사업구분별 과세매출액（세 별도）（7）～（11）」란의 「매출비율」란의 계산
A「제4종사업（기타）（10」의 「매출비율」란

매출비율＝제4종사업의 과세매출액／과세매출액（합계）
$=1,000,000$ 엔 $/ 36,000,000$ 엔 $=2.777 \cdots \cdots \%<75 \%$
B 「제5종사업（서비스업 등）（11）」의 「매출비율」란
매출비율＝제5종사업의 과세매출액／과세매출액（합계）
$=35,000,000$ 엔 $/ 36,000,000$ 엔 $=97.222 \cdots \cdots \% \geqq 75 \%$
（라）「공제대상매입세액의 계산식 구분（18）～（29）」란에 있어 특례계산의 판정 및 공제대상매입세액의 계산
「원칙계산을 적용하는 경우」 또는 「특례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 당하는 란에 계산결과를 기재한다．

A 「원칙계산을 적용하는 경우（18）」란
$2,268,000$ 엔 $\times(63,000$ 엔 $\times 60 \%+2,205,000$ 엔 $\times 50 \%) / 2,268,000$ 엔

$$
=1,140,300 \text { 엔 }
$$

B 「1종류사업으로 $75 \%$ 이상（19）」란
설문의 경우 제 5 종사업의 과세매출액이 전체 과세매출액의 $75 \%$ 이 상을 차지하고 있어，과세매출액 전체에 대해 제 5 종사업에 관한 간주 매입율（ $80 \%$ ）을 적용한다．
$2,268,000$ 엔 $\times 50 \%=1,134,000$ 엔
C 판정
설문의 경우， A 를 선택한 쪽이 공제대상매입세액이 많게 되어，납세 자에게 유리하게 되므로， A 를 선택한다．
（마）「공제대상매입세액」란
상기（라）의 C 의 판정에 따라， $1,140,300$ 엔을 기재한다．

부표5의 작성이 끝나면，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하고，신고서의 나머 지 항목의 계산에 돌아간다（설문의 경우（4）란에 전기）
（4）「공제대상소계（7）」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1,140,300$ 엔을 기재한다
（5）「공제부족환급세액（8）」 또는 「차감세액（9）」란
이상의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소비세의 공제부족환급 세액 또는 차감세액을 계산한다．（9）란 에는 백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한 금 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2,268,000$ 엔－1，140，300엔＝1，127，700엔 $\rightarrow$（9）란
（6）「중간납부세액（10）」란
중간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을 기입한다（설문의 경우 480，000엔）
（7）「납부세액（11）」란 또는 「중간납부환급세액（12）」 란
표시된 계산식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중간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설문의 경우） $1,127,700$ 엔 $-480,000$ 엔 $=647,700$ 엔 $\rightarrow$（11）란
（8）「이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액（15）」 란
과세매출액（세 별도）에서 과세매출 관련 대가의 반환 등의 금액（세 별도）
을 공제하고 면세매출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36，000，000
엔）
（9）「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16）」 란
이 신고와 관련 과세기간의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 우 $42,857,147$ 엔）．

2 확정신고서의 「이 신고서에 의한 지방소비세의 세액 계산」란
（1）「공제부족환급세액（17）」란 또는「차감세액（18）」란
신고서「공제부족환급세액（8）」란의 금액 또는「차감세액（9）」 란의 금액을
전기한다（설문의 경우（18）란에 $1,127,700$ 엔）。
（2）「환급액（19）」란 또는「납부세액（20）」란
（17）또는（18）에 $17 / 63$ 을 곱하여 계산한다．（20）란 에는 백엔 미만의 단수를 절사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1,127,700$ 엔 $\times 17 / 63=304,300$ 엔 $\rightarrow$（20）란
（3）「중간납부 양도할 세액」란
중간신고세액의 합계금액을 기재한다（설문의 경우 120,000 엔）。
（4）「납부 양도할 세액」란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란
표시된 계산식에 의해 납부 양도할세액 또는 중간납부 환급 양도할 세액 을 계산한다（설문의 경우） 304,300 엔－120，000엔＝184，300엔 $\rightarrow$（26）란
（5）「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합계（납부 또는 환급세액）세액」란
（11）＋（22）$)-(8)+(12)+(19)+(23)$ 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재한다．
（설문의 경우） 647,700 엔＋184，300엔＝832，000엔

위와 같이 간이과세를 선택한 경우，이 신고에 의한 납부세액은 832，000엔 이 되어，원칙과세를 선택한 경우의 납부세액 $(1,541,400$ 엔 ）보다도 세액이 적게 된다．
또한，간이과세제도의 간주매입비율이 개정되어 원칙적으로 2014년4월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부동산업은 신설되는 제6종사업으로 되어，간 주매입율이 $40 \%$ 로 개정되었다．

第27－（2）号様式



この申告書による地方消費税の税額の計算



(참고문헌)
세무대학교(2014)「소비세법(기초편) 2014년도판」

## III한국의 조세교육（부제／한국）

I．국세청의 조세교육
（1）조세박물관
1）설립취지 및 연혁
（1）설립취지
세금은 국방，치안 등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도로，항만，철도，학 교 등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국민복지지출 등의 밑거름이 됩니다．
이러한 세금은 나라살림의 원천으로 국가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모든 국민 은 납세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의장으로서 조세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 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역사，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여 우리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국내유 일의 세금전문박물관입니다

## （2）연혁

조세박물관은 전국에 있는 전．현직 국세청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수집 된 유물8，800여점을 기반으로 2002년10월5일 개관하였습니다．이 후 2008년12 월 22 일 리모델링하여 개선된 환경으로 개관하였으며 꾸준한 유물수집과 함께 조 세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매년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또한 개관 10 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 10 월 전시실환경을 전면 개편하여 우수한 조세제도소 개와 조세유물을 보강전시하였습니다．

2002년 10 월05일 조세박물관 개관
2005년06월30일 제1종 전문박물관 등록
2008년02월28일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 협력기관지정
2008년05월01일 〈수결〉특별전 오픈
2008년06월04일 서울시 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정기관 지정
2008년12월22일 리모델링 후 재 개관
2008년12월22일＜술과 세금＞특별전 오픈
2009년08월13일＜땅，나눔과 소유－고문서로 본 조선시대 재산상속과 토 지매매＞특별전오픈
2010년02월 16 일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 대상기관 지정
2010년10월17일 〈작은 문서로 옛 세상을 엿보다－옛 영수증자문〉특별전 오픈
2011년11월13일＜청하고 원하다－청원서에 담긴 조선시대 세금이야기＞ 특별전 오픈
2012년 10 월09일 조세박물관 개관 10 주년 기념 전면 개편＜세금을 고르게 하여 백성을 사랑하라＞조선왕조실록 특별전 오픈
2013년06월 사이버．모바일 조세박물관 오픈

## 2) 운영프로그램

조세박물관은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유아를 대상으로 <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어린아이들이 세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세박물관 전시관람 후 유아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시청하고 그 리기 체험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2)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세금체험교실>

체험코너에서는 장래희망을 반영한 사업자등록증발급, 청소년용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 세금 OX 퀴즈 등 다양한 세금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중•고등 학생을 위한 <청소년 세금교실〉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관해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청소년 세금교실〉 사이 트 (http://www.nts.go.kr/yout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생소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뿐 아니라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가. 꿈이 있는 세상 메뉴 : 국세청에서 만든 청소년 세금.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이야기 뿐 만 아니라 청소년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제이 야기, 세계 최고의 경제 위인들의 전기,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연예관련 기사 등 다양한 내용을 한데 엮어 장래에 건전한 경제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 을 주는 취지로 창간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인터넷으로 잡지를 볼 수 있으 며 잡지에 관한 정보가 있는 곳입니다

나. 세금교실 놀이터 메뉴 : 세금퀴즈 골든벨, 낱말 퍼즐, 타자연습, 조각 그림 맞 추기 등 재미있게 게임을 통해 세금과 관련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 다

다. 세금만화, 동영상 메뉴 : 세금에 관련된 만화와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 라진 나라 평안국의 비밀, 세금 서유기, 신나는 세금여행, 나라살림과 세금, 갈갈이 삼형제의 세금이야기 등 세금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만들어진 만화와 동영상으로 재미와 공부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라. 두 친구와 세금 메뉴 : 인터넷으로 조그만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김군의 이야 기와 회사에 취직하여 첫 월급을 탄 이군의 이야기를 통해 세금에 관한 기초 적인 상식들을 배워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마. 학생 참여코너 메뉴 : 세금 글짓기, 세금포스터, 세금만화, UCC(User Created Contents/손수 제작물)부문의 문예작품과 UCC 수상작이 있습니다. 수 상작들을 볼 수도 있고 입상작 모음집을 다운받아서 볼 수도 있습니다. 입상 작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은 세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1) 일일 세무서장 체험

국세청은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이‘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세금관을 조기에 정립하여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친근 한 프로그램을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세무서로 초청하여 세금을 이해하고 견학하는 '일일 세무서장체험' 행사 를 실시하여 세금의 뜻과 역할, 세금의 종류와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상세하 게 알려 주고있습니다.
‘일일 세무서장체험'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세무서의 여러 시설들을 둘러보며 각 부서에서 맡은 일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받고 세무서장 집무실에 들러서장님자리에서 일일 세무서장 역할을 하며 미래자신의 진로에 대 한 생각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세금교육

세무서장이 솔선하여 학교를 찾아가는‘방문 세금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납세주역인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 양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재미있는 퀴즈를 통해 세금이 무엇이고 세금이 왜 필요한지, 세금이 어 디에 쓰이는지,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편리하고 다양한 세금납부방 법 등 세금 기초지식 전달을 위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세금체험 프로그램 사례

가. 서산세무서 서령중학교 방문 열린세금 교육실시
'학생세금교육'이라는 주제로 중학생들이 알아야 할 세금의 필요성 및 활용방법 에 대한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 물건을 구입할 때 매겨진 세금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 세금들이 나라 살림살이에 어 떻게 쓰이는지 보다 구체적인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지루 하지 않도록 학교와 세금과 관련한퀴즈를 내어 맞추는 학생에게 상품을 주어서 활기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세금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세금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쓰이고 도움을 주는가 를 알게 되었으며 납세는 강제적인 징수라는 생각보다 나라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는데 일조하며 나라를 비추는 등 불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린 세금교육은 미래세상을 짊어질 우리청소년들이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기분좋게 세금 내는 성숙한 납세자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의 장이 되었 습니다.
나. 노원세무서 을지초등학교 방문 세금교육 실시
을지초등학교 경제교육시간에 편성된 세금강의는 초등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제 작된 강의자료를 활용하여 매끄럽고 이해하기 쉽게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에게 확실한 세금의 의미를 되새기게 했습니다.
나아가 세금교육을 받은 초등학생이 지켜야 할일 세 가지, 올바른 납세의식을

갖고, 현금영수증을 잘 챙기고, 공공시설을 바르게 이용하자 등의 시민의식을 심어준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원세무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생세금 교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I. 한국세무사회의 조세교육
(1) 청소년 세금교육

1. 개요 :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세무 사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 형태

가. 청소년 직업 체험의 날 현장 방문 및 세금 교실

- 매년 세무사회관 인근 중,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시
- 2014년 풍성중, 신목고 등 학생 회관 방문

나. 청소년 세금교실 동영상 교육

- 2010년 인터넷 및 IPTV를 매개로 맞춤형 '라이브교육 컨텐츠'에 청소년 세금 교실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교육 제작
다. 청소년 세금교실 만화 제작 및 배포
- 2011년 4월 청소년 세금만화 '촐랑왕자의 세금유학기' 제작해 전국 9천280개 초, 중학교에 배포함
(2) 100 만시간 재능기부

1. 개요 : 2012년 1월 5일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1 만여 세무사가 1 인당 100 시간 씩 전문적 재능(조세전문 지식)을 사회에 기부키로 하고 선포식을 개최
2. 형태 :

가.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내방, 전화, 인터넷)
나. 세금 관련 무료강의
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라. 탈북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마. 세무사 재능을 활용한 기타 기부활동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한 상 담, 교육, 자문

## 3. 누적실적

| 구 분 | 상담시간 | 달성율 | 비 고 |
| :---: | :---: | :---: | :---: |
| 서울지방회 | 27,372 | ※ 2014.8.31 <br> 현재 <br> 100 만 <br> 시간 대비 <br> 약 15\% | ※ 무료상담을 진행하더라도 실적보고가 되지 않아 달성율이 저조함 |
| 중부지방회 | 33,687 |  |  |
| 부산지방회 | 32,890 |  |  |
| 대구지방회 | 19,939 |  |  |
| 광주지방회 | 18,505 |  |  |
| 대전지방회 | 18,370 |  |  |
| 총 시간 | 150,763 |  |  |

(3)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

1. 일반인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실시

- 본회 회관 내 무료세무상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민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무료세무상담(전화, 서신, 내방 및 인터넷)을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함.
<2013회계연도 무료세무상담 실적>

2013. 4. 5. ~ 2014. 3. 31.

| 세목 | 소득세 | 상속 . <br> 증여세 | 양도세 | 법인세 | 부가세 | 지방세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전화 | 413 | 372 | 331 | 224 | 309 | 63 | 206 | 1,918 |
| 면담 | 6 | 14 | 1 | 9 | 1 |  | 7 | 38 |
| 인터넷 | 172 | 90 | 168 | 64 | 129 | 44 | 453 | 1,120 |
| 계 | 591 | 476 | 500 | 297 | 439 | 107 | 666 | $1,025.33$ |

2. '납세자의 날'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

- 납세자의 날(2014.3.3.)을 맞아 1 주일간 전회원이 전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17,658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했음.
<납세자의 날 기념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적>

| 기간 | 소득세 | 상속 . 증여세 | 양도세 | 법인세 | 부가세 | 지방세 | 기타 | 계 | 참여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3/3~7 | 3,334 | 2,159 | 4,281 | 3,055 | 2,525 | 728 | 1,576 | 17,658 | 944 |

3. 세무사제도 창설 53 주년 기념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

- 세무사제도 창설일(1961.9.9.)을 기념하여 1 주일간 전회원 사무소에서

총 18,049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함
<세무사제도 창설 제53주년 기념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적>

| 기간 | 소득세 | 상속 <br> 증여세 | 양도세 | 법인세 | 부가세 | 지방세 | 기타 | 계 | 참여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9 / 1 ~ 5$ | 3,152 | 2,857 | 4,615 | 1,534 | 3,024 | 935 | 1,932 | 18,049 | 1,101 |

## IV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한국)

I. 총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 또는 공 공단체가 하여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종교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하여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세제상의 혜택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지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였으며, 최근 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되고 있다. 헌법 제 38 조는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조세국가의 기본을 지 켜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어야 함이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딫혀 지금까지 과세되지 못하였다. 사실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우리나라 법은 비과세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 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 조(비과세소득)와 19 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 조 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 능했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인 과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 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 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종교인 소득 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종교활동을 '근로' 로 보는 시각에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소득 분류 문제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 로 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 동이 봉사활동인지 여부에 논란이 남아있다. 아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앞 으로의 과세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II.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상황

## 1. 개요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종교시설은 9 만개, 성직자는 36 만 5 천명, 헌금규모는 연 6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직자 중 천주교회와 개신교 중 대형교회는 이 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현실화 되더라도 늘어날 세수는 많아야 고작 1~2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지난 해 연 말 국회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 의견을 들어 올 2 월에 결정한다"는 부대의견만 처 리했다. 하지만 지난 2 월 국회에서 법개정은 되지 못하였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종교계와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발 표된 정부 원안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보고, $80 \%$ 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 \%$ 의 세 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정부 추산으로 대상자는 약 1 만 5000 명, 세수는 100 억~2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부의 원안 도 일반인에 견줘 종교인의 세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편, 최근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 판부는 사법부가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관여하는 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회 쪽의 주장에 대해서도 "종교단체의 민사 관계에 민법이, 형사 관계에 형법 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용 관계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을 두고 종 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하였다. 이번 판결로 종교인에 대한 과 세 여론이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 2. 종교단체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규정

(1)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 소득의 범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다. 영리법인은 소득의 발생원천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비영리법인은 특 정한 원천, 즉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만으로 한정하여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 는 것이다.
현재 종교단체는 '비영리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 체'로 보아 법인세법의 납세의무를 적용한다.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 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법인의 범위

1) 비영리내국법인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가운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 한다.
(1)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 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다만,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 13 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비영리외국법인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 로 하지 않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을 말한다.
(3) 과세소득의 범위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다음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한 다.
(1) 사업소득: 여기서 '사업’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이자소득
(3) 배당소득
(4) 주식, 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의 처분수입은 제외한다. 여기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고정자산'이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 업(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 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때 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본다.
(6)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 입
(7) 채권매매익: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채권 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채권매매익(채권 등의 매각익에서 채권 등의 매각손 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 또는 부실 채권 인수•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매매익은 제외한다.
※ 법인 종류별 납세의무의 범위

| 법인구분 | 각 사업년도 소득 | 청산소득 | 납세의무의 범위 |
| :---: | :---: | :---: | :---: |
| 영리내국법인 | 전 세계의 모든 소득 | 납세의무 있음 | 무제한 납세의무자 |
| 비영리내국법인 | 전 세계의 수익사업소 <br>  <br> 득 | 납세의무 없음 | 제한 납세의무자 |
| 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 모든 소득 |  |  |
| 비영리외국법인 | 국내원천 수익사업소득 |  |  |

(4) 일반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특례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납부•결정• 경정•징 수에 있어서 영리법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점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러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규정은 법정기부금에 대해서는 이 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손금산입의 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 이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을 허용한다. 즉,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나중에 그 준비 금을 익금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처분하여야 한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 입은 본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결산서에 계상하게 되 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잉여금처분에 따른 신고 조정을 허용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2) 손금산입범위액 $=$ 이자•배당 소득금액 + (수익사업소득금액 - 이자•배당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times 50 \%$ (또는 특례비율)
여기서 ‘수익사업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법정기부금을 손금산입하 기 전의 소득금액으로 한정하며, '이자•배당배당소득금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이자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 다.
b. 배당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배당소득.
(3) 상계: 이처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 기부금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 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 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 액은 이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된다.
(4) 환입: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의 익금에 산입한다.
a. 해산한 경우(고유목적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b.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c.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d.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으로 한정한다)
e.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계상한 경우 (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 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임의 조기환입)
(5) 이자상당액의 징수: 위 $\mathrm{d}, \mathrm{e}$ 에 해당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산 입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text { 이자상당액 }=\text { 법인세액의 차액 } \times \text { 기간 } \times 0.03 \%
$$

a. 법인세액의 차액: 해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을 말한다.
b. 기간: 손금산입 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산입한 사업 연도의 종료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2) 이자소득에 대한 선택적 분리과세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 된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 탁의 이익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원천징수 된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으 며,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해서도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천징수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이다.
3)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개요: 비영리내국법인(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은 제외)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a. 토지 또는 건물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b.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전세권 및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c.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이용권, 특정 주식(A), 특정주식(B)
d. 주식 또는 출자지분: 주권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 양도분, 비상장주 식 이처럼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 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제도의 취지: 본래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같이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 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 는 비영리법인도 부동산 등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일반법인과 같이 세무조정 등 제반 납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영세한 비영리법인에게 커다란 부 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a.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b. 일반법인세 대신 양 도소득세와 사실상 동일한 특례법인세를 납부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자유롭 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 납세절차: 특례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일반법인세 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일반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도 하여야 하며(이 경우 분납 및 물납도 적용된다), 이러한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례법인세의 과세표준신 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예정신고를 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 였더라도 특례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한다. 한편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러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일반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일반법인세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그 밖의 특례
(1) 기장의무와 무기장 가산세의 배제: 비영리법인도 기장의무를 진다. 다만, 사업 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예외 적으로 기장 의무를 지지 않는다. 한편, 기장의무를 지는 비영리법인도 무기장가 산세는 적용 받지 않는다.
(2)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사업소득과 채권매매익에 해당하는 수익사 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 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세무조정계산서 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5) 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해당 수익사 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 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여기서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 입 별로 자산•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구분 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3. 종교단체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규정

비영리 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취득한 경우에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하지만, 비영리사업과 관련된 무상취득이라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영리공익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회구 성원 전원이 혜택을 누린다고 보는 종교단체 및 기타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결국 부의 사회환원이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별도 의 재정부담없이 공익법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의 예외 로 보아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다.

## 4. 종교단체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규정

## (1) 양도소득세

종교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거주자(개인)로 간주될 경우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과세대상자산을 양도 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 있는 법인이외의 개인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단체가 국 세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자(개인)으 로 간주될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 무가 있는 것이다.
(2)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소득금액 또는 수 입금액을 지급한 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에 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 또는 개 인의 구분이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등에 상관없이, 그리고 원천징수의 무를 지우는 특정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당연히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근로 등의 제공대가로 급여 등을 수령하는 성직자 등은 당연히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고 지급하는 종교단체는 원천징 수의무를 지게 된다.

## 5. 종교단체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

(1)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영리목적의 유무를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다음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 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12 조 각호의 1 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 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이 면세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하며 둘째, 당해 단체의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인 공급이거나 혹은 실비 또는 무상대가로서 의 공급이어야 하는 2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어느 한 요건이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면세되지 않는다.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한한 다)의 경내지 및 경내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적용한다.
3)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 또는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음식 및 숙박용역에 한한다)

4）저작권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자를 위해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용역
（2）종교단체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적용 여부
종교단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경우에는 비록 종교단체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3）공익사업 관련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종교의식 • 자선 • 구호 • 기타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 • 자선단 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재화수입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1）사원 기타 종교단체에 기증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종교단체의 종교 관련 세제혜택 주요 내용

| 구 분 | 관련법령 | 주요내용（수혜대상） |
| :---: | :---: | :---: |
| 재산압류금지 | 「국세징수법」제31조 |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
| 법인세 감면 | 「법인세법」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비영리법인의 자산의 고유목적사용 <br> 시，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 외 |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손금산 입 | 「법인세법」제29조 | 비영리법인이 종교목적 및 지정기부 금에 사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손금산입 |
| $\begin{aligned} & \text { 기부금의 } \\ & \text { 손비처리 } \end{aligned}$ | 「법인세법」제24조 <br> 및 동법 시행령 제36 <br> 조 <br> 「소득세법」제34조 <br> 및 동법 시행령 제80 <br> 조 | 타법인이 비영리법인에 기증하는 일 정한도의 기부금은 손비처리 |
|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특례 및 납 부 | 「법인세법」제62조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과세표준신 고 및 원천징수신고로 과세표준신고 인정 특혜 |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제26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부가가치세 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 종교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종교단 체에 기증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 제 |
| 개별소비세 면제 | $\begin{aligned} & \text { 「개별소비세법」제 } 18 \\ & \text {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 \\ & \text { 32조 } \\ & \hline \end{aligned}$ | 외국으로부터 사원，교회 등에 기증 되는 의식용품 또는 예배용품은 개별 소비세 면제 |


| 주세 면제 | 「주세법」제31조 | 사원，교회 등 종교단체의 의식용으 로 외국에서 기증한 주류는 주세 면 세 |
| :---: | :---: | :---: |
| 관세 감면 | 「관세법」제9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9， 40조 | 교회•사원 등 종교단체의 예배용품 및 식전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 증되는 물품은 관세 감면 |
| 상속세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 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 조 |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게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면제 |
| 지방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br> 제50조 |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 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균등분 등 지방세 면제 |

III．세법개정에 대한 진행과정

1．개요
그 동안 종교인들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도 관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1968년 국세청이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뒤 45년 넘게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만，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지난 해 연 말 국회는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종교인 과세를 도입하되 과세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은 종교계 의견을 들어 올 2월에 결정한다＂는 부대의견만 처 리하였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법개정은 되지 못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지난 십 수년 전부터 제기된 해묵은 문제다．그 동안 암묵적인 비 과세 성역으로 여겨졌으나 2000년대 초반 천주교 신부，수녀를 중심으로 자발적 납세운동이 전개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야기됐다．
이는 곧바로 기독교，불교계 전반에도 납세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도화선 이 됐다．특히 지난 정부 마지막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박재완 장관 은 공식적으로＂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과세논의가 재차 부각되기도 했다．
현 정부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정권 초기 시절 이 문제에 대한 공 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결국 부임 첫 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종교 인 과세 추진의사를 밝히면서＂세금에 예외는 없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 2012년까지 종교인 과세 진행 내용

○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 목사,신부 둥 성직자 갑종소득세 부과 문제에 대한 거론 하였으나 종교계 반대로 무산

1992년
한명수 수원 창훈대교회 담임목사와 손봉호 서울대 교수 간 '종교인 과세’에 대 하여 공개토론을 벌였으나 국세청은 강제징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1994년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소득세 납부를 결의하여 국내 16 개 천주교 교구 중 영세 교구 및 군종교구 등 4 곳을 제외한 12 곳에서 소득세 납부하게 되었다.
○ 2006년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종교인 면세'를 이유로 국세청장을 검찰 고발하였 으나 그 결과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국세청은 재정경제부에 종교인 과세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 2012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에게도 과세해야 한다고 세법 개정을 추진하였 으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 "과세원칙은 확정됐지만 준비가 더 필요 하다" 며 유보하였다.
3. 2013 년 세법개정안
(1)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1) 기타소득으로 과세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사례 금)'으로
보아 과세한다. $80 \%$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실제 경비가 $80 \%$ 를 초과하는 경우 실제 경비로 인정한다.
(2) 과세방법

종교단체는 반기 별로 원천징수하고 종교인은 선택적으로 종합소득 신고한다.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종교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3) 과세시기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2015년부터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이유 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 던 점, 과세를 위한 준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 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5년부터 개정법령을 적용한다.
※기타소득의 범위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2014년 세법개정안
（1）종전 개정안과의 비교
（1）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
－종전：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소득세법 시행령）
－대안：「소득세법」에 기타 소득 중 하나로 종교인 소득 신설
（2）종교단체의 원천징수
－종전：종교단체는 종교인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소득세법 개정안）
－대안：현행 개정안 중＂종교단체의 원천징수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발 적으로 신고• 납부
（3）종교인 소득의 과세방법
－종전：필요경비 $80 \%$ 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안：필요경비 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하되 종교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간편화
（4）종교인 소득의 정의
－종전：＂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종교예식 또는 의식）을 집행•관장하고 받 는 금품＂（소득세법 시행령）
－대안：종교계의 우려가 없도록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법률（「소 득세

법」）에 규정
（5）근로장려금
－종전：근로장려금지원 없음
－대안：근로장려금을 지원
（2） 2014 년 수정안의 과세 방향과 현재 결정 사항
원칙적으로 과세방침을 결정하기로 하였다．다만，과세시기•과세방법 등 세부 방 안은 종교단체 등의 추가적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한 원칙은 확정되었다고 한다．그러나 소규모 종교시설의 경우，납세를 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준비가 필요하고，과세방식 과 시기 등에 대해 조금 더 협의를 거쳐 공감대를 이뤄야 할 사항이 남아있어 금 번 시행령 개정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았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5．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
종교인 납세 의무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종교계의 반발에 미온적 입장으로 돌아 섰다는 보도가 있었다．그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종교인 소득 과세 와 관련한 법안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하였고，금년 2월 종교계가 참석한 국회 간 담회에서 수정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상당한 수준의 의견접근이 이루어졌으며，종 교인 소득 과세 문제는 추후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인 과세방법 등 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도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이었다．
IV. 근로소득과 형평성 논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국 교직자 수는 38만 명. 이 중 종교인 과세 대상은 약 8만 명으로 예측된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 타소득으로 정한 것은 종교활동을 '근로' 로 보는 시각에 종교계가 강하게 반발했 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종교 활동이 봉사활동인지 여부에 논란이 남아있다. 소득분류 문제는 일부 고소득 종교인과 근로 소득자 간 세부담 형평성 논란으로 이어진다.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에 관계 없이 필요경비 $80 \%$ 를 공제해주어 근로 소득자에 비 해 낮은 세율을 적용 받기 때문에 근로소득과 세부담 차가 크다.
본래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한 소득이다. 종교인의 소득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다. 비종교계로부터 기타소득 과세가 세법상 맞 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종교인 소득은 매월 급여 형태로 받게 되는 데, 여기에 강연료, 인세 등의 비정기적인 소득이 더해지고 종교단체 사정에 따라 차량유지비, 본인 및 자녀교육비, 체력단련비, 도서구입비 등도 지원을 받는 경우 도 있다. 일부 종교인 중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돈이 사례금이라 주장하는 경 우도 있다. 사전적인 의미로 사례란 '고마운 뜻을 나타내는 인사'로 되어 있고, 사례금이란 '사례의 뜻으로 주는 돈’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원이 정의 내린 세법상의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 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사례금이란 사전약정 없이 제공된 역무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서 일시적•일회적으 로 지급되는 돈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기타소득 여부 논란에 '종교인 소득' 이라는 새로운 소득분류를 만드는 방안도 제기된다. 하지만 세무전문가들은 특수성이 있는 다른 직업군 소득을 세세하게 분류해 만들어야 하는 점과 그로 인해 다른 근로계층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분류 신설 역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 V .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 1. 찬성의 입장

대다수 국민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독교윤리신청운동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86 \%$ 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고 $12 \%$ 만 반대했 다. 종교계도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일부 개신교회 와 사찰 등도 자진신고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 국내 불교 최대 종파인 조 계종도 종교인 과세에 긍정적이다.
정부의 입장 또한 세수 확대보다는 사회 전체에 대한 회계의 투명성과 조세의 형평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종교인의 과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 물 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국가의 기본을 지켜야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되어야 한다는 쪽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1) 기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목회자 보수는 소득에 해당된다.
(2)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
(3) 종교인 면세는 조세평등원칙과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4) 다른 선진국은 종교단체에서도 과세를 한다.
2. 반대의 입장

종교계는 종교인 소득과세를 시작으로 종교계를 향한 본격적인 세부담이 시작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종교기관이 보유한 각종 시설•자산에 세금이 부과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종교 시설은 대략 9 만여 개이고 공식 헌금 규모는 연 6 조원이다. 현재 종교단체 소유의 부동산 중 종교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가 면제되고 취•등록세 등도 비과세다. 종교기관은 세법상 상속•증여 세 비과세 혜택과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공익법인이다. 일부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세무당국은 "종교세로 발생하는 세수는 1,000 억 원 미만으로 예측 돼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밝혔다.
(1)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2)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3) 교회 헌금은 기부금이며,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4) 종교 억압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5)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이 많다.
(6)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VI.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교라는 특수성에 맞춰 약 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1. 미국

미국은 종교인 과세를 소득세보다는 일종의 퇴직연금 납부에 가깝게 시행한다. 미국 연방세법은 종교인에게 소득세가 아닌 사회보장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기 때 문이다. 성직자가 은퇴 후 노후생계 수단이 없을 수가 있어 일종의 연금형식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은퇴 후 연금을 받지 않으면 면세 신청을 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종교단체로부터 지급 받은 사례비 등은 반드시 세정당국에 보고 하여야 한다.

## 2. 독일

독일은 종교인에게 세금을 징수하지만 납세 대상은 성직자가 아니라 신도이다. 가톨릭•개신교•유대교 등을 믿는 교인들이 연 소득세의 8~9\% 를 종교세로 납부 를 한다. 이렇게 마련된 종교인 과세로 인한 납부금액은 해당 성직자의 임금으로 지급된다. 이 때 임금에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정부가 직접 임금을 주기 때문 에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고 원천징수가 가능하다.

## 3.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성직자도 일반 개인소득자와 동일하게 취급 받는다. 종교단체에 서 받는 보수나 기타 사례비 등이 성직자의 주 수입원이다. 성직자는 개인소득자 처럼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어도 정부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 4．일본

일본에서 종교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 급여나 퇴직금，보수•요금 등에 대한 소득 세 납세의무가 있다．원천징수대상인 급여에는 금전 외에도 경제적 이익의 공여 나 물품 지급도 포함된다．

VII．종교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1．법적근거
현행법에는 종교인 비과세 조항이 없다．
（1）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2）소득세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 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또한 소득세법 제 3조 과세소득의 범위에 서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 조（비과세소득）와 19 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조항은 없다．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 필요 없 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했다．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 교인에 대한 과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 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1）소득세법 12조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2）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b． 1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c．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d．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e．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f．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b．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c．「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 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 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 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d．「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 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 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 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
e．「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등，「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 원금，「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수당
f．「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및 사 망일시금
g．「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 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 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 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h．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i．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성질의 급여
j．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이 하 같다）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 으로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다만，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 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k．「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1．「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m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n．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한 경 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o．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
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p．「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q．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r．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s．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 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 내의 금액
t．「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u．「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4）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 금（傷痍年金），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b．삭제＜2013．1．1．＞
c．「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d．「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e．삭제＜2013．1．1．＞
（5）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a．「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b．「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c．「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d．「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 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e．「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 원금과 그 밖의 금품
f．「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 하는 소득
g．서화•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소득세법 59조 5
（1）종합소득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 산 출세액에서 그 세액에 해당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a．정부 간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그 양쪽 또는 한쪽 당사 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b．거주자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과 항공기의 외국항행사업으로부터 얻는 소득．다만，그 거주자의 국적지국（國籍地國）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운용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도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이 법 외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 1 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감면한다.
2. 세수의 감소방지

종교인 등에 대한 조세혜택은 국가의 전체 재정에 필요한 세수를 감소시키는 결 과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종교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부족분은 결국 개인이나 영리법인의 조세부담금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종교인 등 의 비과세 내지 면세의 태도에서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VIII. 결론
‘종교인 과세' 논의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종교적,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현재 종교계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과세 방식 등의 이유로 과세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종교단체가 정부가 하지 못하는 공익사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있는 만큼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종교인 소득에 대해 서는 종교인 역시 「헌법」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과세해야 한 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종교인 등의 사회적 영향력은 다른 어떤 단일집단보다 강력 하다.
리 역사에 있어서도 종교는 국민적 통합이데올로기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왔다.
정부가 그 동안 종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종교인 등에 대한 특권을 부여했다고 한다면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은 국민의 납세의무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했다. 정 부는 대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종교인 등의 활동을 세제 상 확대 지원해야 한다. 한편 성직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잠자는 의식을 깨우는 햇불의 역할을 해온 종교가 납세의무 불이행으로 부정적이고 부패한 이미지를 보여서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 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 떻게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정안은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이라는 범주를 새로이 만들고,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개인의 생활비에 사 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좁게 해석하였다. 이 경우 종교인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진다. 직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범주를 만든 것 또한 이 번이 처음이다. 종교인만 따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법상 개념체계가 무너 지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도 있다. 또한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 는 수정안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앞으로 형평성이 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 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IV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일본)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과세대상이 되며 여러가지 세금이 과세되지만 종교법인에 대하여는 본래의 활동인 종교 활동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비과세 하는 등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와 비 교하여 세제상의 특례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각 세목별 비과세범위는 다음과 같다

| 세 목 | 비과세범위 |
| :--- | :--- |
| 법인세 |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법인(특별,직할도민)세 <br> 법인(시,으,면민)세 |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법인사업세 |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소득세 |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이익의 분배, 잉여금의 분배 |
| 등록면허세 | 경내지 및 경내건물의 취득등기 |
| 관세 | 세외국으로부터 기증한 의식 또는 예배용에 직접 사용 <br> 하기 위한 물품 |
| 인지세 | 금전 및 유가증권의 수취증 |
| 부동산취득세 <br> 고정자산세 | 경내지 및 경내 건물 |
| 도시계획세 | 고정자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가옥 |
| 특별토지보유세 | 수증한 종교활동용 토지 |
| 사업소세 |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소 |

## 1. 법인세

종교법인의 본래의 목적은 종교의 교리를 보급하고 의식행사를 통하여 신 자를 교화육성하는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과 법인의 재정 기반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법인 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대하 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 등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외의 소 득은 비과세 하고있다. 다시 말해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을 영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만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세소득이 제한된 소득에 관한 회계와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그 법인의 본래적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구분경리 한다.
(1)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을 한 경우에 한하여 과세하지만 이 경우 수익사업이란 다음에 게기한 34 종류의 사업으로서 계속하여 사업장을 두고 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 사업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또는 이와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부수행위도 수익사업에 포함된다.

| 물품판매업 | 부동산판매업 | 금전대부업 |
| :--- | :--- | :--- |
| 물품대여업 | 부동산임대업 | 제조업 |
| 통신업, 방송업 | 운송업, 운송취급업 | 창고업 |
| 청부업 | 인쇄업 | 출판업 |
| 사진업 | 대석업(집회장 등) | 여관업 |
| 요리점업, 기타 음식점업 | 주선업 | 대리업 |
| 중매업 | 도매업 | 광업 |
| 토석채취업 | 목욕탕업 | 이용업 |
| 미용업 | 흥행업 | 유희소업 |
| 유람소업 | 의료보건업 | 기예교습업 |
| 주차장업 | 신용보증업 | 무체재산권 제공업 |
| 근로자파견업 |  |  |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가령 그 사업에서 상당한 이익이 있었더라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 등을 영위하는 사업이 이들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개개의 사업에 대하여 경제적 실태나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수익사업 해당여부의 구체적인 판정사례

종교법인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의 판정사례에 대하여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1)물품의 판매

부적, 사례, 점보는 제비 등의 판매와 같이 그 판매와 매입원가의 관점 에서 보아 그 차액이 통상적인 물품판매업의 매매이윤이 아닌, 실질적으로 희사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그 물품의 배포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품판매업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성질의 물품(예를 들면 그림엽서, 사진첩, 달력, 향, 초, 꽃, 염주, 기념스탬프첩, 벼루와 먹, 문진. 메달, 방패, 페난트, 열쇠고리, 잔, 국자, 저, 도기 등)을 통상판매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물품판매업)에 해당한다.

덧붙여 향이나 양초, 꽃 등을 배포하더라도 오직 참배시의 신전, 불전 등 에 올리기 위하여 하사하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2)분묘지 임대

종교법인이 분묘지를 임대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분묘지 임대는 그 사용기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대를 징수하는 것 이외에 그 임대초기에「영대사용료」로서 일정한 금액을 일괄 징수하는것도 포함한다.
(3)경내지 등의 시설임대

종교법인의 경내지나 본당, 강당 등의 시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유흥 또는 위안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는 전부 수익사업(대석업)에 해당 한다. 회의, 연수 등의 오락, 유흥 또는 위안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임대도 국•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한 임대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수익사업에 해당 한다.
(4)숙박시설 경영

종교법인 소유의 숙박시설에 신자나 참배인으로부터 숙박료를 받는 행위 는 그 숙박료를 어떠한 명목으로 받아도 수익사업(여관업)에 해당 한다.

그러나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이용하는 간이 공동숙박 시설에서 그 숙박료 가 모든 이용자마다 1 박에 1 천 엔(식사포함의 경우 1 천 5 백 엔)이하로 운 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여관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5)소장품 등의 전시

종교법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 또는 위탁보관을 받은 물품을 상설장소인 보물관 등에서 관람하는 행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6)다도, 꽃꽂이 등의 교습

종교법인이 다도교실, 꽃꽂이교실 등을 개설하여 다도, 꽃꽃이 등 특정한 기예를 교습하는 것은 수익사업(기예교습업)에 해당 한다.

이 경우 특정한 기예로서는 다도, 꽃꽂이 이외에 양재, 바느질, 의복입기, 편물, 수예, 요리, 이용, 미용, 연극, 연예, 무용, 무도, 음악, 그림, 서도, 사진, 공예, 디자인(도안 포함) 등이 있다.

게다가 이들 기예교습에는 통신교육에 의한 기예교습 이외에 면허, 졸업 자격, 단수, 급, 사범, 기예분야 유명자 등의 일정한 자격, 칭호 등 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 한다.
(7)주차장 경영

종교법인이 경내 일부를 시간제로 특정 또는 다수의 자에게 수시로 주차 시키는 외에 월약정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동일인에게 주차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주차장업)에 해당한다.

이외에 주차장에 적합한 토지를 주차장용도로 일괄하여 임대하는 것도 같은방식으로 취급된다.
(8)결혼식장 경영

종교법인이 신전에서 결혼, 불전에서 결혼식 등을 행하는 행위가 본래의 종교활동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식 후의 피로연장소로 대여하거나 음식물 제공, 의장 등의 물품제공, 기념사진촬영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3) 구분경리

종교법인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므로, 수익사업에 관한 수지, 자산 및 부채와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수지, 자산 및 부채를 구분경리하여 수익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공통되는 비용 또는 손실액 에 대하여는 그 비용 또는 손실의 성질 등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면 사 용면적, 종업원 수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배부하며 배부한 바에 따라서 경리한다. 그리고 자산의 구분경리는 실제로는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수익사업과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공통사용 되는 자산(각각의 사업에 전용되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 이를 수익사업 자산으로 구분경리 하지 아니하고 결산 시에 그 상각 비를 사용면적비율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익사업의 경비로 계산하는 것도 관계없다.
(4) 수익을 본회계에 편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종교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공익사업인 종교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얻기 위함이므로 수익사업의 수익을 종교법인의 본래의 활동을 위해 지출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부문에서 수익 사업 이외의 사업부문으로 기부한 것으로 취급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부문에서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20 \%$ 한도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5) 세무서 제출

종교법인이 새로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그 사업을 개시한날 이후 2 개월 이내에「수익사업개시신고서」 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6) 신고 및 납부

수익사업을 하는 종교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와 함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익사업에 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등 이외에 수익사업 이외의 사업에 관한 관련 서류도 첨부하여야 한다.

## 2. 원천소득세

원천징수제도는 급여나 보수•요금 등의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시에 일정한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회사나 협동조합은 물론 학교, 관공서 및 개인이나 인격 없는 사단•재단 이라도 전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에 있어서도 그 대표임원이나 직원 등에게 급여나 퇴직 수당을 지급할 때 혹은 세리사 등에게 보수•요금, 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 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그 지급시에 소정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 소비세
(1) 납세의무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사업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종교법인도 면세사업자(전전사업연도의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 이하 종교 법인)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하면 납세의무를 부담 하게 된다.
(2) 과세대상

소비세의 과세대상 판단기준은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의 구분 에 의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업으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대가성이 있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되는가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기부나 증여행위로 금 품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산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임대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그 반대급부로서 금품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되어도 소비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일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비과세

거래로 취급하여 소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에를 들면 종교법인의 관계 에서는 토지임대, 유아원 수업료(보육료), 입원료, 입원검증료 및 시설설비 비 등이 있다. 한편 보물관 등에의 입장료는 소비세법상 비과세로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요금 등으로 전가되어 소비자에게 소비세의 부담을 주게된다.

종교법인이 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소비세의 과세관계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 사업내용 | 과세, 불과세 등 |
| :---: | :---: |
| 장의, 법요 등에 동반된 수입 <br> (계명료, 보시, 신전에 바치는 요금 등) | 불과세 |
| 부적, 사례, 점보는 제비 등의 판매 | 불과세 |
| 그림엽서, 사진첩, 달력, 향, 초, 꽃 등의 판매 | 과세 <br> 단, 향, 초, 꽃의 판매 중, <br> 참배할 때 신전•불전 등에 바치 <br> 기 위하여 하사하는 물품의 배포 <br> 는 불과세 |
| 영대사용료를 받아서 하는 분묘지의 임대 | 「토지임대」로 비과세 |
| 묘지, 묘원의 관리료 | 과세 |
| 주차장 경영 | 과세 |
| 토지나 건물의 임대 | 토지임대는 비과세 <br> 건물임대는 과세, 단 주택임대는 비과세 |
| 숙박시설(절의 숙사 등)의 제공(1 박 2 식 1,500 엔 이하) | 불과세 |
| 신전결혼식, 불전결혼식 등의 행위 <br> - 예식행위로서 본래의 종교활동의 <br> 일부로 인정되는 것 <br> - 예식 후 피로연때 음식물 제공 <br> - 예식을 위한 의장 기타 물품의 대부 | 불과세 <br> 과세 <br> 과세 |
| 유아원 경영 등 <br> - 유아원의 경영 <br> - 제복, 제모 등의 판매 <br> - 노트, 필기구 등 문방구의 판매 | 보육료 - 입원료 - 입원검증료 - <br> 시설설비비 등은 비과세 <br> 과세 <br> 과세 |


| 상설 미술관，박물관，자료관，보물관 등 <br> 에서 소장품의 관람 | 게 |
| :--- | :--- |
| 신문，잡지，해설•법화집，경전 출판， <br> 판매 | 과세 |
| 다도，꽃꽂이，서도 등의 교습 | 과세 |
| 배관료 | 불과세 |

（4）신고 및 납부
납세의무자인 종교법인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 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 확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소비세 액 및 지방소비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세청（2014）「2014 년판 종교법인의 세무－원천소득세와 법인세 • 소비세－」
田中義幸•繁田勝男•神山敏夫•神山敏蔵（2014 년）「종교법인의 회계의
전부－「종교법인회계의 지침」축조해설과 회계•세무실무【개정판】」 세무 경리협회
일본탬플원 • 조일세리사법인 • 조일비지네스솔루션（주）
편（2012 년）「도해 종교법인의 법무•회계•세무」 중앙경제사

## 제10차 한•일 학술토론회

#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 <br> 요약 발표문 

(부제•양국공통) 종교법인 과세실태
(부제•한국) 한국의 조세교육

일 시: 2014/ 11/ 20 (木)
장 소: 부산 지방세무사회 회관

## 요 약 문 목 차

I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일본의 소비세 비교(주제) (한국)
(1) 부가가치세의 성격 / 1
(2) 부가가치세 기초 / 1
(3) 과세 거래 / 3
(4) 영세율과 면세 / 5
(5) 과세표준 / 7
(6) 매입세액 / 9
(7) 세액공제 / 9
(8) 세금계산서 / 15
(9) 신고 납부 / 17
(10) 간이과세 / 17
(일본)
(1) 총설 / 21
(2) 과세대상 / 21
(3) 비과세와 면세 / 23
(4)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성립 / 25
(5) 과세표준과 세율 / 27
(6) 세액공제 등 $/ 29$
(7) 과세기간, 신고•납부, 납세지 /31
(8) 국가 등에 관한 특례 /35
(9) 잡칙 /37
(10) 참고 /37

II 한국의 조세교육(부제/한국)
(1) 국세청의 조세교육 / / 41
(2)한국세무사회의 조세교육 / / 43

III 종교법인 과세실태(부제)
(한국)
(1) 총설 / 47
(2) 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상황 / 47
(3)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 47
(4)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방법 / 49
(5) 종교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 49
(6) 결론 / 49
(일본)
(1) 법인세 / 51
(2) 원천소득세 / 51
(3) 소비세 / 51

IV 질의 응답
(1) 한국 측에서 일본 측에 질문 / 55
(2) 일본 측에서 한국 측에 질문 / 65

## I 한국의 부가가치세법 (한국/주제)

## I.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이에 참여한 각 기 업이 추가 창출한 가치인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으로 일정기간 중 매출액 전체에 대하 여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 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세금계산서 제도가 필수요건 이며 이를 통하여 근거과세제도가 확립되고 소비세의 성격이 뚜렷해진다.

우리나라는 1977년 소비세제를 개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현재 내 국세 가운데 가장 높은 세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간세목으로 성장하였다. 2013년 현재 부가가치세 세수는 약 56조원으로 전체 국세수입 약 201.9조원의 27\% 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비중이 크다.

## II. 부가가치세 기초

## 1.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 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포함)과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모두 포함 한다.
2. 과세 기간

과세기간이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기간 을 말한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 과세표준 의 계산기간, 신고기한 등과 관련되어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1.1-12.31 을 1 과세기간으로 하는 소득세, 1 년 이내의 범위로 사업연도를 정하는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와 달리 1 년을 2 과세 기간으로 하여 상반기, 하반기를 각 1 과세기간 으로 하고 있다.

## 3. 납세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조세채권자는 권리 행사를 하 는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각 사업장을 납세지로 하고 있다

## 4. 사업자 등록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 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일정 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 할 수 있다.

## 1.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 이다.
재화라 함은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그리고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 위를 말한다.
2. 재화공급 의제(간주공급)

재화의 공급은 사업자가 재화를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대가를 받고 인 도 또
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재화의 간주공급이라고 한다. (법 제 10조, 시행령 제19 • 20 • 21조)

1)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 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상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 환으로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4) 페업시 잔존재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페지하는 때에 판매되지 아니한 잔존재화는 이를 자 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재화의 인도 및 양도가 이루어 졌으나 실질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이 양도된 것 이 아니거나, 납부와 환급이 동시에 일어나 과세실익이 없거나, 국가에 제공함으 로 인하여 국가가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을 하지 않는 담보의 제공, 사업의 양 도, 조세의 물납, 특정창고증권의 양도, 공매 및 강제경매, 수용에 따른 철거 보 상금,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건물 등 7 가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4.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의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 설물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과 마찬가지 로 영리목적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나, 원칙적으 로 유상공급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되고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5.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외국의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취되거나 포획된 수산물 포함)과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제외)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6. 부수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 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7.거래시기

거래시기는 일반적으로 인도시점. 용역의 공급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 으나, 특수한 경우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거래시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부가가치세 신고 귀속, 과세기간 등이 결정되므로, 만약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거 래시기를 잘못 알게 되면 가산세의 부과, 매입세액의 불공제등 중대한 불이익 을 받게 된다.

## IV. 영세율과 면세

1. 의의

영세율이라 함은 매출과표(공급가액)에 적용하는 세율을 "0" 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출세액을 "0" 으로 하게되면 매출세액은 없을 것이며 만일 매입세액이 있다면 환급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세율은 부가가치세가 완전히 면 세되는 제도 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 히 없어지게 된다.
2. 영세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은 크게 다음의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수출하는 재화 (법 제21조)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법 제 22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법 제 23조)
- 기타 외화획득 사업 (법 제 24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 적용 (특례법 제 105조)

3. 면세 [법 제 26•27•28조]

부가가치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 입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는 바, 국민의 일반생활에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과 복리후생이나 문화•공익 등에 관련된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 하여 간접세로서의 역진성을 보완하여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고, 토지 • 노동• 자본 등 부가가치를 원시적으로 창출하는 기본생산요소에 대하여는 법 이론상 의 부가가치의 생산 요소이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 V. 과 세 표 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란 매출세액의 산출기준인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을 말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기 타의 경우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간주공급의 경우 감가 상각 대상자산에 대해서는 기간경과에 따른 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한다. (부가세법 제29조)

## 1. 과세표준의 범위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 은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시가를 과 세표준으로 한다.

## 2. 과세표준 계산 특례

(1)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자가공급, 개인적인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재 고재화)의 경우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고 재화이기 때문에 기간의 경과 에 따라 감가되므로 객관적인 시가를 선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감가상 각 대상자산의 시가는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비율을 취득가액에서 차감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1) 과세, 면세사업 공통 사용 재화 공급

과세 면세 겸업자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양 도할 경우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 계산

사업자가 건물과 함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가액 구 분 없이 토지, 건물이 합산된 가액으로 거래를 하게 되나, 부가가치세법상 건물은 과세대상 재화이고 토지는 면세대상 재화 이므로 거래가액 중 토지 와 건물의 가액이 각각 얼마인지 구분계산 하여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확인 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나 토지 건물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타의 경우로 나누어 순서대로 계산한다

## VI. 매 입 세 액

매입세액이라 함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을 때 부담한 부가가치 세액을 말한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에 관련되었는지 면세사업에 관련 되었는지 여부,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제출 여부 등의 사유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과 공제 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으로 구분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

## 1,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1)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 확인 매입세액
(3) 의제 매입세액(면세 농산물 등의 구입시)
(4) 재활용 폐자원 등 매입세액(폐기물 처리업, 중고자동차 매매업)
(5) 재고매입 세액 $($ 간이 $\rightarrow$ 일반 전환 시)
(6) 변제 대손 세액(부도 후 변제)
(7) 면세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 시(면세사업재화의 과세사업 전용)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75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VII. 세 액 공 제

1. 대손세액공제(법 제45조)

사업자가 과세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부가 가치세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액공제(법 제46조)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조특법 제106조의 7)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 \%$ (2008년 이전 $50 \%$ )를 2015년까지 경감한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제외함)

## 4. 전자신고 세액공제(조특법 제 104 조의 8 제 2 항)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납부세액에서 1 만원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며, 납세자를 대리하여 세무사, 회계사(세무, 회계법인 포함)가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 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 인당 2 만원씩을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확정신고(간이과세자 포함)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납세자 1 인당 1 만원씩 공제한다.
5.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법 제47조)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한 경우 교부 건당 200원(2010년 100원)
을 2015년까지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연간 100 만원을 한도로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공제한다.
※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는 다음의 표를 참고바랍니다.

|  | - 당기 신고분 매출세액 | 국내매출, 국외수출 |
| :---: | :---: | :---: |
| 매출세액 | -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세액 | 가산세적용 |
|  | - 대손세액공제 가감 | 대손공제시 - 대손반환시+ |


|  | -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  |
| :---: | :---: | :---: |
|  | -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매입세액 | 현금영수증등 포함 |
|  | - 의제매입세액 | $\begin{aligned} & \text { 2/102, } 4 / 104,6 / 106, \\ & 8 / 108 \end{aligned}$ |
| 매입세액 (-) |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 5/105 9/109 |
|  | - 과세사업전환매입세액 | 면세사업자 $\Rightarrow$ 과세사업자 |
|  | - 재고매입세액 | 간이과세자 $\Rightarrow$ 일반사업자 |
|  | - 변제대손세액 | 공급받은자의 대손변제 |


|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 사업무관, 접대비관련 등 |
| :--- | :--- | :--- |
| 매입세액 $(+)$ | • 공통매입 면세사업매입세액 | 안분 계산 |
|  | • 대손처분 받은 세액 | 공븝받은자의 대손발생시 |

납부(환급)세액

|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 1.3\% 2.6\% (환급 불가) |
| :---: | :---: | :---: |
|  | - 택시회사 경감세액 | 90\% 경감 |
| 세액공제 |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2010 부터 건당 200 원 |
|  | - 전자신고 | 건당 1 만원 |
|  | - 현금영수증 사업자 |  |


|  |  | $\cdot$ 예정신고 미환급 |  |  | 예정신고 일반환급 |
| :--- | :--- | :--- | :---: | :---: | :---: |
| 기납부세액 | • 예정고지 | 20 만원 이상 고지 |  |  |  |
|  |  | $\cdot$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미등록, <br> 수입금액명세미제출 | 1\% 0.5\% |
| :---: | :---: | :---: |
| 가산세 | - 세금계산서 관련 | 일반 $1 \%$ 가공위장 2\% |
|  | - 신고불성실 관련 | 10\% 20\% 40\% |
|  | - 납부불성실 관련 | 일일 3/10000 |

## 납부할 세액

1. 의의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 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을 말한다.
2. 교부시기 및 의무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 이다. 따라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상의 가산 세 등의 불이익이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2 매를 작성하여 1 매는 공급받는 사 업자에게 교부하고 각각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 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 3. 세금계산서의 작성

(1) 필요적 기재 사항 (누락시에는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 적용 대상)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2) 임의적 기재 사항
-공급하는자의 주소 - 공급받는자의 성명, 상호, 주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의 업태와 종목 -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 공급연월일 - 거래의 종류
4. 수정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 세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 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5. 기타의 세금계산서
(1) 신용카드 -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결제수단이며 이는 영수증에 해당 하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 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전자세금계산서 -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로 서 이는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3) 현금영수증 -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 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영수증으로서 이 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1)예정신고
(1)제1기예정신고 - 1월 1일 ~ 3월 31일 (신고기한 : 4월 25일)
(2)제2기예정신고 - 7월 1일 ~ 9월 30 일 (신고기한 : 10월 25일)
(2)확정신고
(1)제1기확정신고 - 1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 7월 25일)
(2)제2기확정신고 - 7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한 익년 1월 25일)
2. 조기 환급 신고

수출과 사업설비 투자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기한 을 기다리지 않고 조기에 환급해 주는 제도를 조기환급신고라 한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단위, 매2월 단위, 예정신고기간 단위로 신고 할 수 있 다.
3. 가산세
(1) 미등록 가산세 - 사업개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 의 $2 \%$ 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 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4)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신고기한이 지난 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 \%$ 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5) 신고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부당 무신고시에는 40\%)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10 \%$ (부당 과소신고시에는 $40 \%$ )

## X. 간이과세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하기가 어 려우므로 납세의무를 간편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1. 기준 수입금액

직전 1 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 천 800 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간 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세율 $(10 \%)=$ 납부세액
3. 간이과세자의 유형 전환
(1)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 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
(2) 일반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다른 간이과세사업장이 일반으로 전환되며 또 한 신규 개업하는 사업장은 간이과세가 배제된다.
4.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간이과세자는 확정신고의무만 있으며 확정신고는 1월 1 일 ~ 12 월 31 일 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25일 까지 신고한다.
5.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을 납부할 의무를 면제한다.

## I 일본의 소비세법 (주제/일본)

## I 총설

소비세는 간접세에 속하는 조세이며 간접세는 수평적 공평에는 우월하나, 수직적 공평은 꾀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간접세에는 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 있다. 또한 소비세는 종가세이며 과세표준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쉬운 것은 아니나 세부담의 수평적 공평, 과세물품의 가격변동에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전반에 폭넓게 적은 부담을 요구하는 소비세는 세제전체의 공평성의 확보, 고령화 사회에의 대응, 종래의 간접세제도를 발본적으로 개정할 필요 가 있으므로 제정되었다.

소비세는 제정 이후 1991 년, 1994 년, 2003 년, 2012 년에 개정되었고, 1994 년에 지방소비세가 제정되었다. 국•지방간의 소비세수의 배분은 소비 세 - 지방소비세를 합하여 세율 $5 \%$ 중 $1 \%$ 는 지방공공단체의 일반재원이 되 는 지방소비세이다(2013 년도 예산). 소비세수입은 연금, 의료 및 간호의 사회보장 및 소자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 II 과세대상

소비세의 과세대상은 국내에서 사업자가 행하는 자산의 양도 등(국내거래) 및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수입거래)에 한정 된다.
소비세의 과세대상인 국내거래는 국내에서 행하는 거래일 것,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행하는 것일 것, 대가를 받고 행하는 것일 것, 자산의 양도 등이 있을 것, 이상의 요건에 전부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소비세는 사업자가 국내와 국외의 쌍방에 걸쳐 거래하고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 국내거래인지 국외거래인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사업이란 자산의 양도 등을 반복, 계속적이며 독립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받는 것을 말 한다. 자산의 양도 등이란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임대 및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국외에서 행하는 거래(국외거래),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행하는 거래가 아 닌 거래, 대가성 없는 거래 및 자산의 양도, 임대 및 용역제공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래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외국화물은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III 비과세와 면세

1. 비과세

국내거래에서 비과세거래란 (1)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아니한 것. (2)사회정책상의 배려에 의한 것으로 분류된다.
(1) 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
a, 토지 (토지상에 존재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양도 및 임대(일시사용 제외)
b. 유가증권, 이에 속하는 것 및 지급수단의 양도
c. 이자를 대가로 하는 대여금 기타 특정자산의 임대 및 보험료를 대가로 하는 용역제공 등
d. 우표류, 인지 및 증지 양도
e. 물품표 등(상품권 등)의 양도
f. 국, 지방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
g. 외국이체업무 관련 용역제공
(2) 사회정책상 배려에 의한 것
h. 공적의료 보장제도에 의한 의료, 시설요양 또는 이와 같은 종류에 속하 는 자산의 양도 등
i. 간호보험 관련 자산이 양도 등(이용자의 선정에 따른 일부 서비스제외)
j. 사회복지법에 규정한 사회복지사업 등
k. 의사, 조산원 등의 의료에 관한 시설관계자에 따른 조산관련 자산의 양도 등

1. 매장과 관련한 매장료, 화장에 관련한 화장료 등,
m. 신체장애자를 위한 특수한 성상, 구조 또는 기능을 가진 물품의 양도, 대부 등
n. 학교, 전수학교, 각종 학교 등의 수업료, 입학금, 시설설비비 등
o. 교과용 도서의 양도
p. 주택임대

비과세되는 수입거래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외국화물 중 유가증권 등, 우표류, 인지, 증지, 물품표 등, 신체장애자용 물품, 교과용 도서가 있다.
2. 면세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과세해야 할 소비세를 면제한다. 면세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수출면세(수출과 유사한 거래 포함)
a. 국내에서 수출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
b. 외국화물의 양도 또는 임대
c. 국내와 국외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또는 통신(국제운송, 국제통신)
d. 국내와 국외간 우편 또는 신서편(국제우편)
(2) 수출물품 판매장(면세점)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외국인여행자나 주재하는 군인 등의 비거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통상적인 생활용품의 양도
(3) 그 밖의 면세로서 외국공관 등에 대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 소비세법 이외의 법률에 의한 면세가 있다.

또한 면세와 비과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매입관련 매입세액공제가 면세에 관해서는 공제가능하나 비과세의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또한 면세요건으로 증명서 등은 보존해야 한다.

## IV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성립

## 1. 납세의무자

국내거래의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사업자이며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지를 불문하고 국내에서 과세대상이 되 는 거래를 한 자이다.

수입거래에 대하여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자로서 수입자가 소비자 개인인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다.
2. 소규모사업자의 납세의무 면제

소규모사업자의 세금부담을 고려하여 그 과세기간(2 기 전)의 과세매출액 이 1 천만 엔 이하 사업자는 그 과세기간의 소비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이 사업자를「면세사업자」라고 한다. 단 특정기간의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할 때에는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준기간이 없는 법인 중에서 자본금이 1 천만 엔 이상인 법인에 대하여는 그 기준기간이 없는 사업연도의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2014 년 4 월 1 일 이후에 설립된 신설법인으로서 자본금이 1 천만 엔 미만으로서 피지배회사인 경우 지배회사의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이 5 억 엔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음 과세기간 이후부터 과세사업자가 된다. 이 경우 2 년간 계속 적용하게 된다. 또한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부적용 신고서 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과세기간 이후부터 면세사업자가 된다．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기준기간 과세매출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상속한 연도）또는 상속인의 기준기간의 과세매출액과 피상속인의 기준 기간 과세매출액의 합계금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상속한 연도의 다 음연도와 그 다음연도）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3．납세의무의 성립
국내거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때이며 원칙적으로 인도일 기준이며 수입거래의 경우에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때이다．

V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액계산을 위한 기초로서 과세대상을 구체적으로 금액 이나 수량으로 표시한 것이다．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과세액을 계산한다．
국내거래의 과세표준은 「과세자산의 양도 등의 대가액」이며 수입거래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C．I．F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내거래의 과세표준은「일반적인 과세표준」과 법인의 임원에 대한 저가 양도와 개인사업자의 가사소비 등의「간주양도 등 특수거래의 경우」로 분류된다．법인의 임원에 대한 저가양도（통상판매가격의 $50 \%$ 미만으로 양도） 는 시가상당액으로，개인사업자의 재고자산 등의 가사소비 등은 그 자산의 시가상당액이다．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화물의 과세표준은 관세과세가격（통상은 C．I．F 가격）에 관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세율은 $6.3 \%$ 의 단일세율이나 그 밖에 지방소비세가 소비세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여 $17 / 63$（소비세율 $1.7 \%$ 상당）의 세율로 부과되며 소비세와 지방소비 세를 합하여 세율은 $8 \%$ 이다．
소비세의 과세표준액이란 그 과세기간 중에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의 양 도 등 중 면세거래를 제외한 과세자산의 양도 등과 관련한 과세표준인 금액 의 합계금액이다．

과세표준액 및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의 구체적인 계산은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시 인용되며 과세사업자가 선택한 회계처리방식에 따라서 다음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a. 세 포함 경리방식의 경우

과세표준액 $=$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 등의 세 포함 대가의 합계액 $\times 100 / 108$ (천 엔 미만 절사)
소비세액 $=$ 과세표준액 $\times 6.3 / 100$
b. 세 별도 경리방식의 경우

과세표준액 $=\{$ 국내에서 행한 과세자산 등의 세 별도 대가의 합계액

$$
\text { +가수소비세 등의 금액 }\} \times 100 / 108 \text { (천 엔 미만 절사) }
$$

소비세 액 $=$ 과세표준 액 $\times 6.3 / 100$

VI 세액공제 등

1. 세액공제 개요
(1) 세액공제란

소비세는 생산, 유통, 판매 등의 거래단계별로 과세되며 소비자가 부담하 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거래 때마다 그 거래금액에 대하여 소비세를 과 세하면 세의 누적을 초래하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그 누적된 세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세에는 이 누적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액에 대 한 소비세액에서 과세매입에 관련된 소비세액을 공제하는「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매입세액공제라고 한다.

또한 과세매출에 대하여 할인이나 대손 등의 일정사유가 생긴 경우 세액 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자의 세부담을 고려하여 과세매입관련 소비세액을, 과세 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만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간편법(간이과세제도)도 마련 되어 있다.
(2) 세액공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액공제에는 다음 3 종류가 있다.
(1) 매입세액공제(법 30①, 37(1))
(2) 매출관련 대가의 반환 등을 한 경우의 세액공제(법 38(1))
(3) 대손관련 세액공제 (법 39(1)
(3) 납부세액 계산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납부세액 계산구조는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
$\triangle$ 과세매입 등에 관련된 소비세액
（원칙）전액공제
개별대응방식
일괄비례 배분형식
（특례）간이과세방식
$\triangle$ 매출대가의 반환 등에 관련된 소비세액
$\triangle$ 대손관련 소비세액
$=$ 납부세액

VII 과세기간，신고•납부，납세지

국세의 납부세액 확정방식은「신고납세방식」과 「부과과세방식」의 두 종류가 있다．（통칙법 16）
소비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과세기간
（1）과세기간 규정
소비세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 년이며 중간신고제도를 두고 있다．
（2）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 규정
1 월 1 일 1 부터 12 월 31 일까지이다（법 19（1）一）．
【기본통칙】 기통 3－1－1，3－1－2
（3）법인의 과세기간 규정
법인의 사업연도이다（법 19（1）二）．
【기본통칙】 기통 3－2－1，3－2－2
（4）과세기간 특례란
개인사업자 및 사업연도가 1 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변경신고서를 제출 함으로서 과세기간을 1 개월 또는 3 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법 19（1）3～4 의 2）．

2．신고•납부
（1）국내거래에 관련된 신고와 납부
(1) 확정신고

법인의 경우에 과세기간 말일의 다음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음연도 3 월 31 일이다(조법 86 의 4)
(2) 중간신고

과세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의 확정소비세액의 연간세액이 4,800 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400 만 엔 초과 4,800 만 엔 이하의 경우 또는 48 만 엔 초과 400 만 엔 이하의 경우 각각 중간신고를 하며 신고와 관련된 소비세액을 납 부하도록 하고 있으며(법 $42,42,48$ ), 48 만 엔 이하라도 중간신고를 할 수 있다(법 42(8)). 중간신고는 원칙적으로 확정된 소비세액을 기초로 신고하나 특례적으로 가결산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다.
(2) 수입거래에 관련된 신고와 납부

신고납세방식이 적용되는 과세화물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려는 자는(사업 자에 한하지 않고 개인도 포함) 반출된 과세화물에 부과된 소비세액을 납부 해야 한다(법 47(1), 50(1).

## 3. 납세지

(1) 납세지란

조세에 관하여 납세자와 국가간의 법률관계의 결합을 결정하는 장소를 말 하며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2) 국내거래의 납세지
(1) 납세지 선택

개인사업자가 소득세법 규정(납세지 특례)에 따라 주소지를 대신하여 거소 지 또는 사무소 등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소비세에 대하 여도 그 선택한 거소지 또는 사무소 등의 주소지가 납세지로 된다(법 21(1), (2).
(2) 납세지의 지정

소비세의 납세지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납세지 관할 국세 국장(지정된 납세지가 관할국세국장의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 국 세청장관)은 적당한 납세지를 지정할 수 있다(법 23(1), 영 44)。
(3) 수입거래의 납세지

수입화물의 반출과 관련된 보세구역 소재지가 납세지로 된다(법 26).

VIII 국가 등에 대한 특례

1．개설
소비세는 그 거래가 과세거래에 해당되는 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그래서 국가라도 보통의 영리기업과 같이 자산양도 등은 과세대상이 되며 기본적으로는 매입세액공제 등에 관한 소비세의 체계도 그대로 적용 된다．

그러나 국가 등에 대하여는 아래의（1）에서（5）에 게재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법 60，영 72～78）．
（1）사업단위의 특례
（2）자산양도 등의 시기 특례
（3）매입세액공제특례
（4）일반회계특례
（5）신고기한특례

2．매입세액공제특례

국가 등에 대한 매입공제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보조금，회비，기부금 등의 대가성 없는 수입은「특정수입」으로，이에 의거 처리되는 과세매입 등의 소비세액을 매입공제세액으로 공제할 필요가 있다（법 60（4））．
（1）특정수입의 의의
특정수입이란 조세，보조금，교부금，기부금，출자에 대한 배당금，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법 60（4），영 75（1））．

【기본통칙】기통 16－2－1
（2）특정수입이 있는 경우의 매입공제세액 조정
국가 등이 본 규칙과세에 따라 매입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특정수입 비율이 $5 \%$ 를 초과할 때에는 일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특정수입관련 과세 매입 등의 소비세액을 통상의 계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매입공제세액에서 공 제한 잔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공제세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 국가 등이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특정수입비율이 5 $\%$ 이하인 경우에는 그 매입공제세액을 조정할 필요 없이 통상의 계산방법 에 따라 계산한 매입공제세액 전액을 그 과세기간의 매입공제세액으로 한다．

IX 잡칙

1．신고서 제출의무
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될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내용 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는 일정한 경우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허가 받을 의무에는
수출물품판매장을 개설하려고 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4．기장의무란

기장의무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법 58）．

## 5．총액표시 의무

가격표 등에 가격표시를 세 포함가격으로 통일함으로서「소비세액 포함 가격」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과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소비자에 대하여 상품 등의 판 매，용역제공 등의 거래를 할 때 미리 그 거래가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나 용역 등에 관련된 세 포함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법 63 의 2）．
（1）총액표시 대상거래 소매단계의 거래
（2）총액표시방법
（1）총액표시의 구체적인 표시방법은「세 포함가격」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2）총액표시 대상인 표시매체
가격표，상품에 표시，포스터，광고 등

## X 참고

1．계정과목에서 본 소비세 과세여부 판정

손익계산서나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에서 살펴보아 어느 계정과목이 과세 대상이며 혹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 단 그것 은 우선은 판단기준이 되며 구체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그 내용을 새겨볼 필 요가 있다.
2. 소비세의 회계처리
(1) 회계처리방법

소비세(지방소비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1)소비세 액을 매출액 및 매입액에 포함하여 처리하는 방법(세 포함처리)과 (2)소비세 액을 매출액 및 매입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법(세 별 도처리 거래 때마다 구분 또는 기말에 일괄구분 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채택하는가는 기업의 임의이며 납부할 소비세액은 기본적으 로 같다.
3.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신고서 작성순서

설문 1 에서 3 까지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본 규칙과세를 선택한 경우 와 간이과세제도를 선택한 경우의 각각에서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확정 신고서와 그 작성순서를 기재하여 계산방법이나 납부세액의 차이점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세무대학교 (2014) 「소비세법 (기초편) 2014 년도판」

## II 한국의 조세교육(한국/부제)

I. 국세청의 조세교육
(1) 조세박물관

1) 설립취지및연혁
(1)설립취지

세금은 국방, 치안 등 나라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도로, 항만, 철도, 학 교 등 사회간접자본건설과 국민복지지출 등의 밑거름이 됩니다.
국세청은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들에게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세행정에 대 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교육의장으로서 조세박물관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 니다.
조세박물관은 세금의 역사, 우수한 조세제도와 국세행정의 발전과정을 소개하여 우리역사와 민족의 우수성에 대한 자긍심과 세금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세금전문 박물관입니다.
(2)연혁

조세박물관은 전국에 있는 전.현직 국세청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수집 된 유물8,800여점을 기반으로 2002년10월5일 개관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12 월 22 일 리모델링하여 개선된 환경으로 개관하였으며 꾸준한 유물수집과 함께 조 세와 관련된 새로운 주제로 매년 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관 1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10월전시실 환경을 전면 개편하여 우수한 조세제도 소개와 조세유물을 보강전시하였습니다.
2) 운영프로그램

조세박물관은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내가 만드는 우리동네>

어린아이들이 세금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세박물관 전시관람 후 유아눈높이에 맞춘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시청하고 그 리기 체험을위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2)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어린이 세금체험교실>

어린이대상 체험교실코너에서는 장래희망을 반영한 사업자등록증발급, 청소년용 현금영수증 카드발급, 세금 OX퀴즈 등 다양한 세금체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중•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 세금교실〉

청소년들에게 세금에 관해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청소년 세금교실>사이트 (http://www.nts.go.kr/yout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비교적 생소 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뿐 아니라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 는 유익한 공간입니다
(2) 다양한 세금체험 프로그램

1) 일일 세무서장 체험

국세청은 미래의 납세자인 학생들이‘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올바른세금관을 조기에 정립하여 성실납세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친근 한 프로그램을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세무서로 초청하여 세금을 이해하고 견학하는 '일일 세무서장체험' 행사 를 실시하여 세금의 뜻과 역할, 세금의 종류와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하여 상세하 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 찾아가는 세금교육

세무서장이 솔선하여 학교를 찾아가는‘방문 세금교육’을 활성화하여 세금에 대한 친밀감을 높이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납세주역인 학생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함 양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I. 한국세무사회의 조세교육
(1) 청소년 세금교육

1. 개요 :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올바른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세 무사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 형태

가. 청소년 직업 체험의 날 현장 방문 및 세금 교실

- 매년 세무사회관 인근 중,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 실시
- 2014년 풍성중, 신목고 등 학생 회관 방문

나. 청소년 세금교실 동영상 교육

- 2010년 인터넷 및 IPTV를 매개로 맞춤형 '라이브교육 컨텐츠'에 청소년 세금 교실 프로그램을 위한 동영상 교육 제작
다. 청소년 세금교실 만화 제작 및 배포
- 2011년 4월 청소년 세금만화 '촐랑왕자의 세금유학기' 제작해 전국 9천280개 초, 중학교에 배포함
(2) 100 만시간 재능기부

1. 개요 : 2012년 1 월 5 일 세무사회관에서 전국 1 만여 세무사가 1 인당 100 시간 씩 전문적 재능(조세전문 지식)을 사회에 기부키로 하고 선포식을 개최
2. 형태 :

가. 전국민 대상 무료세무상담(내방, 전화, 인터넷)
나. 세금 관련 무료강의
다.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세무분야 자문
라. 새터민 가족 및 이주민을 위한 세금교육
마. 세무사 재능을 활용한 기타 기부활동 등 세금과 관련한 사항 전반에 대한 상 담, 교육, 자문
(3)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

1. 일반인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실시

- 본회 회관 내 무료세무상담실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반

민과 납세자를 대상으로 각종 세금에 대한 무료세무상담
(전화, 서신, 내방 및 인터넷)을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함.
2. '납세자의 날'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

- 납세자의 날(2014.3.3.)을 맞아 1 주일간 전회원이 전국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총 17,658 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했음.

3. 세무사제도 창설 53 주년 기념 전회원 무료세무상담 실시

- 세무사제도 창설일(1961.9.9.)을 기념하여 1 주일간 전회원 사무소에서 총 18,049건의 세무상담을 실시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함.


## III종교인에 대한 과세(한국/부제)

I.총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복지와 공익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 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과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 국가 또는 공 공단체가 하여야 할 대국민 서비스를 종교단체 등 민간에 위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정책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통하여 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세제상의 혜택을 남용 또는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종교단체와 종교인에 대한 조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종교인 과세는 지난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문 제였으며, 최근 그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이었던 만큼,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여 되고 있다.
$\Pi$ I.종교인 과세에 대한 현재 상황
통계에 따르면 국내의 종교시설은 9만개, 성직자는 36 만5천명, 헌금규모는 연 6 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럼에도 성직자 중 천주교회와 개신교 중 대형교회는 이 미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과세가 현실화 되더라도 늘어날 세수는 많아야 고작 $1 \sim 2$ 천억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였다.
지난해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 만, 종교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 또한 정부 와 정치권이 종교계와의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애초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 여, 실효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정부 원안은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사례금’) 으로 보고, $80 \%$ 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면서 나머지 소득에 대해 주민세를 포함한 $22 \%$ 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방안대로라면 정부 추산으로 대상자 는 약 1 만 5000명, 세수는 100 억~200억 원 정도가 된다. 이 정부의 원안도 일 반인에 견줘 종교인의 세율이 낮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III. 종교인 과세에 대한 찬반양론
1.찬성의 입장

대다수 국민은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기독교윤리신청운동본부가 실 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86 \%$ 가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고 $12 \%$ 만 반대했다. 종교계도 대체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수용하고 일부에서는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 을 내고 있다.
(1) 기독교 단체가 비영리법인일지라도 목회자 보수는 소득에 해당된다.
(2) 세법상 종교인에 대한 면세조항이 없다.
(3) 종교인 면세는 조세평등원칙과 국민정서에 위배된다.
(4) 다른 선진국은 종교단체에서도 과세를 한다.
2. 반대의 입장
(1) 목회자는 성직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
(2) 세법상 명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납세 의무가 없다.
(3) 교회 헌금은 기부금이며, 성직자 사례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이다.
(4) 종교 억압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5) 면세점 이하의 종교인이 많다.
(6) 종교 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우려
IV. 다른 국가의 종교인 과세방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34 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과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종교라는 특수성에 맞춰 약 간의 혜택을 받는 수준이다.

V . 종교인과세의 이론적 근거

1. 헌법 제 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 2. 소득세법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항목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열거주의이지만 소득세법 12 조 (비과세소득)와 19조(세액의 감면)에 종교인 면제조항은 없다. 따라서 국회에서 법을 바꿀필요 없이 세법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했다. 정부의 의지와 종교계 협조만 있으면 종교세는 큰 어려움 없이 시행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40년 넘게 논란만 이어진 이유는 정치권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VI. 결론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따라서 소득이 있는 종교인에게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정안은 원천징수 규정을 삭제하 고 종교인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도록 했다. 기타소득에 '종교인 소득' 이라는 범주를 새로이 만들고, '종교인 소득'의 정의를 '개인의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금품'으로 좁게 해석하였다. 이 경우 종교인이 세금으로 내야 할 돈이 현저히 적어진다. 직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범주를 만든 것 또한 이번이 처음이다. 종교인만 따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면 세법상 개념체계가 무너지는 등의 혼란이 야기될 수 도 있다.또한 강제성을 띤 원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수 정안은 종교인 과세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종교인을 과세 대상에 편입 시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이며, 앞으로 형평성이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세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 III종교인에 대한 과세(일본/부제)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과세대상이 되며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만 종교법인은 본래의 활동인 종교활동에 대하여는 기본적 으로 비과세 하는 등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와 비교하여 세제상의 특례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

## 1. 법인세

종교법인의 본래의 목적은 종교의 교리를 보급하고 의식행사를 통하여 신 자를 교화 육성하는 것이나 공공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과 법인의 재정기반 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사업과 공공사업 이외의 사업을 인정하고 있다.

종교법인 등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에 정해 진 34 종의 사업으로서 사업장을 두고 계속 사업활동을 함을 말한다.

또한 공익법인 등은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제한된 과세소득과 비수익사업(그 법인의 본래적 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분경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비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는 그 비용 또는 손실의 성질 등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각의 사업에 배분하며 배분한 바에 따라서 경리한다.

## 2. 원천소득세

종교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임원이나 직원 등에게 급여나 퇴직수당을 지급 할 때 혹은 세리사 등에게 보수•요금•강연료 등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 징수의무자로서 그 지급 시에 소정의 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해야 한다.

## 3 . 소비세

국내에서 과세자산의 양도 등을 한 사업자는 납세의무자로 되며 종교법인 도 면세사업자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 과세자산 등을 양도하면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소비세의 과세대상 판정기준은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의 구분 에 따르지 않고 원칙적으로 사업활동이 대가성이 있는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하는가로 판단한다.
단 자산의 양도 등에 해당되어도 소비세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거나 사회정책적인 배려에서 일정한 물품이나 행위에 대하여는 비과세 거래로 취급하여 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국세청（2014）「2014 년판 종교법인의 세무－원천소득세와 법인세 • 소비세－田中義幸•繁田勝男•神山敏夫•神山敏蔵（2014 년）「종교법인의 회계의
전부－「종교법인회계의 지침」축조해설과 회계•세무실무【개정판】」세무 경리협회
일본탬플원 • 조일세리사법인 • 조일비지네스솔루션（ᄌ주）편（2012 년）
「도해 종교법인의 법무•회계•세무」 중앙경제사

## IV 질의 응답

I 한국 측에서 일본 측에 질문
[질문 1] 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실질 GDP 신장율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가세율 인상은 세금을 걷기도 편하고 단번에 확실한 세수 증대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증세효과가 크지만 소득역진적인 데다 소비위축을 불러 경기가 위축되면 세수가 감소되고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됩니다.

경기위축을 상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우 경제성장을 통해 과표가 늘어나게 되면 세율인상이 없더라도 세수증대로 이어지게 됩니다만 소비세율이 지난 4 월부터 $5 \%$ 에서 $8 \%$ 로 인상된 후, 올해 $2 / 4$ 분기(4월~6월)의 실질GDP 신 장율(年率)은 - $7.1 \%$ 로 전년도 $2 / 4$ 분기(4월~6월) 신장율 $3.4 \%$ 보다 무려 $10.5 \%$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0 월에 다시 소비세율을 $10 \%$ 로 인상하려고 합니 다.

소비세율을 $10 \%$ 로 인상하는 정부안에 대한 긴끼세리사회의 입장과 올해 $2 / 4$ 분기 이후의 실질 GDP신장율은 어떻게 변할 것 이라고 보는지요?

## [회답 1]

소비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긴끼세리사회 뿐만 아니라 일본세리사회 연합회에서 도 인상에 대한 찬반논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긴끼세리사회에서는 경감세율에 대하여, 도입해도 역진성 경감의 효과 는 적고,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며 또한 소득에 대한 역진성은 소비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를 비롯한 세제 전체, 그 위에 사회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재정전체 로 대응해야 할 문제로서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1) 세원조달 기능을 손상하는 문제

경감세율을 도입하면 세수감소를 불러오나 표준세율을 더 인상하므로서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려고 하면 소비자의 부담은 변하지 않는다.
(2) 역진성 경감책으로서의 실효성 문제

경감세율은 재분배의 대상자를 저소득층에 한정할 수 없으며 생활필수품 에 대한 절대액으로서 지출이 많은 고소득층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으므로 역진성 경감대책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3) 대상품목을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대상품목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어 렵다. 음식료품은 그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에 표준세율과 경감세율의 구분 문제도 아주 넓은 범위에 미치는 한편 결정한 구분도 항상 재검토를 요하게 된다.
(4)사회적비용의 증가문제

세율이 복잡화되면 사업자의 업무비용(대상품목 분류, 계산시스템의 변경 또는 대체, 계산서방식 도입에 따른 청구업무•회계처리의 복잡화 등)이 증 가한다. 또한 경감세율 대상품을 가장한 부정행위나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사 업자의 환급신고 등에 대한 집행체제를 정비함으로 징세비용도 증가한다.
（5）경쟁중립성의 문제
일시적으로 같은 상품이 그 판매형태나 판매개수 등의 형식적인 요건으로 구분된 경우，경감세율을 적용한 판매형태의 상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으 며，세제가 소비자의 선택을 개입하게 되며 경제활동에 대한 세제의 경쟁중 립성을 저해하게 된다．
（6）간이과세제도의 복잡화문제
경감세율을 도입하는 경우 현행의 간이과세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로서 존 속시키려고 하면，사업구분의 세분화 등이 필요하게 되어 과세제도가 복잡하 게 된다．

또한 $2 / 4$ 분기 이후의 실질 GDP 의 신장율에 대하여는 세리사회 또는 세리 사가 예측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학술토론회의 시점에서는 $3 / 4$ 분기의 $\operatorname{GDP}$（제 1 차 속보）가 공표될 전망이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 2］매입세액공제액의 검증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방식에 따른 부가가치세제에서 세금계산서는 매우 중요합니다．세금 계산서에 의해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며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발행일자，사업자등록번호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등이 기입되 며，이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매출 및 매입）는 부가가치세 신고 때 필수적으로 첨 부해야 합니다．

신고된 이 합계표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검증되며 어느 일방이 신고를 누락한 경우 반드시 불분명 자료로 체크되어 관할세무서로부터 해명요구를 받습니다．

일본에서는 과세매입 등에 관련된 소비세액은 원칙적으로 전액공제하고 있습니 다만 과세매입금액을 고의로 과대계상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매입금액의 적정성 판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답 2］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계산은 매출부가가치세에서 매입부가가치세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이 매입세액 공제를 할 때 계산서에 기입되어 있는 세액을 집계하는 방식을 일본에서는「계산서방식」이라고 합니다．한편，개개의 거래를 장부에 기 재•계산하고 청구서나 영수증을 보존하는 방식을 「장부방식」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소비세법은「장부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한국과 같이 전산시스템 상에서 매출－매입측의 개개의 데이터를 직접 검증하는 방법은 채택하고 있지 않 습니다．과세매입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세무서 등에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할 때 검증하고 있습니다．
[질문 3]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공급대 가에 (1)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배달•운반 용역 등과 (2)거래관행상 공급되는 보증 수리용역 등과 (3)사업관행상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병원의 건물매각 (4)주된 사업의 재화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인 부산물 등을 매각하 는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사업자의 경우 과세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근린시설의 매각은 과세됩니다. 하지만 (3)의 경우 병원 용 건물을 매각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과세되지만 면세사업인(의료업은 한국은 면 세/일본은 비과세) 의료업에 사용된 건물의 매각사유를 우발적 또는 일시적인 사 유로 보아 면세용역의 부수재화로 간주하여 면세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하는지 알려 주십시오.

## [회답 3]

일본에서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사업으로서 대가를 받고 행하는 자산의 양도 및 임대 또는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질문의 부수재화 또는 부수용역에 대하여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 세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과세사업자인 의료법인이 의료용 건물을 매각한 경우 본업인 의료 수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합니다만, 당해 건물의 매각수입은 과세거래 에 해당되어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질문 4] 소비세의 가산세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비세법상 가산세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시요.

## [회답 4]

소비세의 가산세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까지 적정한 신고가 없는 경우 신고태 만 정도에 따라 부과되며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일종의 행정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세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통65), 무신고가산세(통66) 및 중가산세(통 68(1)(2)가 있습니다.

| 종 류 | 과 세 요 건 | 과세비율 <br> (증가 본세에 대해) | 부적용 또는 과세비율 경감 |  |
| :---: | :---: | :---: | :---: | :---: |
|  |  |  | 요 건 | 부적용 또는 경감비율 |
| 과소신고 가산세 (통65) | 신고기한 내에 제출된 납 세신고서(통칙법66제1항 단서 또는 동조 6항이 적용 되는 경우 포함) 에 기재된 금액의 과소로 수 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 $10 \%$ <br> 단, 기한 내 신고세액 상당액 또는 50만 엔 중 많은 금액을 초과 하는 부분의 세액 (가중 대상세액)은, 위 $10 \%$ 외에 $5 \%$ 를 가산 |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납부세액 계 산의 기초가 된 사실이, 그 수정신고 또는 경정 전 세액의 기초가 되지 아 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 <br> 조사를 함에 있어서, 경정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 | 부적용 |
| 무신고 가산세 <br> (통66) | (1)신고기한까지 납세신고 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결정하 는 경우 <br> (2)기한 후 신고 또는 결정 <br> 이 있은 후에 수정신고 또 는 경정하는 경우 | $15 \%$ <br> 단, 납부세액이 50 만엔 <br> 을 초과하는 경우, 그 <br> 초과하는 금액은 위 <br> $15 \%$ 이외에 $5 \%$ 가산 |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정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br> 조사를 함에 있어서, 결정 또는 경정 이 있을 것을 알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한 경우 | 부적용 |
| 중가산세 <br> (통68) |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 되 는 경우에, 국세의 과세표 준 등 또는 세액 등의 계 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 가장하여 납세신고서 를 제출한 경우(동1항) <br>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위의 위 의 부정행 위가 있는 경우(동2항) | 35\% $40 \%$ | (주) <br> 1 가산세 세목은 계산근거가 된 국세 2 중가산세는 타의 가산세에 대신하영 병과 되지 않는다(통68(1)~(3)) 3 가산세의 100 엔 미만의 단수는 계 액을 단수처리 함으로서, 1 만 엔 딘 생 하지 않는다. | 와 같다(통69) 부과되므로 찬근거가 되는 세 위로 되므로 발 |

[질문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는 한국과 일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즉 본래의 사 업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종교시설은 9 만개 정도, 성직자는 36 만 5 천명 정도 됩니다만 천 주교회와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성직 자들이 소득세납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종교인 과세법안(안)에 대하 여 수정을 요구하는 등 법안통과에 많은 진통을 격고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종교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되며 성직자들에 대한 소득세 과세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되 고 있습니까?

## [회답 5]

2013년도 종교통계조사에 의하면 2012년12월31일 현재의 우리나라의 종교단 체(종교법인을 포함)수는 220,189 단체, 이 중에서 종교법인은 181,803 개 입니다. 신자들의 수는 $197,100,835$ 명 입니다. (단, 이 숫자는 일본인구보다 많기 때문 에 중복된 수치라고 추측됩니다.)

교사 수는 665,896 명 입니다만 일본에서는 성직자인 개인에 대하여 과세상 우 대조치는 없으며 소득세 과세현황에 대하여는 파악 곤란합니다.

II 일본 측에서 한국 측에 질문

## （1）부가가치세

## 【질문 1】

일본은 소비세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소비세액 등을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는 방법（세 포함 경리방식）과 소비세액 등을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분 처리하는 방법（세 별도 경리방식）이 있으며 기업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십시오．

## 【답변1】

일본의 세 별도 경리방식과 같습니다．한국의 부가가치세 회계처리방법은 부가세 등을 매출액 및 매입액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분 처리하는 한가지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회계상 처리를 하는 경우 기업의 순수 공급가액만 매출액으로 처리 되고 부가세매출세액은 부가세예수금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상 별도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매입의 경우에도 순수 매입가액만 매입액으로 처리되고 부가세매입 세액은 부가세대급금 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장부상 별도로 회계처리 하고 있습니다．

추후，부가세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앞서 장부상 계상하였던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을 상계처리 하여 차액부분을 납부할 부가가치세로 하여 장부상 부채계정으로 처리해놓고 있습니다．

## 【질문 2】

일본은 소비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준기간（과세기간의 2 기전）의 과세매출 금액이 1 천만 엔을 초과하는가에 따라 비교적으로 단순하게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합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1）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2）사업성이 있으며 （3）독립성이 있다라는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만 특히（2）의 사업성 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판단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실무상 기준이나 관점 등은 있는 것인지요？

## 【답변 2】

사업의 의미에 대하여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된 바는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이를 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성질이지만，단순히 1 회 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어야 사업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여기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함은 여러 차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계속 반복된다는 뜻이고 시간적 경과가 요구되는 단 한번의 용역을 공급할 의사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까지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의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는 사실 판단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계속， 반복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으로서의 실체를 객관적으로만 갖추면 납세의무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질문 3 】

한국의 부가가치세 체납비율과 체납금액에 대하여 알려 주십시오．

【답변 3】

| 세목별 |  | 발생건수（2013） | 발생금액（2013） | （단위금앱：액：비율（2013） |
| :---: | :---: | :---: | :---: | :---: |
|  | 소득세 | 931,077 | 50,430 | $35 \%$ |
|  | 법인세 | 72,807 | 12,713 | $10 \%$ |
|  | 상속증여세 | 8,054 | 7,407 | $5 \%$ |
|  | 부가가치세 | $1,650,506$ | 71,360 | $50 \%$ |
|  | 합 계 | $2,662,444$ | 141,910 | $100 \%$ |

（출처：국세청 국세통계）
국세청 통계（2013 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체납금액은 71,360 억원 이었으 며，전체 국세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 \%$ 정도 됩니다．．

## 【질문 4】

일본의 소비세법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과세매입 등의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 및 청구서 등의 서류를 그 과세기간의 말일의 다음날로부터 2 개월 이 지난 날로부터 7 년간 보존합니다만 한국에서도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영수증 등을 의무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답변 4】

한국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영수증 등을 그 거래한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 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근거）
부가가치세법 71 조 3 항 사업자는 제 1 항 및 2 항에 따라 기록한 장부와 제 32 조，제 35 조 및 제 36 조에 따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수입세금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다만，제 32 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종교법인의 과세실태

## 【질문 1 】

종교법인이 과세상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 니까？（일본의 경우 관할청에서 규칙을 인정 받아 법인등기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 【답변1】

종교법인이 세법상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종교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국세기본법 13）
（1）사단，재단，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사단，재단，그 밖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위 요건이 충족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선임（변경）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접수 후 10 일이 경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고유번호가 82 번인＇고유번호 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를 발급합니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종교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간주되어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 【질문 1】

국세청이 아닌 국세청 등의 직원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조세교육 등 을 개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또한 세무사회가 각급학교에 대하여 실시 하고 있는 조세교실의 개최건수，개최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 【답변 1】

국세청은 매년 일선 세무서를 통하여 세금문예작품을 공모하며，일선 세무서에 서는 직원들이 관할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들을 상대로 세금교실을 개최합니다．

내일 방문하는 동래세무서의 경우 올해 상반기 및 하반기 각 1 회 조세교육을 실시하기로 계획을 수립하였고，상반기에（5 월부터 9 월까지）초등학생을 대상으 로 총 16 회의 조세교육을 실시하였으며，참가학생은 1,772 명 이었습니다．

지난 3 년간 실시한 조세교육 횟수와 참가학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2012 년도 | 2013 년도 | 2014 년 9 월까지 |
| :---: | :---: | :---: | :---: |
| 교육횟수 | 12 회 | 31 회 | 16 회 |
| 교육인원 | 425 명 | 3,229 명 | 1,772 명 |

한편，한국세무사회에서는 올해 4 월 풍성중학교와 신목고등학교 학생들이 회관을 방문하여 2 회의 조세교육을 실시한바 있으며，매년 $2 \sim 3$ 건의 조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질문 2】

작년 오사카에서 제 9 회 학술토론회 때 조세법률주의를 설명할 시 곽태순 선생께서는 다음의 슬로건을 내세워서 발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일본어 번역은「대표 없이 과세 없다」） 이 말은 미국독립전쟁의 슬로건입니다만 이 것과 연결된 내용입니까？

## 【회답 2】

그렇습니다．조세법률주의는 시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항쟁의 역사와 발전을 함께 했으며，사상적 연원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 연혁을 살펴보면， 1215 년 영국의 대헌장（大憲章，The Great Charter or Magna Carta）에서 비롯되 었으며， 1629 년 영국의 권리청원（權利請願，Petition of Rights）에서 대헌장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고， 1689 년의 영국 권리장전（權利章典，Bill of Rights）에서 근대적 의미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1776 년 미국 독립선언서（Virginia Bill of Rights）에 계승됩니다．이 선언에서는 「그들 자신의 동의 또는 선출된 그들의 대표의 동의 없이는 공공의 용도를 위해 과세하고，또는 그들의 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cannot be taxed or deprived of property for public uses without their own consent or that of their representatives so elected）라고 선언 하였습니다．

또한 1789 년 프랑스 혁명으로 선언된「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더욱 구체화 됩니다．즉 그 13 조는「공공무력의 유지를 위해 그리고 행정의 제비용을 위해 일반적인 조세는 불가피하다．이는 모든 시민에게 그들의 능력에 따라 평등 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하였고，제 14 조에서는「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를 통하여 공공조세의 필요성을 검토하며，그것에 자유로이 동의 하며，그 용도를 추급（追及）하며，또한 그 액수•기준•징수 그리고 존속기간을 설정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였습니다．이는 전제군주（專制君主）의 무절제• 무제한의 과세권 행사로부터 재산을 수탈당하지 않으려는 항쟁의 역사임을 알 수 있으며，이 항쟁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정립된 것이 조세법률주의인 것입니다．

【질문 3 】
일본에서도 세금의 작문에 대한 콩쿠루가 있습니다만 참가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답변 3】

납세자의 날（매년 3 월 3 일）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실시되며， 올해 35 회째를 맞이하는 세금문예작품 공모전은 작문，포스터，만화，UCC 부문에 걸쳐 이뤄집니다．
지난 3 년간 응모건수와 입상자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2012 년도 | 2013 년도 | 2014 년도 |
| :--- | :--- | :--- | :--- |
| 응모건수 | 13 만여건 | 12 만여건 | 13 만여건 |
| 입상자수 | 6,550 명 | 6,112 명 | 4,822 명 |

## 【질문 4】

세무사회에서 만화를 만들었다는데 꼭 보고 싶습니다．또한 배포는 학교마다 한 권씩 입니까？아니면 학생 전부에게 배포합니까？

【답변 4】

책자의 표지입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청소년 세금교육 만화｀촐랑 왕자의 세금 유학기＇를 제작해 전국 9 천 280 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배부했습니다
이 만화는 84 쪽 분량으로，세그미아 왕국에 사는 촐랑왕자가 세금 공부를 위해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면서 격게 되는 좌충우돌 사건들을 통해 세금의 중요성， 종류，역사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5 】
100 만시간 재능기부에서 차지하는 조세교육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답변 5】

2012 년 1 월 5 일 한국세무사회 창립 50 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무료세무 상담 등 100 만시간 재능기부운동을 시작한 이래 지난 8 월말 현재 약 $15 \%$ 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당초 계획은 한국세무사회 산하 6 개 지방세무 사회를 순회 방문하여 무료상담에 응하고자 했으나 1 회의 경비가 1 억 원 정도 소요되어 예산부족으로 순회상담은 하지 못하고 지방세무사회 별로 실시하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 【질문 6 】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연계되어 실시하는 조세교육은 있습니까？

## 【답변 6】

매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때 각 세무서에서 관할 세무사 협의 회와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의 고충을 전하거나 국가의 세정시책을 납세자에게 전하는 등으로 대국민 조세교육을 겸하고 있습니다．

## 【질문 7】

세금체험 프로그램에서「열린 세금교육」을 마련한 사정이나 배경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 【답변 7】

세금은 국민의 의무 중 하나이고 세금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미래의 납세자로서 갖춰야 할 자세를 미리 배운다면 성실납세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국세청 실무자들이 직접 와서 생생한 교육을 한다면 국가관 성립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